

연구보고 2014-14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
- 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장혜진 송신영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국내·외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회적으로 유아가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부모가 가정양육보다는 기관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을 선호함에 따라 기관의 질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기관의 높은 질은 영유아 시기의 발달과 성장, 이 후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같은 혜택을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영유아의 입장에서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은 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법·규정, 교사, 교육과정,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여러 측면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 대상 모니터링은 여러 나라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해당된다.

기관을 평가하는 목적은 기관이 가진 강점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기관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기관 간의 격차를 줄이고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더 발전시켜 유아와 교사, 부모가 모두 행복해할 수 있는 평가·평가인증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별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체제, 사례 및 관련 연구가 누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외의 기관 대상 평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의 질 관리, 특히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평가인증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4. 연구범위 및 대상국	16
II. 연구의 배경	20
1. 유아교육·보육 질의 개념 및 중요성	20
2.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수단 및 기관평가의 중요성	23
3.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26
4. 연구대상국에 대한 개요	48
III.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 국제비교	54
1. 기관 평가의 목적	54
2. 기관 평가 관련 법·제도 및 전달체계	63
3. 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73
4. 기관 평가 영역 및 내용	93
5. 기관 평가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123
6. 기관 대상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139
7. 국가별 소결	149
IV.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위한 정책 방안	159
1.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의 방향 탐색	159
2. 정책의 기본 방향	163
3. 정책 방안	166
참고문헌	172
Abstract	183

부록	185
부록 1. 영국 Early Years Register 등급별 기준	187
부록 2. 기관 평가·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194
부록 3. 조사표 3종	198

표 차례

〈표 I-3- 1〉	국내 면담대상자 정보	13
〈표 I-3- 2〉	해외출장 면담대상자 정보	14
〈표 I-3- 3〉	설문조사 대상 표집	15
〈표 I-3- 4〉	자문회의 및 교사협의회 대상자 정보	15
〈표 I-4 1〉	OECD 주요 국가별 개요	17
〈표 II-3- 1〉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 현황	27
〈표 II-3- 2〉	제 3주기 유치원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및 척도구분 종합표	30
〈표 II-3- 3〉	평가인증 기본사항: 필수항목(9개)	36
〈표 II-3- 4〉	평가인증 기본사항: 기본항목(4개)	37
〈표 II-3- 5〉	자체점검보고서 내용: 2차 지표와 3차 지표	37
〈표 II-3- 6〉	평가인증 취소 사유	41
〈표 II-3- 7〉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6개 영역 50개 항목)	43
〈표 III-1- 1〉	평가의 목적에 따른 국제비교	62
〈표 III-2- 1〉	영국 기관 평가에 대한 아동보육법 조항	63
〈표 III-2- 2〉	노르웨이 유치원 점검에 관한 유치원 법 조항	66
〈표 III-2- 3〉	호주 각 주별 평가 담당 부서	69
〈표 III-2- 4〉	뉴질랜드 평가에 대한 법 조항	70
〈표 III-2- 5〉	평가 관련 법·제도 및 운영체계 국제비교	72
〈표 III-3- 1〉	유치원 점검 기준 구비 및 적용 여부	80
〈표 III-3- 2〉	현장점검 시 점검 방법	80
〈표 III-3- 3〉	평가 및 등급부여 절차 (기관)	83
〈표 III-3- 4〉	뉴질랜드의 기관 대상 자체평가 질문 목록	86
〈표 III-3- 5〉	평가절차 및 방법 국제비교	92
〈표 III-4- 1〉	노르웨이 Kindergarten act에 제시된 점검 영역 및 내용	97
〈표 III-4- 2〉	호주 평가 영역, 기준, 요소	101
〈표 III-4- 3〉	기관중심 서비스의 교사 대 유아비율 관련 조항	105
〈표 III-4- 4〉	가정보육서비스의 교사 대 유아비율 관련 조항	106
〈표 III-4- 5〉	뉴질랜드 운영과 관리 측면 질문의 예	108

〈표 III-4- 6〉 뉴질랜드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지표	109
〈표 III-4- 7〉 뉴질랜드 역량강화 측면에서의 평가지표	111
〈표 III-4- 8〉 뉴질랜드 교육과정 측면 질문의 예	113
〈표 III-4- 9〉 뉴질랜드 교육과정 측면 평가지표	114
〈표 III-4-10〉 뉴질랜드 교수·학습 측면 질문의 예	117
〈표 III-4-11〉 뉴질랜드 교수·학습 측면 평가지표	118
〈표 III-4-12〉 기관대상 평가내용 국제비교	122
〈표 III-5- 1〉 점검 결과 사후관리 절차	127
〈표 III-5- 2〉 2008/9 ~ 2009/10 시정명령 수	127
〈표 III-5- 3〉 호주 기관의 평가결과 종합 등급의 결정 기준	128
〈표 III-5- 4〉 호주 평가 수준	129
〈표 III-5- 5〉 뉴질랜드의 기관 평가시기별 기관의 상황	135
〈표 III-5- 6〉 뉴질랜드 기관 평가결과 공개 양식 및 내용	136
〈표 III-5- 7〉 기관대상 평가결과 활용 국제비교	138
〈표 III-6- 1〉 영유아 기관 조사관 교육훈련 내용	141
〈표 III-6- 2〉 교육표준청의 점검 수행에 관한 규정	141
〈표 III-6- 3〉 2009/10 지자체 규모별 유치원 업무 담당자 수	142
〈표 III-6- 4〉 현장점검 담당자	142
〈표 III-6- 5〉 지자체별 유치원 현장점검 담당자 전공 현황	143
〈표 III-6- 6〉 점검 후 행정처분 등의 결정 권한	144
〈표 III-6- 7〉 기관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국제비교	149
〈표 III-6- 8〉 기관 대상 평가 국제비교 정리	157

그림 차례

[그림 I-4-1]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 틀	18
[그림 II-1-1]	유아교육·보육에서 영유아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21
[그림 II-1-2]	유아교육·보육에서 영유아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21
[그림 II-1-1]	보육의 질의 장기적 효과	23
[그림 II-3-1]	제 3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체계	27
[그림 II-3-2]	유치원 평가의 현장평가과정	29
[그림 II-3-3]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35
[그림 II-3-4]	평가인증 제3차 지표: 영역 1 보육환경 1-1 구성요소	43
[그림 III-1-1]	ERO의 영향 및 결과 도식화	59
[그림 III-1-2]	ERO의 평가와 자체평가의 방향	61
[그림 III-2-1]	노르웨이 유치원 점검 전달체계	67
[그림 III-5-1]	영국 교육표준청 CIE 관련 조치 단계	125
[그림 III-5-2]	호주 기관평가 결과 자료 공개 자료 예시 1	132
[그림 III-5-3]	호주 기관평가 결과 자료 공개 자료 예시 2	134
[그림 III-6-1]	HMI 선발절차	140
[그림 III-6-2]	평가자 역량 구성	147
[그림 IV-1-1]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1) ..	162
[그림 IV-1-2]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2) ..	163
[그림 IV-2-1]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	164
[그림 IV-3-1]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 모형	170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 영유아기는 투자의 가치가 높은 시기로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 개인의 삶의 바탕을 구성하는 시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영유아기에 대한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으로 이어짐.
-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공적 책무성이 높아져 국가의 공적 투자도 늘어나고 있음.
 - 영유아 부모나 학계, 국가 모두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관심을 가짐.
-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이 유아의 미래 성장이나 발달, 이후 학습에서의 성취도, 고용률과 같이 사회에 되돌아오는 효과라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된 경향이 있음.
 - 영유아의 입장에서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기관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은 질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도 정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국제적으로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국가별로 기관 평가에 대한 시행착오나 연구가 누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의 기관 대상 평가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질 관

리, 특히 기관 대상 평가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기관 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맥락에 비추어 시사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다. 연구의 내용

- 첫째, 유아교육·보육의 질의 개념과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책현황을 검토함.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확인하였음.
- 둘째,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개선사항 및 여러 국가의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연구대상국을 선정하였음. 선정한 연구대상국(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을 정리하였음.
- 셋째, 연구대상국의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의 목적, 관련 법 및 전달체계, 평가 절차, 평가 내용(지표), 평가결과 활용,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로 나누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비교함.
 - 수집한 자료는 기관 대상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및 내부자료, 관련 부처 웹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면담자료임.
 - 항목별로 국가 간에 비교를 통해 각 국가가 지닌 평가의 특징과 장점, 약점을 확인함.
- 넷째, 국제비교를 통해 각 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정책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함.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해 학계전문가, 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 다섯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아교

육·보육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음.

라.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분석

- 유아교육·보육의 질의 개념과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함.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OECD 국가의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자료 수집

-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책에 관련된 정부문헌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 연구대상국으로 선정된 각 국가별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 연구대상국의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 관련자(공무원, 교수, 교사)를 면담한 결과를 녹음하여 기관 평가의 배경, 목적, 방법, 제한점 등을 알아봄.

□ 국내면담 실시

- 면담조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조사함. 면담참여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원장, 학계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임.

□ 연구대상국 해외출장

- 연구대상국의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연구대상국 4개국 중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로 2014년 8월에 해외출장을 다녀옴.

□ 설문조사 실시

- 유아교육·보육 학계전문가 121명, 공무원 100명, 교사 400명(유치원 교사 200명, 어린이집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9~10월에 국제비교 연구 결과로부터 추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조사함.

전문가 자문회의 및 교사협의회 개최

- 본 연구 진행 단계별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및 정책방안에 대해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및 현장 관계자 대상 협의회를 실시함.

2. 연구의 배경

가.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

- 유아교육·보육의 질이나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구성하는 요인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금까지 정부, 전문가, 학문적 연구의 입장에서 기관의 질이 주도적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

나.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수단 및 기관평가의 중요성

- 기관 평가가 기관의 질 향상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평가나 점검을 통해 질 관리가 갖는 의미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 국제비교

가. 평가의 목적

- 영국 평가의 목적은 영유아의 보육, 학습, 발달과 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의 원리와 요구조건에 맞추어 초기의 학습목적에 따른 영유아 성장의 질과 기준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함.
- 노르웨이는 유치원 법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유아에게 질 높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호주의 평가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촉진하고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뉴질랜드 평가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촉진하고 자체점검을 통해

스스로 평가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평가 관련 법 및 전달체계

- 영국의 경우,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의 제49조(평가), 제50조(평가보고), 학교교육법 제5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독립된 평가 기구인 Ofsted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며 공개함.
- 노르웨이 평가는 중앙에서 정한 유치원법(Act no. 64 of June 2005 relating to kindergarten)과 지방자치단체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 근거함.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으나 공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과 점검의 권한이 모두 지자체에 있다는 점에 따라 주 정부에서 지자체 점검 실태를 확인함.
- 호주는 교육·보육 서비스 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과 교육·보육 서비스 규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에 근거하며 독립된 평가 기구 ACECQA를 통해 평가하고 각 주(state)별로 교육부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국가기관과 지역 규제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특징적임.
- 뉴질랜드는 교육법(Education Act 1989) 제28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만 평가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위한 인가기준(Licensing Criteria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res 2008)'과 '영유아교육·보육과정 체제(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임. 정부 부처와 독립적인 기관인 ERO에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지자체, 부모에게 공개함.

다. 평가절차

- 영국은 <평가공지→자체평가→현장평가→피드백회의→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됨.
- 노르웨이는 <준비단계(점검 주체와 대상 지자체, 점검 날짜, 법적 조건을 정하고 평가양식과 자체점검 양식을 제작하는 단계)→점검 단계(현장 점검 및 인터뷰, 점검 결과 작성)→대화 및 완료 단계(점검 결과 예비보고서 작성 및 통지, 1차 소명 및 개정 결과에 따라 결과 보고서 수정 및 시정 시한 설정)>

로 구성됨.

- 호주는 <방문공지→질 개선 계획→현장방문→보고서 초안→이의 제기 및 설명→최종보고> 순으로 진행됨.
- 뉴질랜드는 <평가공지 및 정보교환→자체평가→평가설계→현장점검 및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논의→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됨.

라. 평가내용

- 영국은 해당 시설이 다양한 영유아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는 정도, 영유아의 웰빙에 기여하는 정도, 리더십과 관리의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함.
- 노르웨이는 유치원법과 교육과정 관련 프레임워크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각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 체계에 따라 평가함. 이에 지자체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 호주는 포괄적 영역(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유아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교직원 배치, 유아들과의 관계,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리더십과 기관 운영)을 평가함.
- 뉴질랜드는 운영과 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정, 교수·학습 측면을 평가하며 지표는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마. 평가결과 활용

- 영국은 평가결과를 지방정부 및 대중에게 공개하고 '부적절'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가함.
- 노르웨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일부지역에서 재정과 연계하기도 함. 지자체에 따라 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해 부모의 기관 선택을 도움.
- 호주는 각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 기관평가 자료를 모두 부모에게 공개함.
- 뉴질랜드는 기관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며 다음 평가시기를 결정하는데 이용되어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함.

바.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 영국에서 일부 평가자는 점검과 함께 인가 업무도 함께 담당할 만큼 권위를 지님. 평가자는 학사 학위와 영유아교육 분야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함.
- 노르웨이에서는 유아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아교육관련 전문가가 평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전교육 및 관리체계가 없음.
- 호주에서는 모든 주와 지역에서 국가법(National Law)에 의거해 기능을 수행함. 평가자가 갖추어야 할 분석, 기술 능력을 중요시함.
- 뉴질랜드는 평가자에게 요구되는 행동방침이나 역량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며 평가자가 유아교육·보육관련 전공자일 필요가 없음.

사. 국가별 기관평가 관련 핵심개념

- 소통하면서도 엄격성을 중시하는 영국, 자율성과 균형을 중요시 하는 노르웨이, 협력하고 변화하는 호주, 다양성과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는 뉴질랜드로 요약할 수 있음.

4.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위한 정책 방안

가.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

-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교사의 과도한 초과업무를 지양하고 영유아가 평가의 중심이 되면서 영유아와 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평가가 되어야 함.
-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가로, 평가로 인한 교육과정 획일화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 평가를 통해 기관이 스스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평가자가 필요함.
- 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을 규정하고 이를 현장과 공유함.

나. 정책방안

- 기관 평가·평가인증 운영 면에서 평가·평가인증 체계 통합, 독립적인 평가 기구 설립, 전문적인 평가자 양성, 평가·평가인증 의무화를 제안함.
- 지표 측면에서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 생산,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 구분 적용, 교육과정 중심의 지표 구성을 제안함.
- 기관 평가·평가인증 방법 면에서 평가자와 기관 간 의사소통 강화, 현장의 원장(감), 교사와의 면담 활성화, 자체평가의 역할 강화를 제안함.
- 기관 평가·평가인증 결과 면에서 평가 사후 관리 강화, 다양한 측면의 평가 결과 공유,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시기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투자의 가치가 높은 시기로 정책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 개인으로서 삶의 바탕을 구성하는 시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다. 영유아기에 대한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유아교육·보육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가정 내 양육보다는 기관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을 선호함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의 90% 이상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 1-2세의 70% 내외 영아도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공적책무성이 높아져 국가의 공적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 부모나 학계, 국가 모두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유아가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경험하는 것은 어느 시기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여겨진다(Cunha, Heckman, Lochner & Masterov, 2005). 영유아기 보육경험이 언어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 사회적 기술, 인지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ôté, Doyle, Petitclerc, & Timmins, 2013; Felte & Lalive, 2010)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다른 격차를 보완해 주는 등 보육 경험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ôté et al., 2013; Felte & Lalive, 2010; Geoffroy et al., 2010). 그러나 최근에는 유아교육·보육의 참여 여부를 넘어서 기관의 질적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은 교육에 대한 개인의 태도나 교육적 성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높은 질의 유아교육·보육이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여러 연구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Sheridan & Schuster, 2001; Fontaine, Torre, Grafwallner, & Underhill, 2006).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보육이 유아의 미래 성장이나 발달, 학교진급률이나 고용률과 같은 사회에 되돌아오는 효과라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영유아의 입장에서도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고 긍정적일 수 있도록 기관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웰빙 또한 기관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는(Blau & Hagy, 1998) 것을 고려한다면 기관의 질은 영유아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2012/2013)는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 제고의 목적 및 규제 설정, 교육과정 및 기준의 설계와 실행, 교사자격 및 연수,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 연구 및 모니터링의 향상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모든 측면이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기관 대상 모니터링은 비교적 최근 정책이며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해당된다. 국제적으로도 정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해외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를 살펴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기관의 질 제고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국가별로 접근방법이 다르고 형태도 점점이나 리뷰, 인증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 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도입 시기를 지나 벌써 3주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기관 간의 격차를 줄이고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후, 기관의 물리적 환경, 교재·교구 확보율이 높아지고 교사와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관 운영 및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획일화, 교사의 업무 과중, 불합리한 평가·평가인증 내용 및 절차, 평가자의 자질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기관 운영의 초점이 되어야 할 영유아의 행복이나 권리가 오히려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제적으로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국가별로 기관 평가에 대한 시행착오나 연구가 누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의 기관 대상 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아교육·보육 질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Sheridan & Schuster, 2001; Pense & Moss, 1994, Ceglowski & Bacigalupa,

2002에서 재인용) 국가마다 다른 평가의 목적, 방법, 대상, 결과활용 등에 관한 정보는 우리나라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특히 기관 대상 평가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평가·평가인증을 개선하는 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를 선택하여 국제비교하였다.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방안 중 기관 대상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비교하였으며 국제비교를 통해 추출한 시사점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학계 전문가, 공무원, 교사의 의견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의 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기관 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비교하고, 우리나라의 맥락에 비추어 시사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내용

첫째, 유아교육·보육의 질의 개념과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선행내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개선사항 및 여러 국가의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연구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연구대상국(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사회문화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셋째, 연구대상국의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평가의 목적, 관련 법 및 전달체계, 평가 절차, 평가 내용(지표), 평가결과 활용, 평가자 및 평가자 관

리'로 나누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비교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기관 대상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및 내부자료, 관련 부처 웹사이트에 탑재된 자료, 면담자료가 주를 이루었다. 항목별로 국제비교하여 각 국가가 지난 평가의 특징과 강점, 약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출장과 OECD Network meeting에서 실시한 공무원 및 교사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넷째, 국제비교를 통해 각 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정책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시사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해 학계전문가, 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선행연구 분석

유아교육·보육의 질의 개념과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OECD 국가의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나. 자료 수집

첫째,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책에 관련된 정부문헌 및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둘째, 연구대상국으로 선정된 각 국가별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연구대상국의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OECD 국제비교 데이터, 국가별 법·제도 및 공공기관 보고서,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탑재 자료, 해외출장 면담자로부터 얻은 서면자료, 학술

논문, 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수집한 자료를 ‘평가의 목적, 관련 법 및 전달체계, 평가 절차, 평가 내용(지표), 평가결과 활용,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로 나누어 내용별로 국가 간 비교를 하였다.

넷째, 연구대상국의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 관련자(공무원, 교수, 교사)를 면담한 결과를 녹음하여 기관 평가의 배경, 목적, 방법, 제한점 등을 알아보았다.

다. 국내 면담 실시

면담조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 평가·평가인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국제비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보다 심층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담참여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원장, 학계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자였으며 국제비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진행되었다. 면담 목적에 따른 면담자와 면담시기는 <표 I-3-1>과 같다.

<표 I-3-1> 국내 면담대상자 정보

면담 목적	대상자	인원수	시기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현황과 의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명	3월
	어린이집 원장	2명	4월
	학계 전문가	1명	3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2명	9월
	학계 전문가	3명	9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2명	10월

라. 연구대상국 해외출장

연구대상국의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연구대상국 4개국 중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로 2014년 8월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를 획득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 담당자 및 현지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기관 대상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해외출장을 가지 못했던 호주를 대상으로는 관련 담당자를 OECD ECEC Network(2014년 6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표 1-3-2〉 해외출장 면담대상자 정보

국가	대상자	직책 및 소속기관	
노르웨이	Marit Solvoll	공무원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Katrine S. Teigen	공무원	Kommunesektorens organisasjon
	Yngvild Fløgstad	공무원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Eli Aspelund	공무원	Oslo kommune
	Nina Eiddal	교사	Lille Ekeberg Barnehage
	Frikk Fabian	교사	Lille Ekeberg Barnehage
영국	Wendy Ripley	공무원	Ofsted, Yorkshire Senior
	Margy Whalley	교수	Pen Green Research, Development & Training Base and Centre for Children & their Families
뉴질랜드	Pat Davey	평가자	ERO's Central Region Office
	Melanie Redshaw	원장	Little Papis Early Childhood Centre
	Sandra Collins	평가자	ERO national office
	Caroline Mareko	교사A	Toru Fetu Kindergarten
	Jane Horrax	교사B	Toru Fetu Kindergarten
	Shelly Rao	평가자	Senior Advisor Pacific of ERO
	Deirdre Shaw	평가자	Senior Education Evaluator
호주	Gillian Mitchell	공무원	Education Department

마. 학계전문가, 공무원, 교사 대상 설문조사

국제비교 연구 결과로부터 추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정책방안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유아교육·보육 학계전문가 121명, 공무원 100명, 교사 400명(유치원 교사 200명, 어린이집 교사 200명) 총 621명을 대상으로 2014년 9~10월 실시하였다. 조사 목적은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설문문항은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 공무원, 교사의 의견을 살펴보고 집단에 따라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표집 정보는 아래 〈표 I-3-3〉에 제시되었다.

〈표 1-3-3〉 설문조사 대상 표집

분류		인원수(명)	
학계 전문가	유아교육 관련 전공 교수	83	121
	보육 관련 전공 교수	38	
공무원	유아교육 관련 공무원	41	100
	보육 관련 공무원	59	
어린이집 교사	국공립	50	200
	민간	56	
	가정	54	
	기타(법인, 직장)	40	
유치원 교사	공립	80	200
	사립	120	
총		621	

바. 자문회의 및 교사 협의회 개최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검토하고 각 국가별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방안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비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교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1-3-4〉 자문회의 및 교사협의회 대상자 정보

면담 종류	대상자	인원수	시기
전문가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	5명	11월
	관련 기관 전문가	2명	11월
교사 협의회	유치원 원장	1명	11월
	유치원 교사	1명	11월
	어린이집 원장	1명	11월
	어린이집 교사	1명	11월

4. 연구범위 및 대상국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유아교육·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국제비교로 질 관리를 위한 방법 중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국제비교에 한정하였다.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를 가리킬 때 영국이나 노르웨이에서는 inspection으로 표현하였으며, 호주에서는 assessment 혹은 rating, 뉴질랜드에서는 review 혹은 evaluation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용어를 기관 대상 평가로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로는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대응시켰다.

나. 연구대상국 선정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대상 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가 선정되었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국가수준에서 관리하는 국가 중에서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연구대상국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OECD 국가 중심으로 기관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국가를 살펴보았다. 주요 국가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 I-4-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보육기관 및 이용원아의 국공립 비율, 평가기관의 독립성 여부, 평가방법을 고려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별 비율에서 국공립이 다수인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유아교육·보육 상황이 유사한 국가를 선정하였다. 유치원·어린이집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담당기관과 정부 부처와의 독립성 여부를 고려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개선 방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가 중앙정부 중심인 외부평가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과 호주와 유사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기관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기관 대상 평가가 지방분권화되어 있는 노르웨이, 평가에서도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는 뉴질랜드로부터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1-4-1〉 OECD 주요 국가별 개요

		독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아교육· 보육 통합 여부 및 담당부처	연령	통합	통합	통합	통합	통합	통합	3세 미만	3-5세
	담당부처	가족·노인·여성· 아동부	교육부	교육과학부	교육연구부	교육부	교육부	통합 시범 운영 중 '인정아동원' 운영 후생 노동성	문부 과학성
질 평가 주체		지방·아동복지 청	Ofsted	주/시 당국	시 당국	ERO	주 정부	후생 노동성	문부 과학성
질 평가 기관	독립여부	독립 X	독립 O	독립 O	독립 X (담당부처 직관할)	독립 O	독립 O	독립 O	독립 △
	서비스 질	O	O	O	O	O	O	O	O
	교사 질	O	O	O	O	-	O	O	O
	교육과정 운영	O	O	O	O	O	O	O	O
유아 발달	O	O	-	O	O	-	O	O	O

자료: OECD(2012/2013).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및 각 국가의 유아교육·보육 관련 부처 홈페이지(참고문헌에 기재) 참고함.

다. 국제비교 분석 틀 추출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를 위한 국제비교 분석 틀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요와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시사점을 얻기를 바라는 영역이 되며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 틀의 기능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영역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아래 <그림 1-4-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4-1] 국제비교를 위한 분석 틀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주로 인식된 부분은 평가의 목적, 법/전달체계, 평가 절차, 평가내용, 평가결과 및 활용,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로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의 하위 요소는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개선 방향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이러한 하위요소는 연구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한 준거에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면, 앞서 연구대상국의 선정

이유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기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거나 평가 결과 활용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를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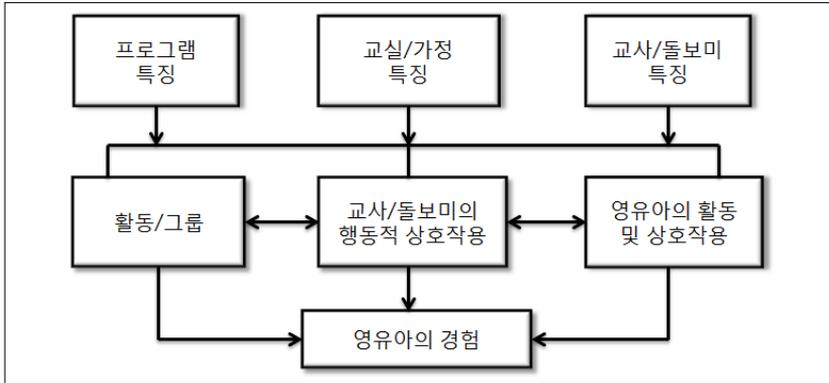
국제비교를 위해 연구대상국의 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아교육·보육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맥락을 고려하여 추출하였다.

II. 연구의 배경

1. 유아교육·보육 질의 개념 및 중요성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아동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배경에서 다수 강조되고 있는 반면 유아교육·보육 질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Sheridan & Schuster, 2001).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은 한 사회에서도 정책입안자, 서비스 제공자, 부모와 영유아 등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지며(Taguma, 2013),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것도 아니지만, 같다고도 할 수 없다(Layzer & Goodson, 2006). 유아교육·보육의 질은 “본질적인 특성상 상대적인 개념이며, 일반적이거나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 신념,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Pence & Moss, 1994, p.72; Ceglowski & Bacigalupa, 2002에서 재인용)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교육·보육의 질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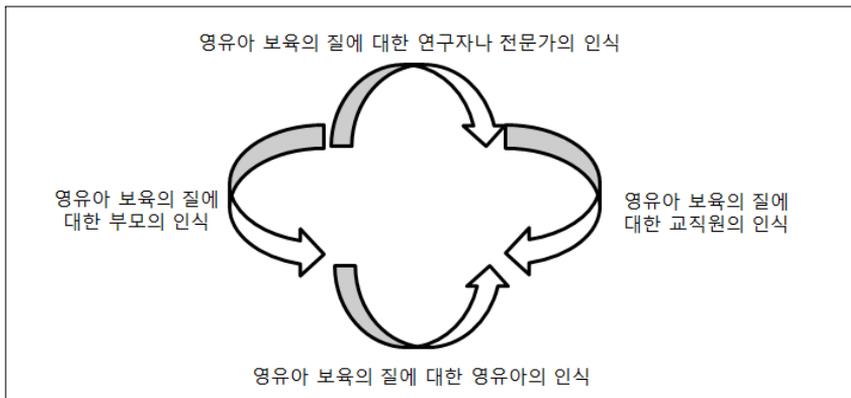
Layzer와 Goodson(2006)은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이나 영유아 경험의 측면(p.558)”으로 정의하였고 이 중심에는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 경험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구조적 특징과 교사의 특징으로 나누고 구조적 특징에는 프로그램의 특징, 교실 및 가정의 특징을, 교사 특징에는 영유아의 경험, 활동과 그룹, 교사의 행동과 상호작용, 유아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포함하였다. <그림 II-1-1>은 유아교육·보육이 영유아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가 참여하는 활동은 프로그램, 교실/가정, 교사의 특징에 영향을 받으며 활동과 교사 행동과 상호작용, 교사와 영유아 간의 행동 및 상호작용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관의 구조적 특징과 교사의 특징은 영유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 그림의 각 요소들은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료: Layzer & Goodson(2001). The “quality” of early care and education settings: Definitional and measurement issues. p.563 표를 번역함.

[그림 11-1-1] 유아교육·보육에서 영유아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Katz(1993)도 일찍이 유아교육·보육의 질에 대한 4가지 시각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나 전문가의 시각,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시각, 기관 교사의 시각, 영유아의 시각으로 나뉘지는데 연구자나 전문가의 시각은 다른 나머지 접근방법에 비해 더 많이 연구되어 왔다. 부모의 시각에서 바라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나 교사나 영유아의 시각으로부터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관의 질을 논할 때 한 시각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Layzer & Goodson(2001). The “quality” of early care and education settings: Definitional and measurement issues. p.563 표를 번역함.

[그림 11-1-2] 유아교육·보육에서 영유아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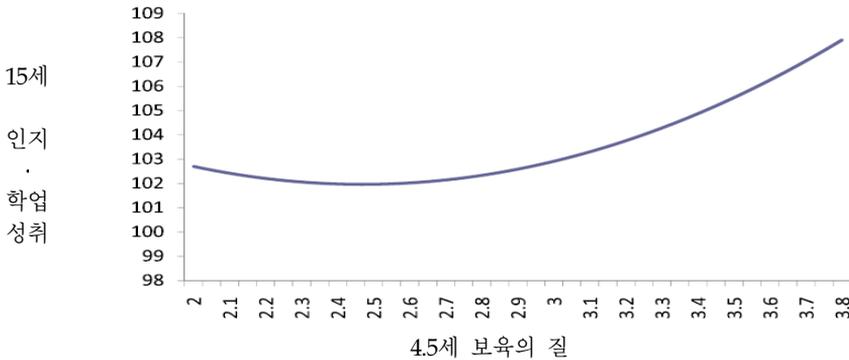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아교육·보육의 질이나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구성하는 요인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 전문가, 학문적 연구의 입장에서 기관의 질이 주도적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Ceglowski & Bacigalupa, 2002) 보다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의 구성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OECD(Taguma, 2013)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대체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자격, 물리적 공간, 교육과정, 교사 양성 및 보수교육 등과 같은 정부 수준에서의 구조적인 질과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 교사와 부모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교사 수준에서의 과정적인 질, 그리고 이용자 개인적 차원에서의 아동발달의 결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조적 질에 관련된 요인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법이나 법령 등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며 과정적 질에 관련된 요인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제재보다는 교사의 연수나 자기장학 등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적 질에 속하는 요인도 구조적 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두 종류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교육과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은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의 근접성에 따라 원점(distal) 변인과 근점(proximal) 변인으로 나눌 수도 있다(Dunn, 1993; 장명림·김은영·박수연·김온기·이일주, 2009에서 재인용). Dunn(1993)에 따르면 원점 변인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 유아가 속한 집단크기, 교사의 경력, 물리적 환경 등이 해당하며, 근점변인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아동 간 상호작용, 목표, 교수-학습 전략, 지도 등이 해당된다.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왔는데, 생애 초기 겪은 부정적 경험의 위험성과 양질의 유아교육이나 보육이 아동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프로그램 수행과 함께 장기간동안 자료를 수집하며 종단연구(예: 미국 NICHD 종단연구, 영국 EPPE 종단연구 등)가 가능해짐에 따라 초기 경험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NICHD에서 수행한 종단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단기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준비도나 언어발달을 예측하

며(NICHHD, 2002), 4.5세에 경험한 보육경험이 부모의 양육특성과 함께 6학년 시기의 어휘력을 예측하고, 기관 보육에 오랜 시간 노출된 아동에게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Belsky, Vandell, Burchinal, Clarke-Stewart, McCartney, Owen, & NICHD ECCRN, 2007). 또한 15세 인지·학업성취와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여기서는 초기 보육의 질이 초등학교 시기의 인지·학업성취를 거쳐 15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질의 보육을 경험한 유아에게서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보고되었다(Vandell, Belsky, Burchinal, Steinberg, Vandergrift, & NICHD Early Child Care, 2010).



자료: Vandell et al.(2010). Do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tend to age 15 year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p.746.

[그림 II-1-1] 보육의 질의 장기적 효과

영국의 EPPE 종단 연구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보육의 질이 5년 뒤 문해력과 수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11세에서의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OECD, 2013).

2.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수단 및 기관평가의 중요성

OECD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 구성요소별 다섯

가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2/2013). 첫 번째는 유아교육·교육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 실현을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 수립은 각 정책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정부부처의 정책 방향이 일관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실행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실행자들, 그리고 부모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또한 명확한 지침 설정은 나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과 돌봄의 환경을 보장해 준다. 부모에게도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두 번째 수단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은 기관 유형 및 지역 특성 등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교사들에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교사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들의 자녀가 각 시기에 성취해야 할 학습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위해 교육과정 수립 시 이분법적인 커리큘럼(예; 학업지향적 접근 대 종합적 접근, 교직원 중심적 교육 대 아동 중심적 활동 등)을 지양해야 하고, 개인적 접근에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수준은 교직원에 대한 것으로 자격 및 양성 교육, 보수 교육에 대한 것이다. 우수한 교사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단순히 자격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질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교직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교직원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들은 교직원들이 아동을 참여하게 하고, 아동과 혹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고무시키며, 다양한 발판화(scaffolding)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다. 교직원의 이러한 역량을 발현하게 하는 데이는 근로 여건 또는 환경과 관련되며 보다 나은 환경은 교직원의 직업만족도 및 지속적인 근무에 기여한다. 이는 교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민감하게 아동들과 소통하도록 하므로,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아동 발달결과로 이어진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번째 수단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부모의 참여는 건강한 아동의 발달과 학습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나아가 교사와 부모 간 파트너십은 영유아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가정에서의 질 좋은 학습과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부모의 참여는 아동의 이후 학업성취, 높은 학업 완성, 사회-정서적 발달, 사회적응과 상당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참여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아동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정과 ECEC 서비스 사이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며, 특히 취약가정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결속과 공공질서를 증진시키는 환경과 사회적 자원의 근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유치원 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모니터링의 한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및 정확한 정보는 정책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돕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질 관리에 있어 점검이나 평가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 수준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개선을 돕는다. 실제로 질적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교실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Reach and Risk Report, 2011-2012; RAND, 2008; Yazejian & Iruka, 2014).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평가인증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업무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교사 효능감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서문희·김은기 외, 2009). 참가자의 자기 보고 외에 서문희 등(서문희·신희연·송신영, 2009)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평가인증 참여 전 현장관찰자를 파견하여 질을 측정하고, 인증 후 자료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인증 참여 후에 인증 전 관찰 시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개별 시설의 점수 상승 외에도 전반적으로 기관 평가가 높아지는 점 역시 서비스 질적 수준에 미치는 평가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영유아 대상 서비스 점검에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점검 결과를 통계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2009년 5%에서 2013년 2%로 줄었고 ' 좋음' 과 '뛰어남' 등급을 받은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경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이 같은 관계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Pianta et al., 2008).

품질 향상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 평가나 점검을 통한 질 관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이 갖는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공립 기관보다 민간이 설립한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보육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서비스의 질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해원 (2014)은 이러한 민간 위주의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상황에서 평가나 점검이 보육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보고 있다. 유치원 또한 사립기관의 비율이 높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링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3.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우리나라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다. 유치원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개요, 운영체계, 평가지표, 문제점 및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개요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위한 영역과 분석준거를 추출하였다.

가. 유치원 평가

1) 유치원 평가 개요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에 개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14년부터 제3주기를 시행

중에 있다.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 현황을 보면 사립보다는 국공립 유치원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평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기관 설립 유형에 상관없이 유치원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3-1〉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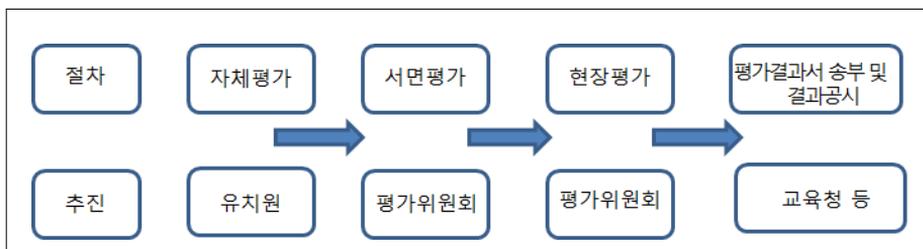
단위: %(개원)

시도	유치원 현황			제2주기(1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제2주기(2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완료율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비율	53.0	47.0	100.0 (8,404)	75.5	24.5	100.0 (2,226)	60.4	39.6	100.0 (2,963)	78.0	43.6	61.8

자료: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2

2) 유치원 평가 운영체계¹⁾

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교육부는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가 유치원 평가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은 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통지표 및 매뉴얼을 제공하고,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이 속한다. 시도교육청은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위원 연수를 운영, 평가 결과 입력, 평가 관련 공시정보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교육부, 2014)



자료 : 교육부(2014). 제 3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p.12.

[그림 II-3-1] 제 3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체계

1) 교육부(2014)의 제 3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가) 자체평가

자체평가는 유치원 평가과정의 첫 단계로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유치원의 운영과 교육활동을 점검·평가하는 것이며(교육부, 2014), 각 지자체별로 유치원이 각 지표와 요소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평가 편람을 제공하고 있다(장명림·안정은·백승선, 2011). 장명림(2007)은 자체평가의 목적은 첫째, 유치원 스스로 기관의 현재의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실천함으로써 유치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둘째, 평가단의 유치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김영희, 2011, 재인용).

자체평가는 평가 준비 단계, 평가 실시 단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단계, 평가 결과 활용 단계로 구분되며, 이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평가 자료를 수합·정리하며,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교육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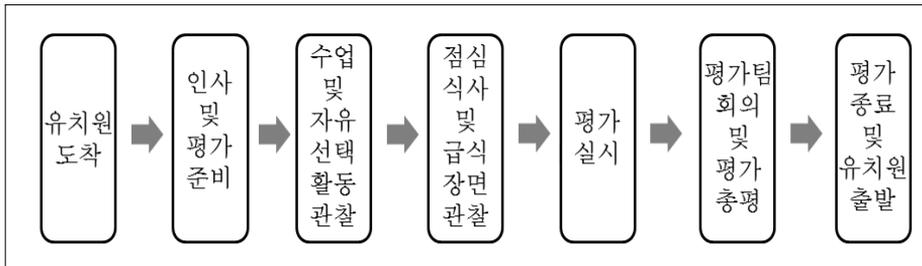
나) 서면평가

서면평가는 평가 위원이 편람에 제시된 평가 지표, 요소 및 기준을 이해하고,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과정으로, 유치원교육계획서와 유치원 자체평가보고서로 대체된다. 서면평가의 목적은 평가위원이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유치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를 토대로, 현장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으며, 현장평가 시에 확인 및 수집해야할 정보나 자료를 점검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위원은 서면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여 현장 평가 시에 교사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서면평가는 사전에 해당 유치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평가 시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교육부, 2014).

다) 현장평가

현장평가는 유치원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평가위원들이 평가 대상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를 토대로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4). 현장평가는 유아교육전문가, 현장 교원,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하며, 유치원 도착, 평가준비, 수업 및 자유선택활동 관찰, 점심식사 및 급식 관찰, 관련자료 및 관계자 면담, 평가팀 회의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김영희, 2011). 제 2주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한 유치원에서 1일 5-6 시간이 소요되며, 평가 주관 기관은 대상 유치원과 방문 날짜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수업 관찰 역시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치원과 평가팀 간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평가로 인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소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관리 및 상태 등에 대한 관찰과 면담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교육부, 2014)



자료: 교육부(2014). 제 3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p.101.

[그림 11-3-2] 유치원 평가의 현장평가과정

라) 평가 결과 처리 단계

제 3주기 유치원 평가에서는 평가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공개내용으로는 유치원 기본정보(유치원, 학급, 운영, 교직원 현황 등), 평가 결과(총평, 영역별 소견, 강점, 한계, 이력 등), 우수 유치원 선정(시도별 제 3주기 평가 참여 유치원 중 상위 11% 해당 유치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 3.0정책 실현 및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책무성 제고를 통한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와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 보장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더불어 유치원의 자율적 운영실태 진단과 개선, 우수 유치원의 자긍심 고취 및 유치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본다(교육부, 2014).

유치원 평가 후 총평, 영역별 소견, 이력, 우수 유치원 등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를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장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교육부, 2014).

3) 유치원 평가 지표

유치원 평가 지표는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 및 안전, 운영관리의 4가지 공

통지표가 있으며, 각 지표별로 2~3개의 평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제 2측기 평가때 15개 지표였던 것에 반하여 지표가 11개로 줄었고 평가 요소도 47개에서 30개로 축소되었다. 각 지표는 5점 척도로 측정되고, 일부 중요 지표에 대해서는 2-3배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설립별, 규모별로 평가지표를 차별화·유형화 하지는 않되, 평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교육부, 2014)

대체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며,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현장평가만 실시하고 교직원 관리, 부모교육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항목은 별도 점검한다. 지표는 대체로 규모나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운영관리와 교육환경 중 교재·교구 구비 및 제공에 대한 지표는 내용에 따라 규모나 설립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II-3-2〉 제 3주기 유치원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및 척도구분 종합표

평가 영역 (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방법				척도구분	
		서면	현장	정보 공시	별도 점검	규모 별	설립 별
I. 교육 과정(30)	1. 교육목표 및 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10)	○	○	○			
	2. 일과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의 적합성(15)	○	○				
	3. 평가 방법 및 활용의 적절성(5)	○	○				
II. 교육 환경(15)	4. 실·내외 교육환경 구성 및 활용의 적합성(10)		○				
	5. 교재·교구 제공 및 관리의 적절성(5)		○			○	
III. 건강 및 안전(15)	6. 유아의 건강관리 및 지도의 적절성(10)	○	○	○			
	7. 유아의 안전관리 및 지도의 적절성(5)	○	○	○	○		
IV. 운영 관리(30)	8. 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전문성 제고(10)	○ 요소 2, 3	○ 요소 2, 3		○ 요소 1		○
	9.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절성(5)			○	○		
	10.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5)	○	○				
	11. 방과후 과정 운영의 적절성(10)	○	○	○			
총점	90점						

자료: 교육부(2014). 2014년도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pp.20-23에서 발췌함.

*공동지표 90점, 자체지표 10점, 100점 만점.

4) 개선에 대한 요구

유치원 평가가 전국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참가율을 보이며 1, 2 주기의 평가를 마치고 3주기에 돌입하였으나, 운영 체계나 지표, 실효성 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문제점은 새로운 주기에 들어서며 개정되어 반영된 것도 있으나, 일부는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계와 정책보고서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가) 운영체계

유치원 평가는 별도 평가 전담기관 없이 각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진행한다.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 없이 시도 교육청이 평가를 담당하고 평가위원 역시 별도 인력을 구성하지 않고 교수, 장학사, 유치원 원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평가위원 선정과 교육,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한편 평가로 인한 인센티브가 없어 이러한 것이 유치원 평가에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를 준비하며 소요되는 추가적 경비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평가를 준비하며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고되었다(유수경·송연숙, 2009).

현장평가가 유치원 평가체제로서 적절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서류점검을 통해 유치원의 겉모습만을 이해하기 보다는 수업관찰, 면담, 주요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관찰이 포함되는(성기옥, 2005)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체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사는 평가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유치원 평가의 이해를 돕는 연수 및 현직교육으로 해소될 수 있다.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교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작성 지침 제공과 함께 교사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지지하는 교육을 현직교육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강민정, 2011).

나) 지표

평가지표의 영역과 항목에 대해서는 1주기와 2주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1주기에 설립유형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지표로 모든 기관을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이경화·심은주, 2010),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융통

성 있는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강수경·이기숙, 2010b), 이러한 문제점은 2주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개정되었다(박사빈, 2014).

한편, 2주기 유치원 평가 지표만으로는 단위 유치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어렵다고 보고 더 세부적인 자체진단 체크리스트가 현장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이금구·이정옥, 2013). 추후 유치원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로 현장 교원들이 유치원 평가 지표의 수행 여부를 손쉽게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이금구·이정옥, 2013).

다) 평가절차

자체 평가 보고서가 객관성 있고, 신뢰 높은 자료로서 서면평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에 대한 목적, 추진 일정, 추진 방법, 평가항목별 작성 등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평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획일적인 방법 보다는 관찰이나 면담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경철·김안나, 2010).

유치원 평가가 단순히 평가만을 위해서가 아닌, 실질적인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이전 단계부터 문서정리나 수업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강수경·이기숙, 2010b). 교사 역시 구체적인 평가매뉴얼과 함께(김순환, 2010) 유치원 교원 출신이나 현장 감각이 충분한 조력자를 활용하여 각 유치원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김순환, 2010; 손영빈·윤기영, 2011).

유치원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유치원업무와 평가 준비를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김순환, 2010; 이양지, 2011) 과중한 서류 업무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양지, 2011).

또한, 최희숙과 이대균(2011)은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책무성 제고라는 유치원 평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조력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조력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 기관의 설립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력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승희와 노은호(2011)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의 유치원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유치원이 가진 기관의 특성

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유치원 평가가 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컨설팅,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강경희, 2014).

라) 평가자 선정 및 관리

유치원 평가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면서 유치원 평가위원의 역량 제고에 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평가위원 대상 1일간의 사전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양적으로 부족하고(박사빈, 2014) 그 내용이 유치원 평가의 소개 및 업무 절차 수준에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체계적이거나 실제적이지 못해, 정확한 지식 습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안나, 2011).

유치원 평가위원이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유치원의 원장 자격으로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평가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이들에 대한 추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안나, 2011). 이러한 문제는 현재 평가자의 개인적 성향, 관점의 차이에 따라 신뢰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어(강수경·이기숙, 2010a) 개선이 필요하다.

평가위원에 대한 교사의 불만 역시 보고되고 있다. 평가위원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단면만 보는 평가를 한다는 것과 함께 서로 다른 유치원에 대한 동일한 기준, 평가위원들의 시각이 다양하다는 점이 불만으로 보고되고 있다(손영빈·윤기영, 2011).

또한 평가위원이 현직 교수나 원장, 장학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기 중에 일정을 조절하여 평가에 임해야 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강수경·이기숙, 2010a). 이러한 어려움은 평가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유치원 평가위원의 책무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유치원 평가의 효과를 위해서는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평가위원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김안나, 2011).

나. 어린이집 평가인증²⁾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요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2차 평가인증에 이어 2014년 10월부터 제 3차 평가인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b).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평가인증 사업은 효과적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며,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모에게는 어린이집 선택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을 지원하며,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³⁾.

평가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이 해당되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2) 평가인증 운영체계

가) 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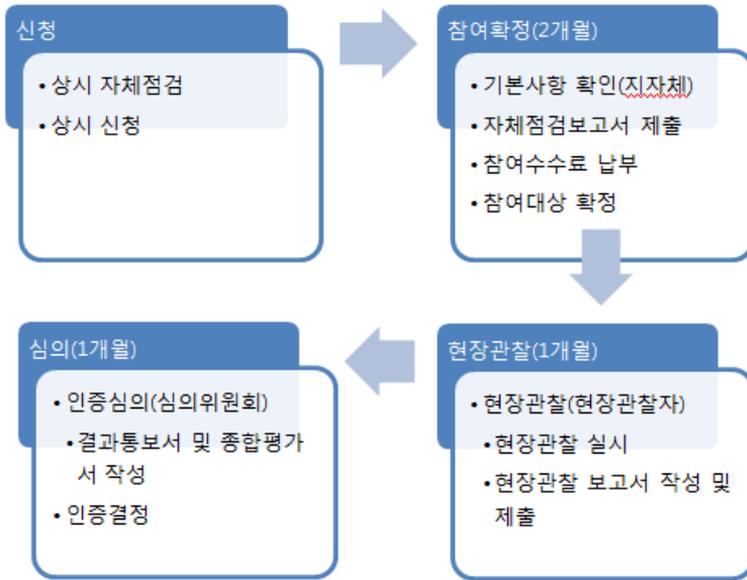
평가인증은 자발적인 참여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 시기의 인증 상태에 따라 신규인증 또는 재인증으로 나뉘게 되는데 신규인증은 신청 당시 미인증

2) 보건복지부(2013)의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보건복지부(2014)의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4)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안내',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최윤경·도남희·송신영(2013)의 보육의 품질관리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일부 참고하여 재구성함.

3) 한국보육진흥원(n.d.).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안내.

https://www.kcpi.or.kr/site/hp2/contents/business_n/business01_1.jsp# 에서 인출(2014. 7. 1)

상태인 어린이집이 해당되고, 재인증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한 어린이집이 해당된다. 평가인증을 받길 원하는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립한 연간 일정을 참고하여 신규인증은 원하는 기수에, 재인증은 정해진 기수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안내. p.6.

[그림 11-3-3]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나) 참여확정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사항 확인 절차와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통해 참여가 확정된다. 각 시·군·구청은 신청 어린이집이 기본사항 중 9개의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사항,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어린이집의 차량운행,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4개 기본항목을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필수항목은 모두 어느 하나라도 미 충족 시에는 참여확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본항목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점수를 감점한다.

〈표 II-3-3〉 평가인증 기본사항: 필수항목(9개)

항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적용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표 II-3-3 계속)

항목	평정	평정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치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 참조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285.

〈표 II-3-4〉 평가인증 기본사항: 기본항목(4개)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및·민원사항	어린이집 차량운행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점	8점	2점	2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안내. p.8.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이 끝난 후에 각 시설은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2차 시행까지는 항목별 수준에 대한 점검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3차 시행에서는 어린이집의 특·장점과 보육프로그램, 개선노력 등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표 II-3-5〉 자체점검보고서 내용: 2차 지표와 3차 지표

구분	2차 지표	3차 지표
자체점검보고서 내용	항목별 수준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어린이집의 특·장점	어린이집 특·장점 및 보육프로그램 질적 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노력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안내. p.8.

평가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 신청에 의함⁴⁾에 따라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⁵⁾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찰

어린이집의 참여가 확정되면, 어린이집 1개소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파견되어 1일간 관찰을 실시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1주간의 관찰주관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현장관찰자는 관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을 시작한다. 관찰자는 1인당 1개반 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하며,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현장관찰이 종료되기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 확인 한 후 '현장관찰 상호확인서'⁶⁾에 서명하는 단계를 가진다.

현장관찰 과정에서 부적절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시·도와 시·군·구에 이를 통보하고 각 시·군·구는 그 개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하고,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장관찰자의 자격은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혹은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자에게 주어진다. 단,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평가인증 관련 업무(조력, 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다.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고 있다.

4) 2015년 의무평가제 예정임.

5) 45만원(100인 이상), 30만원(40인 이상), 25만원(39인 이하)

6)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 사례, 평가인증 관련 문서 구비 등

라) 심의

현장관찰이 완료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를 심의위원이 검토하여 인증을 결정하는 심의 단계가 진행된다. 심의는 3인 1조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조별로 진행되며, 심의기준에 맞추어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전문가⁷⁾, 어린이집 보육교직원⁸⁾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인증은 기본사항확인서 15%, 현장관찰보고서 65%, 심의위원회의견서 20%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그 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거하여, 인증,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는 인증을 받게 되고,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인증 시설의 경우 인증유보, 재인증 시설은 불인증을 받게 된다. 또한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불인증 처리된다.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가 가능하다.

인증결과는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단,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재인증 사전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인증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는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참여변동사항 확인 후 심의 과정 중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게 된다.

마) 재참여 관리

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7)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 및 기타 보육 관련 전문가

8)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및 보육교사(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어린이집 경력이 총 4년 이상인 자,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어린이집 경력이 총 6년 이상인 자)

가 가능하다. 어린이집이 재참여를 신청하며 2개월에 걸쳐 재점검기간을 가진 후에, 재관찰/재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재참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 및 재참여수수료⁹⁾를 납부하면 되고, 이 역시 환불규정¹⁰⁾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관찰을 받게 된다.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기본사항 및 우수사례·부적절사례를 재확인한다. 재참여 인증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불인증일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가 된다.

바)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평가인증의 목적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있는 만큼 인증 당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원장이나 교직원이 교체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원장이 교체된 경우, 신입 원장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입 원장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사 변동은 보육교직원의 이직이 잦은 보육현장 특성과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의 한계로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럼)등을 통해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는 확인점검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운영형태별평가 인증 지표 전 영역을 점검한다. 확인 결과 점수가 일정 기준¹¹⁾ 이상일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9) 23만원(100인 이상), 15만원(40인 이상), 13만원(39인 이하).

10)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90%,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전까지: 50%.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후: 0%.

경우 보육컨설팅 연계 또는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어린이집의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하며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인증 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나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는 등의 취소사유 발생 시, 또는 품질에 변동이 생길만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표 II-3-6 참조).

〈표 II-3-6〉 평가인증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
- 어린이집 폐지,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 인증 후 주요 품질별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¹²⁾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위와 같은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인증취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해야하며,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되고,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 취소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회수하여 폐기한다.

11) 일정 기준은 최근 연도 인증어린이집의 접수대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변경될 수 있음.
 1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운영형태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개월) 미이수.

품질변동사유 발생 시 필요에 따라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에는 인증이 유지되며,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확인방문 실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하며, 지자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한다.

3) 평가인증 지표

현장관찰 단계에서 현장관찰자는 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관찰 지표는 시설 유형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6개 영역 50개 공통 지표가 적용되며 기존에 별도 지표로 구분되었던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정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지표의 구성요소 평정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보육의 질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과정적인 질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장관찰은 계량화가 어렵다는 특성 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이다. 지표의 적절성은 물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명확한 평가방향 제시가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변별력을 갖기 위해 개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3차 지표에서는 지표의 적절성과 변별력 강화를 위해 2차 지표 중 달성도 높은 항목을 통합·조정하고 지표별로 필수요소와 기초요소를 설정하여 필수요소 미충족 시 해당지표를 0점 처리하고 기초요소는 미충족 시 해당지표를 1점 처리하도록 개정하였다(그림 II-3-4 참조). 또한 세부 평가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여 명확한 평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4).

또한 보육서비스의 과정적 질을 보다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실행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현장에서 문서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주고자 보육일지 확인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하고 현장관찰주간을 2주에서 1주로 축소하였다. 또한 아동학대나 안전 문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이나 전문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구성요소		평가방법	결과
1	보육실은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 특성을 고려한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규모-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내 흥미영역 배치 가능	관찰	○Y ○N
2	흥미영역은 영유아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관찰	○Y ○N
3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공간이 있다. (연호) ※ (소규모-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내 휴식공간 배치 가능	관찰	○Y ○N
4	휴식공간은 휴식을 돕는 소품(쿠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	○Y ○N
5	보육실 공간은 교사가 영유아를 잘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관찰	○Y ○N
6	영유아를 위한 자료나 활동물이 영유아가 감상하고 공유하기에 적절하게 전시되어 있다.	관찰	○Y ○N
합 계			총 개

평정기준 우수(3점) : Y가 5개 이상 (기초 포함) / 보통(2점) : Y가 3-4개 (기초 포함)
 미흡(1점) : 기초 N 또는 Y가 0-2개

자료: 보건복지부·한국교육진흥원(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안내. p.20.

[그림 II-3-4] 평가인증 제3차 지표: 영역 1 보육환경 1-1 구성요소

<표 II-3-7>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6개 영역 50개 항목)

영역	하위 영역
영역1. 보육 환경 (8항목)	1-1. 보육실은 영유아의 자율적 선택과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흥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실내공간(보육실 외)은 영유아와 보호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1-3. 옥외놀이터는 자연을 느끼며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1-4. 각 반의 크기와 인원은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1-5. 실내외 설비와 가구는 영유아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1-6.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자료는 영역별로 다양하고 충분하게 구비되어 관리된다.
	1-7. 각 반의 놀잇감과 활동자료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반영하고 있다.
	1-8.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 가구, 비품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영역2. 건강 (8항목)	2-1. 보육실은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된다.
	2-2. 실내외 공간(보육실 외)은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된다.
	2-3. 보육교사와 영유아는 손 씻기 등 위생습관을 실천한다.
	2-4. 보육교사와 영유아가 아픈지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한다.
	2-5.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2-6. 식자재의 구입·보관 및 조리공간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2-7. 조리 및 배식과정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2-8. 급간식의 내용과 양은 영유아의 영양균형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

(표 II-3-7 계속)

영역	하위 영역
영역3. 안전 (8항목)	3-1. 보육실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된다.
	3-2. 실내외 공간(보육실 외)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없이 관리된다.
	3-3. 실내외 놀잇감이 안전하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3-4. 영유아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성인의 보호 하에 있다.
	3-5.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3-6. 어린이집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설비와 인력이 있다.
	3-7. 영유아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피훈련과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는다.
	3-8. 보육교직원은 다친 영유아를 지침에 따라 처치하고,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영역4. 보육 과정 운영 (8항목)	4-1. 어린이집은 연령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계획하여, 이를 운영한다.
	4-2.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보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4-3. 보육교사는 일과를 균형 있게 계획하고 융통적으로 운영한다.
	4-4.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일과를 운영한다.
	4-5. 보육교사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놀이와 보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4-6.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개별 활동과 놀이에서 동기유발 및 주도적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7. 보육교사는 대소집단 활동을 연령에 적합하게 운영한다.
	4-8. 보육교사는 보육과정 및 영유아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영역5. 보육 활동과 상호 작용 (10항목)	5-1. 영유아는 대소근육 발달을 위해 연령에 적합한 신체활동에 참여한다.
	5-2. 영유아는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언어활동에 참여한다.
	5-3. 영유아는 연령에 적합한 자신과 가족, 주변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경험을 한다.
	5-4. 영유아는 일상에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표현할 기회가 있다.
	5-5. 영유아는 친숙한 주변 환경에서 자발적인 자연탐구활동을 경험한다.
	5-6. 영유아는 발달수준과 흥미에 적합하게 역할 및 쌓기놀이를 충분히 한다.
	5-7.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5-8. 보육교사는 개별 또는 집단으로 영유아와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
	5-9. 보육교사는 영유아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5-10.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지도한다.
영역6. 운영 관리 (8항목)	6-1. 어린이집은 질 높고 투명한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한다.
	6-2. 원장은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6-3.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처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4. 어린이집은 개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5.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개별 원아의 기록을 관리한다.
	6-6. 어린이집과 가정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6-7. 어린이집은 가족을 지원하고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6-8.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한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안내. pp.16-17.

4) 개선에 대한 요구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도입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질적 수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을 위한 개선 요구에 대해 법, 제도 및 전달체계 등의 운영체계, 평가 내용, 절차 및 방법, 현장관찰자 및 심의위원 등의 평가자, 사후관리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본격 시행되고 2015년부터 의무평가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평가인증이 자발적인 신청에 따르고 미참여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혜원(2014)은 자발적 참여 구조는 질적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은 참여율이 낮고,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은 참여율이 높은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 의사에 의한 구조에서 평가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과 지원금 없이 참여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역시 참여율을 낮출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혜원, 2014).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시설에서 평가인증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득과 실을 고려하는데 평가인증으로 인한 이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증 통과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가인증 참여 교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서 평가 수감을 위해 시설의 개·보수나 물품 구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고(김경란·서동미, 2012) 보육환경 정비나 시설물, 교재교구 및 기자재 구입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평가인증을 위한 회계 업무에 대한 어려움(하영례, 2008)이 지적된 바 있다.

황해익·김남희·정혜영(2013)은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점수에 의한 평가보다는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의 의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체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맞춤형, 구성주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는 여전히 표준

화된 잣대와 객관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 구조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황해익 외, 2013, p.482)고 지적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철학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평가내용 및 지표

평가내용 및 지표와 관련해서는 지표가 획일화되어 있어 개별 어린이집의 특징과 고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다수 보고되었다(하영례, 2008; 황해익 외, 2013). 또한 제2차 시행시기까지 기관의 규모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 전담으로 나뉘어져 동일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만3세 이상의 유아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고(최경애·양옥승, 2004) 비록 각 지표별로 영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영아반에 적용하기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이미정·이진희, 2010). 이는 곧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영아반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현상(탁옥경, 2009)과도 연결되어 있어 평가인증의 목적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특성과 각 기관별 차이와 다양성을 반영하고, 보육교직원 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연령별 적합성과 현장 적절성(이미정·이진희, 2010)이 반영된 지표가 필수적이다.

또한 일부 지표는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홍은숙·부성숙, 2011), 지표가 과도하게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상세한 지표가 평가 과정의 객관성이나 평가의 용이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기관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는 특징이나 활동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결국 기관의 획일화로 이루어져 기관 간의 다양성 부족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평가인증에서 서류 확인에 대한 비중이 높아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주 업무인 보육활동에 소홀하게 된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이연승·강민정·박선미, 2013; 정재은·정은정, 2012). 평가를 준비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니,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 일에 대한 협력이 미흡하거나 비협조적인 동료에 대한 불평 등이 생겨 갈등적 관계가 되거나, 원장이 준비과정에서의 과도한 근무를 요구하거나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차영숙·유희정·강민정, 2012).

다)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절차와 관련해서는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현장관찰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현장관찰이 하루만 이루어지므로 임시로 교재·교구들을 빌려와서 구비하거나 교실을 변경하는 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차영숙 외, 2012). 일부에서는 현장관찰 당일 보다 안정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아의 이른 귀가 또는 결석을 권유하기도 하며, 산만한 영유아들의 현장 활동 진행 등과 같이 여러 상황을 조작하여 운영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차영숙 외, 2012).

또한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있다면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평가인증지표 이해를 돕는 조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고(정재은·정은정, 2012), 조력을 적극 활용하여야겠으나, 현 조력 시스템은 조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력해야 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모호하여 조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남미경·김남희·고은미, 2009)이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인증결과의 평가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세히 보면, 인증/인증유보/불인증의 3단계 구분은 변별력이 부족하며, 학부모들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이대균·김선구, 2008). 특히 미인증 시설에 대해 미인증 사유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은 부모의 선택 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이혜원, 2014).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이 관찰과 문서점검, 그리고 필요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남희(2010)는 상호작용 및 교수법과 같은 보다 질적인 영역의 경우 보육현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비판적 자기성찰을 통한 평가, 다원적 관점을 수용하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가, 명성을 통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생기 넘치는 보육현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황해익 외, 2013).

라) 평가자 및 사후관리

현장관찰자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장관찰자간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고 체계적

선발 및 양성이 부족하여 평가전문가 양성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보고되고 있다(황해익, 2009).

평가당시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항목에 따라 유지되거나 평가 이후 즉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고 보고됨에 따라(김동례, 2007; 박경희, 2013)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확인점검 결과 평가 당시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확인점검, 취소 관리, 보육컨설팅 등이 평가 당시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자체점검 보고서에 대한 실효성은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 2012).

4. 연구대상국에 대한 개요

가. 영국

영국의 교육부는 교육 및 아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에게 그들의 배경 또는 가정환경에 구애 받지 않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고등교육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2-2015 사업계획의 6가지 우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높은 질의 학교 수 증가와 타당한 기금의 도입, 둘째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의 자격 개혁, 셋째, 관료주의 감소와 책무성 제고, 넷째, 아동 관련 전문직에 대한 훈련 및 개발, 다섯째, 기초단계 아동 대상 지원의 개선, 여섯째, 아동, 청소년 및 가족, 가장 빈곤한 계층 대상 집중적인 지원에 대한 개선이 있으며 이는 교육과 관련된 요소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2).

영국의 유아 관련 시설로는 유치원(pre-school), 놀이학교(playgrounds), 어린이집(nursery schools), 유아 학급(nursery classes), 아동 센터(children's centres)가 있다. 유치원과 놀이학교에서는 만 2-5세 아동을 위한 놀이 및 교육을 3시간 정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 또는 자원봉사자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린이집과 유아 학급은 만 3-4세 아동을 위한 곳으로 하루 일과의 일부인 수업시간 동안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부분

의 아동들은 만 3-5세로 하루 종일 또는 일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아 학급의 경우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infants' schools)과 연관되며, 일정 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아침과 오후 3시간 정도 운영한다. 아동 센터는 슈어스타트의 계획 하에 시작된 것으로 일자리센터 플러스와 건강가족지원 등의 다른 가족서비스와 더불어 출생 직후부터 만 5세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시적 그리고 공동체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ickens, Wollny & Ireland, 2012).

영국에서는 부모를 위하여 다양하게 아동보육 비용과 관련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하는 가족을 위하여 2015년 가을부터 한 영유아당 매년 2천 파운드에 달하는 지원을 하는 새로운 비과세 아동보육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는 보편적 신용거래의 일부로서 저소득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천만 파운드의 여유자금을 제공하여, 만 3-4세 아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기관인 학교 및 기관들을 지원하고자 한다(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3).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유아기 관련 종사자들의 자격 향상을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유아기 교육자 자격(early years educator qualifications)을 도입하였다. 더불어 유아기 종사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유아기 관련 종사자의 질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표준청(ofsted)과 함께 점검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한 기관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아기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위한 등록 처리를 단순화하고 규제함으로써 아동을 더욱 보호하고자 한다(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3).

나.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업무는 2006년에 아동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에서 이관된 이후로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담당하고 있다(이정원·이세원, 2013). 이에 따라 현재 노르웨이 영유아 대상 보육 및 교육 기관은 '유치원'으로 통칭되고 있다. 유치원 서비스는 0-5세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들은 대부분 5세 이전에 취학전 교육과 보호의 통합 체계에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다(OECD, 2013). 노르웨이 교육 정책의 핵심은 모든 영유아 및 청소년들이 그들의 지역, 성별,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관련 없이 교육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노르웨이 정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유치원의 역할을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첫 단계를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한 부분으로 규정짓고 있다(OECD, 2014).

노르웨이 교육연구부에서는 유치원, 교육 그리고 연구, 개인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을 키우는 것과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Government Administration Services, 2014).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개인 가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유년기의 안전한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정부의 가족 관련 정책은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존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Government Administration Services, 2014). 이와 같이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정책별로 대상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와 연관된 것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유치원에서는 아동들의 부모가 일 또는 학업을 하는 동안 아동을 돌보며, 노르웨이에서의 유치원은 양성 평등 획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은 만0세부터 만5세아를 위한 곳으로 유치원의 구성과 업무를 위한 기본 계획은 유치원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본 계획에서는 모든 유치원은 아동 발달과 학습을 지향하고,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을 축진을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4a).

노르웨이에서 유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부모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며, 부모 부담액과 최대 금액은 한 달에 2330NOK을 넘지 못한다. 최대 금액은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재정지원의 전체 관리 비용 중 부모 지원금은 거의 22~30% 사이이다. 이 밖에 정부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4a).

노르웨이에서는 모든 유치원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지식 강화를 중시한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통계 자료와 최신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유아교사교육과 유치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

는 유치원 분야의 질적 성장 점검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치원 분야의 상태에 대한 연간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유치원의 존재와 관련된 효과 연구에 대한 장기적 그리고 질적인 종단연구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9).

다. 호주

호주의 교육부에서는 영유아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인력 계획, 가족 및 아동 보육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 사이트(<http://www.mychild.gov.au>) 제공, 영유아기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국가수준 질 체계(National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기 교육을 위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위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4a).

호주 정부에서는 38개의 유아 학습과 보육 센터(Early Learning and Care Centres)를 호주 도처에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장시간 보육을 함에 있어서 높은 질 그리고 유아 학습과 보육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센터는 주립기술전문대학, 대학 교내 또는 다른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다. 정부에서는 38개의 센터가 호주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정의 아동 보육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학령전기 아동을 위해 적절한 통합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n.d.).

교육부는 아동보육비 지원을 통하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이 공동체 삶 속에서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정부는 승인된 기관의 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육 지원금(Child Care Benefit) 및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을 통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보육 지원금은 소득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다음 보육 서비스를 받는 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승인 여부는 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보육비 환

급은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육 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육 지원금과 달리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가정이 부담하는 보육비의 최고 50%, 자녀당 연간 7천5백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육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보육 지원금을 공제한 다음 정산된다. 보육비 환급에 대한 자격 요건은 센터에서 자동으로 심사되며 이용 중인 기관에서 자녀의 출석기록을 수령한 후 환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Australian Government, n.d.).

더불어 유아 보육 및 유아 학습 서비스 그리고 학교 보육에 있어서도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자 한다. 그리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주 및 지역정부,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ACECQA)과 협력하여 국가수준 질 체계(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를 시행하도록 한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4b).

라.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는 1970년대 중후반에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후 1980년대 초에 이르러, 마오리족을 위한 영유아 서비스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중반에는 노동당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육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었다. 1887년부터 뉴질랜드 정부내각은 광범위한 교육행정부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사회평등위원회(the Cabinet Social Equity Committee)내에 보육, 유아교육 관련 특별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990년에는 모든 유아교육·보육서비스 기관에 대한 공익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0년에는 보육과 유치원 공통 교사 자격요건에 관한 단계별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김은설, 2011).

등록된 모든 유아교육·보육기관(early childhood service)은 기본적으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자격을 갖춘 교사를 고용하거나 다른 자격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중문화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모든 유아교육기관이 정책 수준에서 통합되었지만, 기관은 기관의 운영구조(full-day program 혹은 sessional), 기관의 조직(kindergarten, early childhood service, play-centre 등), 기관의 문화적 시각,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식,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의 나이 등과 같은 측면에서 다양하다(ERO, 2013).

유아교육기관은 크게 교사 주도와 부모 주도 기관으로 나누어지면서 교사주

도로는 유치원(kindergarten), 유아교육·보육기관(education and care service, home-based education and care), 특수아 대상 기관(Special schools that offer ECE services), 기관을 다니지 못하는 3-5세 유아를 위한 기관(Te Kura: the Correspondence School)이 있으며 부모 주도 기관으로는 마오리족 요구를 반영하는 기관(Kōhanga reo), 놀이센터(Playcentres), 놀이그룹(Playgroups), 마오리족 요구를 반영하는 그룹(Ngā Puna Kōhungahunga), 태평양족 요구를 반영하는 그룹(Pacific Island early childhood groups)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Ⅲ.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 국제비교¹³⁾

3장에서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를 기관 대상 평가의 목적, 관련 법 및 전달체계, 평가의 절차, 평가의 내용, 평가의 결과활용,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에 따라 국가별 자료를 정리하여 국제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차이점을 찾고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는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 기관 평가의 목적

국가별로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에 관련된 문서에 명시적 목적을 비교하였으며 기관 대상 평가 목적을 국가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현장에서 평가를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살펴보았다.

가. 영국¹⁴⁾

영국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종일제 보육시설(Full day care), 기간제 보육시설(Sessional), 보육도우미(Childminders), 유아학교(Nursery schools),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Primary school with nursery classes),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classes but no nursery)로 나누어진다. 종일제 보육시설은 주로 5세 미만 유아가 이용하나 0~2세 유아가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이며, 기간제는 5세 미만 유아가 이용하나 0~2세보다는 3~4세 유아가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유아학교는 2세부터 4세까지 이용하며,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

13) 본 장의 호주의 영유아 기관 평가 원고는 연구협력자인 전홍주(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가 작성하였음.

14) Ofsted(2014a). Are you ready for your inspection?, Ofsted(2014h). The report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Early Years., Ofsted(2014e). The framework for school inspection.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음.

립초등학교는 2~5세까지 이용하며,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 초등학교는 4~5세만 이용하고 있다. 초등예비학급의 경우에는 평균 이용시간이 다른 기관보다 많아 30시간 정도에 이른다. 보육도우미는 다른 유형이 기관 중심인 것과 달리 가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가(inspection)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초등학교 내 학급과 유아기 등록(Early years register)과 보육 등록(Child care register) 혹은 양쪽에 등록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a).

영국의 영유아기관 대상 평가는 교육표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 Ofsted)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은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관으로 평가결과를 국회에 직접 보고한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모든 나이의 학습자에게 교육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기관을 평가하고(inspect)하고 규제한다(Ofsted, 2014a).

교육표준청에서는 2가지 종류의 등록시스템(Childcare and Early Years register)을 가지고 있으며 초등예비학급(reception class)을 시작하기 전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5가지의 평가체계(maintained schools, independent school, Early Years Register, Childcare Register, and Children's centres)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보육도우미에 대한 등록을 시작하여 2015년 1월부터 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 곧 6가지 종류의 평가체계를 가지게 될 예정이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14). 이들 평가체계의 목적은 거의 다르지 않으나 유아기관 및 보육(Early Years/Childcare Register)에 등록된 센터기반 기관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평가(inspection)의 목적은 영유아의 보육, 학습, 발달과 영유아기초단계 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의 원리와 요구조건에 맞추어 초기의 학습목적에 따른 영유아 성장의 질과 표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육등록(Child care register)에도 등록을 하였다면 평가는 이 등록의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것이나 기관의 질을 평가하지는 않는다(Ofsted, 2014a). 영유아(Early Years¹⁵) 대상 기관에 대해 정부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유아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 이후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터주며, 둘째, 부모가 원할 경우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영유아의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린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과정에서는 이러한 3가지 목표의 측면에서 기관

15) 출생 후부터 만5세가 지난 뒤에 오는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이 이러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Ofsted, 2014h).

센터기반 기관에 비해 매우 소수이기는 하나 학교에 소속된 영유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평가(school inspection)의 목적은 기관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평가를 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을 진단함으로써 3가지의 기능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나 독립적인 평가의 결과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부모가 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둘째, 기관의 운영이 기준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과 의회에 제공하여 개선이 필요한 곳을 확인하고 공적자금의 사용에 확신을 갖거나 책무성을 지원한다. 셋째, 각 기관이나 교육 시스템 전체의 향상을 도모한다(Ofsted, 2014e).

두 가지 종류의 평가 목적을 종합해보면 영유아기관 대상 평가의 목적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록을 위한 요구수준이나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절한지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가 부모나 의회에 전달되어 기관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도 평가의 목적으로 볼 수 있었다.

나. 노르웨이¹⁶⁾

노르웨이의 영유아 대상 기관 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 운영자와 원장, 교사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고 유치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교육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inspection)의 형태로 실시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치원의 목적과 기능, 교육내용 등은 ‘유치원법’(Act no.64 of June 2005 relating to Kindergarten)과 ‘유치원 교육과정과 임무에 대한 기본계획(Framework Plan for the Content and Tasks of Kindergarten)’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유치원이 법과 기본 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점검의 형태로 유치원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유치원 질 관리에 대한 점검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지역 유치원에 대한 점검으로 공립

16)노르웨이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 Act no. 64 of June 2005 relating to Kindergartens),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7). Tilsyn med barneher, PWC(2010). Tilsyn til besvær? Undersøkelse av kommunene som barnehagemyndighet, herunder kommunenes tilsyn med barnehagene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이 점검 대상이고 두 번째는 각 주 정부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다. 노르웨이는 지방자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적 배경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고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 부문의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조창현, 2001). 이에 따라 정부의 유치원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주 정부의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각 점검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소관 지역의 유치원이 법에서 제시한 사항을 준수하고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 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점검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소유와 관리 책임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 따라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운영 부실과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자 주 정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현재 428개로, 인구에 비해 그 수가 너무 많고 일부 지자체는 인구가 수백여 명에 불과해 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모든 행정 기능을 다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PWC, 2010). 이러한 이유에 따라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에 대한 제 기능을 다하는지 주 정부의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다. 호주¹⁷⁾

호주 정부, 주 정부, 영토 정부들은 일생을 통한 유아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유아기에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9년 12월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국가수준 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 이하 NQF)’의 제정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유아기 초기의 삶이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 발달과 행복에 매

17)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홈페이지(<http://www.acecqa.gov.au>), ACECQA(2014). Guide to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nd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ACECQA(2013a).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ACECQA(2013b).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우 중요하다는 연구의 결과들이 원동력이 되었다. 국가수준 질 체계는 2012년부터 전일제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유아원(유치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고 국가 법(National Law)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들은 각 주와 지역의 관련 규제 기관 담당자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등급을 부여받게 되었다.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교직원 배치에 관한 핵심적 사항들은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ACECQA, 2013a).

NQF는 다음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 및 일관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국가수준 질 기준: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d School Age Care (National Quality Standard)
- 국가수준 질 평가 및 등급 부여
- 능률적인 규제 제도
-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 운영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은 새로운 체계를 감독하기 위해 호주 정부, 주 정부, 영토 정부들이 연합한 새로운 국가 기관으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가 체계이다. NQF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도와 개선을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법적 체계, 국가수준의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 수준의 품질 평가 과정, 그리고 ACECQA 운영을 통해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보육 서비스 평가는 국가 수준의 질 체계인 NQF에서 제시하는 여러 질 관리 방안 중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법과 국가 수준의 질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국가 질 표준 평가는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고 부모가 이용하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ACECQA, 201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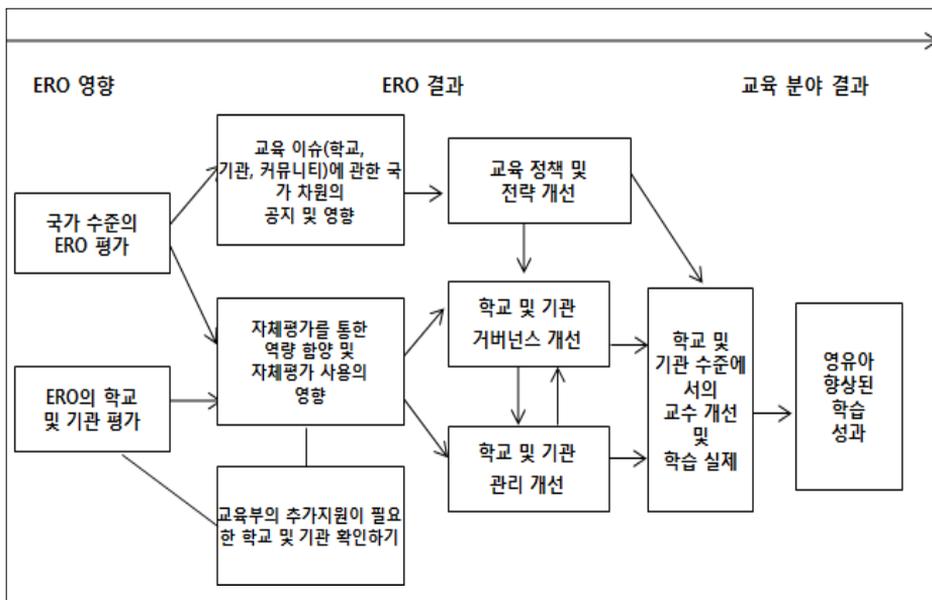
라. 뉴질랜드¹⁸⁾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기관은 모두 평가 대상이다.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18) ERO(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French, A. (2000). The heart of the matter: How the education review office evaluates per-tertiary education. ERO(2009).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ERO review.를 참고로 구성하였음.

각 기관에 맞는 리뷰방법이 고안되고 있다는 점이 특색 있다. 2012년부터 새로운 프레임 안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평가방법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가정기반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위해서는 초안이 마련이 되어 있다.

평가하는 기관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평가청에서 밝힌 평가목적은 직업교육 이전의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인, 독립적인, 높은 질의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교육평가청의 미션에서도 기관 대상 평가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평가청은 모든 뉴질랜드 영유아를 위하여 높은 질의 교육에 공헌할 수 있는 높은 질의 평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ERO, 2013). 기관 대상 평가의 목적은 양질의 교육에 기여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1>은 교육평가청의 영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목적을 절차에 따라 도식화하였다.



[그림 III-1-1] ERO의 영향 및 결과 도식화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 대상 평가 목적은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

해 기관이 지닌 다양성과 차이에 부응하는 것을 강조한다. 기관 평가가 1차적으로 기관이 법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평가의 초점은 기관이 제공하는 보육과 교육의 질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ERO, 2013).

평가 목적이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에 있는 바,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영유아 성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학습성과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의 원리, 요소, 목적은 뉴질랜드 교육과정(Te Whariki)에 수립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학습자나 의사소통자, 마음과 몸이 건강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로운 지식이나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끼는 영유아이다. 교육과정을 통한 영유아의 성과는 지식, 기술, 태도 외에도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기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ERO, 2013).

하지만 뉴질랜드 교육과정이 사회-문화적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성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각 기관에서 실행되는 교육과정은 영유아, 가족, 교사가 속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나 신념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관은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의 우선순위나 강조할 부분, 교육과정에서 가치를 두는 학습 영역을 결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학습성과로 간주될 수 있는 문화적, 교육적, 종교적 또는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ERO,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의사소통하고, 배우고, 타인과 함께 잘 지내는 안정되고 자신감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영유아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영유아가 얼마나 잘 학습하는가?'라는 것은 교육평가청 평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평가청의 방법론, 평가지표, 전문적인 실행 모습은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나 모습들을 고려한 것으로 기관 대상 평가의 목적은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ERO, 2013).

뉴질랜드 기관 대상 평가에서 흥미로운 점은 기관 대상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자체평가 능력을 강화시켜 스스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관 대상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평가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교육평가청 평가가 진행되면서 기관의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이 지속적으로 높은 질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ERO, 2013).

또한 기관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을 매년 추적하여 평가결과에서 나온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또한 평가의 부가적인 목적으로 보인다.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할 때, 정부 정책의 효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를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평가(national evaluation)를 위한 자료수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기관 대상 평가의 목적은 기관에서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대상 평가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체평가와 같은 평가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국가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 ERO(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p.10 그림을 번역함.

[그림 III-1-2] ERO의 평가와 자체평가의 방향

마. 소결

기관 대상 평가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국가에 따라 중요시하는 목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기관 대상 평가가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호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시장경제적 접근을 가지고 기관의 정보를 부모나 사회에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영유아기초단계 교육과정에 비추어 영유아 성장의 질과 표준을 평가하는 것이었으며 호주는 평가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부모가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뉴질랜드는 영유아의 학습성과를 평가목적에서 가장 중앙에 두고 강조하면서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뉴질랜드 평가의 목적에서 특색 있는 부분은 자체평가를 통해서 기관 자체 평가능력을 함양하여 스스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기관 대상 평가 목적은 유치원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다. 평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중앙 정부가 지자체와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분권화된 노르웨이만의 특징이다.

기관 대상 평가의 공식적인 목적이 달랐지만 평가를 바라보는 교사의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노르웨이는 기관의 자율성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제공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기관 대상 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뉴질랜드 교사는 평가를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여행’으로 표현하기까지 하였으며 정부가 평가를 통해 유아교육·보육기관을 개선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1-1〉 평가의 목적에 따른 국제비교

국가	평가의 목적
영국	영유아의 보육, 학습, 발달과 Early Years Foundation Stage(EYFS)의 원리와 요구조건에 맞추어 초기의 학습목적에 따른 영유아 성장의 질과 표준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함.
노르웨이	유치원의 기본적인 법 준수 여부를 강조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기관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나 평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음.
호주	평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촉진하고 부모가 이용하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
뉴질랜드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촉진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스스로 평가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관 평가 관련 법·제도 및 전달체계

국가별로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알아보고 국가마다 어떠한 전달체계 속에서 기관 대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 영국¹⁹⁾

영국 교육표준청(Ofsted)의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의 제49조, 제50조에 제시되어 있다(Ofsted, 2014c). 아동보육법 제49조는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정해진 일정 기간에 따라 장관이나 최고평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가시 해당하는 개인에게 평가를 시행함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제50조는 평가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 이후 최고평가자가 영유아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 서비스의 기준과 질적 수준, 영유아의 요구 충족 정도, 지도력 및 관리 측면의 질적 수준에 대하여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회가 요구할 시 바로 보내져야 하며 최고평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개인에게도 보내져야 하며 출판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의 제49조, 제50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I-2-1>에 제시하였다.

<표 III-2-1> 영국 기관 평가에 대한 아동보육법 조항

제49조 평가

- (1) 본 항은 이 장(chapter)에 의해 등록된 Early Years 제공자가 등록한 Early Years 기관에 적용된다.
- (2) 최고평가자는
 - (a) 본 항이 해당되는 Early Years 기관에 따라 맞는 간격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 (b) Secretary of State가 최고평가자에게 평가를 하도록 할 때 언제든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을 평가해야 한다.

19) 영국 교육표준청 홈페이지(<http://www.ofsted.gov.uk/early-years-and-childcare/information-for-registered-providers/what-happens-during-early-years-register-inspection>)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표 III-2-1 계속)

- (c)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에 한하여 최고평가자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어느 시기라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3) 법률은 하위항인 (2)(a)의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간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관을 최고평가자가 평가하도록 강제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 (4) 법률은 최고평가자 하위항인 (2)(a)에 따라 Early Years 기관이 Secretary of State에 의해 승인된 기관에 의해 정해진 상황에서 평가된다면 독립적인 학교에 있는 Early Years 기관을 평가하도록 강제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 (5) (2)(b)에 밝힌 바와 같이 Secretary of State에 의한 요구사항은 특정한 장소나 수업의 장소에 있는 Early Years 기관의 관계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 (6) 법률은 기관으로 하여금 등록된 개인이 본 항에 의거하여 Early Years 기관이 평가된다는 사실을 특정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 (7) 최고평가자가 하위항인 (b)나 (c)에 속하는 평가를 하고자 하면 그 평가는 (a)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 50조 평가 보고

- (1) 제49조 아래 평가가 시행되고 난 뒤, 최고평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술하여 보고해야 한다
- (a)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의 웰빙 측면에서의 기관의 기여
- (b) Early Years 기관의 질과 기준
- (c) Early Years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 (d) Early Years 기관과 관련하여 리더십과 관리의 질
- (2) 최고평가자는
- (a) 평가결과를 Secretary of State에 보내야 하며 Secretary of State가 결과의 복사본을 원하는 즉시 보내야 한다.
- (b) 평가결과의 복사본은 등록된 사람에게 바로 보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 (c) 최고평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의 복사본이나 부분이 미리 정해져있는 사람에게 보내져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 (d) 최고평가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내에서 평가결과(혹은 이에 대한 부분)는 발표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3) 법률은 기관에게 다음을 요구할 것이다.
- (a) 등록된 개인이 최고평가자에게 보낸 결과 복사본을 하위항 (2)(b)에 의거하여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의한 평가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b)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개인이 규정된 다른 사람에게 결과의 복사본을 제공하도록 한다.
- (c) 특정한 경우에 등록된 개인이 평가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료: 영국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의 제49조, 제50조 관련 내용을 번역하였음.

나. 노르웨이²⁰⁾

노르웨이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점검 권한과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치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 국회는 2006년 ‘유치원 교육과정과 임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여 모든 유치원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유치원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임무, 교육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유치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르웨이 유치원 교육은 보호, 놀이, 학습을 포괄하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7가지 학습 영역과 함께 사회적, 언어적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근대국가 형성 이후인 1847년 지방정부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조창현, 2001)되어 온 배경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한다. 또한 이용자의 수요와 요구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의 적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점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 명시되어 있다(PWC, 2010).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점검의 업무를 지방정부의 어느 조직에 위임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법에는 유치원 점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주지사의 역할을 각각 정하고 있다. 유치원법 제8섹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이 현행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6섹션에서 동법에 따라 유치원을 점검하고 시정,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하며, 제16a섹션에 유치원 점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제시되어 있다.

제9섹션은 주지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법 제16섹션, 지방자치단체법 제60섹션과 함께 주지사가 유치원법 제10, 11, 16, 17, 18섹션에서 제시하고 있

20) 노르웨이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 Act no. 64 of June 2005 relating to Kindergartens),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7). Tilsyn med barneher, PWC(2010). Tilsyn til besvær? Undersøkelse av kommunene som barnehagemyndighet, herunder kommunenes tilsyn med barnehagene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 운영자 및 구성원의 책임을 실행하는 데 대해 지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법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소관 유치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점검에 대한 주지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행정문서 접근 및 유치원에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표 III-2-2〉 노르웨이 유치원 점검에 관한 유치원 법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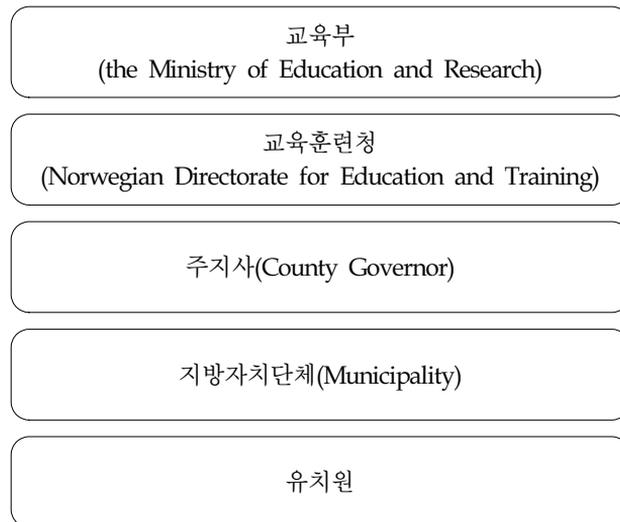
구분	법 조항
section 8.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지역 유치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지도와 함께 현 법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략)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유치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하략)
section 9. 주지사의 책임	주지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 소유주가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10조, 11조, 16조, 17조, 18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적 결정에 대한 상소기구로 기능한다. 주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점검에 대한 책임 수행 현황을 감독할 수 있다. 주지사는 주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치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section 16 점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치원의 역할을 점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부적합하거나 위법 상황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정 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폐쇄 결정은 주지사에게 보고된다. 시정 및 폐쇄에 대한 행정적 결정은 주지사에게 상고될 수 있다.

자료: 노르웨이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 Act no. 64 of June 2005 relating to Kindergartens)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립 유치원을 모두 감독함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운영자의 역할과 유치원 감독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는 관리자와 운영자 역할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독자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법에 유치원 운영자와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감독 업무를 유치원 운영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치원법 외에 ‘유치원 교육과정과 임무에 대한 기본 계획’(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에서는 유치원 서비스 질 점검과 관련한 유치원 역할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계획과 교육실행의 과정을 문서화하여 학습과 반영의 기회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유치원에서 수립한 운영계획은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점검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는데, 이를 위해 누가, 언제, 무엇을, 왜 평가하는지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유치원 자체평가는 학부모 위원회와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1).

노르웨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대상 점검에 대한 전달체계는 <그림 III-2-1>과 같다. 유치원 교육의 운영과 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교육연구부의 책임집행기관인 교육훈련청(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Utdanningsdirektoratet)이 이를 담당한다.



자료: 노르웨이 교육훈련청(n.d.). 내부자료.

[그림 III-2-1] 노르웨이 유치원 점검 전달체계

교육훈련청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국립교육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학교 및 기관을 이용하

는 학생 및 이용자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지사는 교육연구부와 유치원 부문의 연결고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호주²¹⁾

호주의 유아 대상 교육·보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에 관련된 국가 수준의 법적 체계로는 교육·보육 서비스 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과 교육·보육 서비스 규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이 있다. 교육·보육 서비스 법은 종전에 분리되어 있던 인가와 질 관리 과정을 대체하며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규정과 질 관리를 위해 통합된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주와 지역별로 법 조항에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보육 서비스 규정은 기관 평가와 평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평가 준비 및 사후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ACECQA, 2014). 구체적으로 규정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전반적 운영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와 관련하여 규제 기관이 기관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 공급자 인가, 서비스 인가, 시설장 자격증 신청과정
- 평정척도 준비
- 국가 질적기준(NQS)에 근거한 기관 평가와 등급부여 과정
- 7개 평가영역별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 운영의 최소 요건
- 현재의 기관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방법

호주에서는 국가수준의 질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각 기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ACECQA, 2013). 호주의 유

21)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홈페이지(<http://www.acecqa.gov.au>), ACECQA(2014) Guide to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nd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ACECQA(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관리는 ‘국가수준 질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 이하 NQF)’를 따른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이 지침은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이하 ACECQA)’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적인 국가 기구로 3년을 임기로 하는 각 주 및 준주별, 영연방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ACECQA가 관리하는 서비스 기관 범위는 영아시설, 유치원, 보육기관, 방과 후 기관 등 13세 이하의 유아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기관을 포함한다(ACECQA, 2014).

각 기관에 대한 평가는 각 주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표 IV-1-1 참조). 각 주에서는 별도의 규제기관(Regulatory Authority)을 두고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련된 정보 제공, 기관 인허가 관련, 평가, 감사, 민원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각 규제기관 직원의 교육 및 역할에 대한 지침은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 및 교육훈련, 운영 매뉴얼 등을 제시하여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표 III-2-3〉 호주 각 주별 평가 담당 부서

주	관련 부서	홈페이지
ACT	Children’s Policy and Regulation Unit Education and Training Directorate	www.det.act.gov.au
NSW	NSW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Directorat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www.dec.nsw.gov.au/eccec
NT	Quality Education and Care NT, Department of Education	www.det.nt.gov.au
QLD	Offic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www.dete.qld.gov.au/earlychildhood
SA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Services Registration and Standards Board of South Australia	www.eecrsb.sa.gov.au
TAS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 and Care Unit	www.education.tas.gov.au
VIC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ww.education.vic.gov.au/childhood/providers/regulation
WA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Education and Care Regulatory Unit	www.dlgc.wa.gov.au

자료: ACECQA(n.d.) Contact your regulatory authority (<http://www.acecqa.gov.au/regulatory-authorities1/contact-your-regulatory-authority>)의 내용을 정리함.

라. 뉴질랜드²²⁾

뉴질랜드에서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부처와 독립적인 기관인 교육평가청(Educational Review Office)이 맡고 있다. 교육평가청은 State Sector Act 1988에 의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다. 교육평가청은 교육부 산하가 아닌 공공 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에 속해 있으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교육부가 아닌 독립적인 타 부서의 관할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교육평가청이 평가하는 교육기관은 영유아 기관 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교육평가청은 각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적 영역을 중요시 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가지표 개발 역시 교육평가청이 주관하여 개발하였으며 뉴질랜드와 각국의 연구 결과와 자체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개발하였다.

ERO의 평가는 Education Act 1989의 28조(Review of Educational Services)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28조 323항은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이며 324항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325항은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장의 역할, 326항은 평가자, 327항은 평가자의 진입과 평가에 대한 권한을 다루고 있으며, 328항은 평가자의 신분을 언제라도 제시해야 함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항별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III-2-4>에 제시하였다.

<표 III-2-4> 뉴질랜드 평가에 대한 법 조항

28조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Review of educational services)

324항 적용되는 교육기관 (Educational services to which this Part applies)

이 법은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공립 기관이 속하지 않은 16세 이상의 개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외함)

325항 장의 역할 (Chief Review Officer to perform certain functions)

장은 장관이 요구하거나 기관장이 직접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관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일반적인 혹은 특수한 문제에 대해 리뷰한다.

리뷰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할 준비를 한다.

장관에게 관련 기관의 수행에 대한 지원이나 조언을 때때로 제공한다.

22) ERO(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French, A.(2000). The heart of the matter: How the Education Review Office evaluates per-tertiary education. ERO(2009).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ERO review.를 참고로 구성하였음.

(표 III-2-4 계속)

<p>326항 평가자 (Review officers) 장은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리뷰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기관장의 직원 여부는 상관없음) 임명된 기간 동안 기관장에 의해 승인된 형태 속에서 자격을 보장한다.</p> <p>327항 진입과 점검에 대한 권한 (Powers of entry and inspection) 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도록 평가자는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려주고 난 뒤, 적절한 시간대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a) 점검을 실시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b) 관련 문서나 정보를 만들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c) 기관의 관련자(기관에 고용된 자나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자)에게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라도 형식이나 방법에 상관없이 서류를 만들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d)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 개인의 결과물을 점검할 수 있으며 (e)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p> <p>328항 평가자의 신원증명 (Review officers to prove identity) 327항에 의해 어떤 기관에 진입하는 모든 평가자는 처음 기관 방문시 혹은 요구를 받을 때,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리뷰자로서의 자격을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p>

자료: New Zealand(2014). Education Act 1989에서 관련 조항을 번역함.

교육평가청은 학교나 서비스의 교육·보육 질이나 이 분야에서 정부가 교육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하는 모습을 평가한다. 교육평가청은 학교나 기관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기준을 정하는 여러 기관과도 독립적이며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위치는 책무성을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 기관, 교육부가 수행하는 여러 행위들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관대상 평가 자체는 Education Act 1989의 28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만 평가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보육기관 등록을 위한 범주 2008(Licensing Criteria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res 2008)’와 ‘유아교육교육과정 기틀(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이다. 유아교육기관은 등록을 위한 범주를 만족해야 할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을 위한 등록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요구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에 대한 법적 체계는 교육법(the Education Act)을 따르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법은 2008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8년 구법에 의해 2008년 이전에 인가된 시설과 2008년 신규 법에 의해 인가 받은 시설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법을 적용받는 시설에 대한 유예 기간은 2014년 11월까지로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시설은 신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소결

기관 대상 평가의 법적근거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속해있는 부처 관련 법을 따르고 있다. 영국은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주로 아동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초등예비학급의 경우 학교법을 따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두 종류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호주는 교육·보육서비스 법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교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표 III-2-5〉 평가 관련 법·제도 및 운영체계 국제비교

국가	평가 관련 법·제도	평가담당 기관 및 운영체계
영국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의 제49조(평가), 제50조(평가보고) 학교교육법 제5조임.	독립된 평가 기구, Ofsted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며 공개함.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함.	유치원 교육의 운영과 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교육연구부→교육훈련청→주지사→지방자치단체→유치원으로 운영되거나 각 단계별 자율성이 존중됨.
호주	교육·보육 서비스 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ct 2010)과 교육·보육 서비스 규정(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이라는 법적기반을 두고 있음.	독립된 평가 기구 ACECQA를 통해 평가하고 각 주(state)별로 교육부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국가기관과 지역 규제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짐.
뉴질랜드	Education Act 1989의 28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만 평가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Licensing Criteria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entres 2008'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Curriculum Framework'임.	부처와 독립적인 기관인 ERO에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지자체, 부모에게 공개함.

노르웨이는 평가 관련 법적 근거의 성격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유치원은 교육부에 속해있지만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

육이나 보육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법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제인 노르웨이의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이해되어야 한다.

평가 운영체제를 보면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부처와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뉴질랜드가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독립된 평가기구가 있어 평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주별로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어 영국, 뉴질랜드와 차이가 있다.

노르웨이는 교육연구부에 속한 교육훈련청, 주지사,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져 유치원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평가를 장려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가의 투명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 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

기관 대상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면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 하지만 같은 방법인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그 방법의 목적이나 활용방법이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기관의 자체평가라 할지라도 국가마다 자체평가의 목적이나 활용 방법이 달랐다.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평가 이전부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나 결과 공개에 이르는 절차를 국제비교 하였다.

가. 영국²³⁾

영국에서는 평가를 위한 기간 내 최소한 1번은 기관을 평가한다. 다음 평가 기간은 2016년 7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이 기간 안에 최소한 1번 평가를 받게 된다. 새로 등록한 기관은 대개 등록한지 6-7개월 안에 평가를 받는다.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고지된 적이 있거나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서 평가를 먼저 해야겠다고 판단된 기관이나 지난 평가에서 부적절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23) Ofsted(2014a). Are you ready for your inspection?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음.

평가한다(Ofsted, 2014a).

1) 평가 공지

영국에서는 평가 전에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평상시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보육도우미나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평가하기 며칠 전에 알려주거나 평가를 하려고 하는 날에 영유아의 기관 등원 여부나 기관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다. 평가자는 보통 평가를 하는 특정한 날짜를 알려주지만 기관에 고지를 할 의무는 없다(Ofsted, 2014a).

2) 자체평가

평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없다. 다만 평가에서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평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평가는 영유아의 보육, 학습, 성장을 위한 기관의 운영 효과를 얼마나 잘 평가하고 있는지와 기관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기관에서는 평가표준청에서 개발한 자체평가지나 지자체가 배부한 양식이나 도구, 소속 기관의 질 보장 양식(scheme)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기관이 여러 개의 자체평가지를 작성해야 될 필요는 없으나 평가자는 어떤 평가를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항상 확인한다(Ofsted, 2014a).

자체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평가 기간 내에 적절한 시간대나 기관에서 평소에 하는 것과 같이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이전에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에 달라지거나 개선되었던 점이 무엇인지, 이전 평가결과가 어떻게 영유아의 보육, 학습,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Ofsted, 2014a).

현장방문 전에 기관에서는 영유아기초단계 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을 이해하고 있거나 교육과정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관은 영유아가 학습목적에 따라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기관에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평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요구할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요구하는 정책, 절차, 결과를 평가자에게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유아기(Early Years) 기관, 부모, 지역사회 건강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전문

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영유아의 학습적 요구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는 측면에서 이들과의 관계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 영유아가 두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제공받고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의 활동을 알아보고 그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거나 부모가 가정에서 영유아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자에게 보여줄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시스템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교사나 영유아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관리 차원도 중요한 부분이다(Ofsted, 2014a).

3) 현장평가

평가자가 기관에 도착하면 자신을 소개하고 난 뒤,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 인터뷰를 할 사람이나 편안한 시간대, 평가가 완료되는 피드백 회의 시간을 정한다. 기관에서 그 날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교사가 자리에 없는 경우 이를 평가자에게 알릴 수 있다(Ofsted, 2014a).

평가자는 기관을 통해 영유아의 부모와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영유아를 기관에 데려다주는 경우 부모와 평가자가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관은 부모로 하여금 현재 평가자가 기관에 있어 부모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부모에게 공지해야 한다. 자체평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평가가 시작될 때 자체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Ofsted, 2014a).

평가자는 교직원과 인터뷰를 실시하게 되는데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인터뷰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편안한 시간을 정하여 평가자와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의 목적은 첫째, 영유아기초단계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둘째, 교육적 프로그램, 계획, 평가가 진행되는 모습이나 영유아의 요구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개입하여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셋째, 전반적인 관리, 연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넷째, 개선을 위해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개선이 필요한 목표를 대상으로 노력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다섯째, 특히 영유아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 부모나 다른 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섯째, 영유아 보호 절차를 포함한 영유아의 안전, 실내외의 위험 평가, 교직원 채용 과정, 교직원 장학에 관한 관리가 효과적인지를 알아본다(Ofsted, 2014a).

평가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인이 영유아와 지내는 모습을 관찰하는 데 사용

한다. 이 때 평가자는 영유아가 얼마나 잘 학습하는지, 영유아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성인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평가한다. 교실에 2명 이상의 교사가 있는 경우, 합동관찰(joint observation)을 할 수도 있다. 한 명의 교사가 평가자와 함께 교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것이다. 합동관찰의 장점은 평가자의 평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에 대해서 교사의 시각을 알려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장관찰이 끝나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듣게 되므로 피드백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자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모든 준비한 서류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Ofsted, 2014a).

4) 피드백 회의

현장관찰이 종료될 때 평가자는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피드백회의를 가진다. 이 때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이유와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준다. 평가자는 기관에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주로 고려하는 3가지는 다양한 영유아의 요구 충족, 기관의 영유아 웰빙을 위한 지원, 기관의 리더십과 관리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척도, 매우 뛰어난(outstanding), 좋음(good), 개선을 요구함(requires improvement), 부적합함(inadequate)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평가자는 평가자의 지침서에 정해져 있는 등급별 요건을 보고 등급을 결정한다(Ofsted, 2014a).

5)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공지

기관 현장평가가 종료되고 난 후 평가자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피드백 회의 때 알려준 기관의 등급, 기관의 전반적인 수준과 기준에 대한 평가를 요약한 내용, 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 기관이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 정도에 대한 내용, 기관이 영유아의 웰빙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내용, 기관의 리더십과 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기관으로 보내져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면 교육표준청 사이트에 공지되기 전에 수정하게 되며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단계인 '부적합함'이 아니라면 10일 내 교육표준청 사이트에 공지한다(Ofsted, 2014a).

만약 평가결과가 '부적합함'인 경우에는 평가보고서가 25일 이내 공지되며 강제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

관이 속한 지방자치체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기관이 있음을 알린다. 이러한 결과는 만 2, 3, 4세 영유아를 위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Ofsted, 2014a).

나. 노르웨이²⁴⁾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유치원 점검은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식을 428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에는 428개의 점검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경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점검 소홀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점검 범위가 달라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PWC, 2010). 이에 노르웨이 중앙정부에서는 교육훈련청을 통해 유치원 점검 방법에 대한 핸드북(Inspection methodology-a handbook of inspection methods pursuant to the Kindergarten Act and the Education Act)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의 용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하라고 정하기 보다는 유치원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점검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유치원 점검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핸드북에 제시된 점검방법이나 절차가 의무는 아니다.

핸드북(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2014 in press)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노르웨이 유치원 점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단계로 점검 주제와 대상 지자체나 유치원, 점검 날짜, 법적 조건을 정하고 평가양식과 자체 점검 양식을 제작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점검 단계로 점검 시작을 알리는 공문과 함께 시작되며, 사전 회의와 방문 준비과정을 거쳐 현장 점검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작성한다. 마지막 단계는 대화 및 완료 단계로 점검 결과 예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에 보낸 후 1차 소명 및 개정의 기회를 준 후 그 결과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수정하고 시정 시한을 설정하게 된다.

24)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7). Tilsyn med barneher, PWC(2010). Tilsyn til besvær? Undersøkelse av kommunene som barnehagemyndighet, herunder kommunenes tilsyn med barnehagene.과 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2014, in press)의 Inspection Methodology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시정 조치가 내려진 사항이 모두 반영되고 이에 대한 확인이 끝난 후에 점검은 마무리된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구체적인 점검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정부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여 무엇을 점검받을지 사전에 고지한 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이 계획에는 예비단계, 배정, 계획 및 우선순위, 점검 시행, 보고, 사후 관리 등 점검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예비단계에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 점검 내용, 절차, 방법, 점검 기관, 결과 보고 및 시정 명령, 사후 단계 등 점검에 대한 정보가 안내된다. 정보 안내는 점검기관과 피점검기관 간 사전 회의를 통해 구두로 전달되기도 하며, 브로슈어를 통해 제공되기도 한다.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식을 정해서 진행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점검 방식은 누가 점검을 하는지, 언제, 무엇을 점검하는지, 어떻게 점검하는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누가 점검을 하는지 주체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나 교육훈련청과 같은 상위 기관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대상과 방식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주지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주체로 점검을 진행할지 정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점검 시기와 목적에 따른 기준으로 이는 사전에 계획된 점검(planned inspection)과 사건에 기반한 점검(incident-based inspection), 사후 점검(follow-up inspection)의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우선 사전 계획된 점검은 각 점검 주체 기관별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일정 주기에 따라 시행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사건 기반 점검은 사고나 사건 발생 후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점검을 뜻한다. 점검 내용은 사건 내용과 관련된 것이며, 계획된 점검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사후 점검은 점검이 이루어진 후에 점검 결과가 반영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앞서 이루어졌던 점검과 동일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을 통해 점검을 하는지 점검 수단에 따른 분류이다. 문서 기반 점검과 현장 점검으로 나뉘며, 문서 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현장점검은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단독으로 시행될 수도 있으며, 문서점검 후 이에 대한 보완으로 관계자 인터뷰, 시설 점검 등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문서점검과 현장점검 중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점검 초기 계획 단계에서 결정되나 점검 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유치원을 매년 혹은 특정 주기별로 조사하고 일부 지자체는 어느 유치원을 먼저, 또 자주 조사할지에 대해서 위험 평가 결과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아동 수, 시설 규모, 위생 관련 사항, 학대 신고, 실내외 공간 관련 위반 등에 대한 신고에 기반하여 점검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신고 사항을 근거로 점검이 시작되며, 경우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도 가능하다.

점검은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시설로부터 정보를 받는데 현재 재원 중인 영유아 연령과 수, 교직원 현황, 자체 질 관리 체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참고로 한다.

다음은 계획 및 우선순위 단계로 각 시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합하고 체계화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점검에 대한 전체 계획과 점검 간의 관계를 조율하여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정하게 된다. 점검 계획 수립 후에는 계획에 따라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점검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자 및 시설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등과 해당 시설이 법이나 기본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노르웨이 정부와 교육훈련청이 점검에 대한 여러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점검에서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갖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표 III-3-1>는 각 지자체별 유치원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²⁵⁾ 결과로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점검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43%에 불과하고 12%는 지침은 있으나 전체에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가 35%나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대체로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PWC, 2010).

25) 이 조사는 교육부 주최 조사 결과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93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답하였음.

〈표 III-3-1〉 유치원 점검 기준 구비 및 적용 여부

단위: %(개)

구분	인구 5천미만	인구 5천~2만	인구 2만~5만	인구 5만이상	전체
구체적 기준 없음	37	34	42	20	35
구체적 기준에 따라 시행 중임.	40	44	46	60	43
구체적 기준 있으나, 일부에만 적용	10	15	12	20	12
모름/해당 없음	20	5	0	0	6
무응답	3	6	0	0	3
계	100	100	100	100	100
사례수	(126)	(131)	(26)	(10)	(293)

자료: PWC(2010). Tilsyn til besvær? p.26.

〈표 III-3-2〉는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에서 각각의 점검 방법을 얼마나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로 지자체 점검방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책임자와의 인터뷰이고, 문서 점검, 시설 내부·외부 환경 점검, 교사와의 인터뷰도 많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점검 시 2~3가지 또는 4~5가지 점검 방법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약 30%, 15%는 6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약 10% 정도의 지자체만이 1가지 방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3-2〉 현장점검 시 점검 방법

단위: %

방법	항상	대개
원장 및 책임자 인터뷰	86	5
계획안, 보고 자료, 수행 자료 검토	57	28
시설 내부환경 점검	52	28
교사 인터뷰	42	32
시설 외부환경 점검	42	33
교사 외 교직원 인터뷰	28	22
학부모 인터뷰	20	27
유아 인터뷰	1	2

주: 원 질문 내 보기는 5개로 항상, 대개, 거의 하지 않음, 한 번도 한적 없음, 모름임. 2010 PWC barnehagetilsynssurvey 2010 조사 결과로 총 응답수는 293개 지방자치단체임.
자료: PWC(2010). Tilsyn til besvær? p.25.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원 질 관리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 예로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 시는 적응(입학 및 초등학교와의 전이), 신뢰성, 가정과의 연계(협력 및 정

보 전달), 발달과 학습, 교직원, 실내외 환경,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30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²⁶⁾. 이 조사결과는 유치원 연간계획 수립에 반영되고, 시 전체의 계획 수립에도 활용된다.

현장 또는 문서 점검이 끝난 후에는 ‘대화 및 완료 단계(the communication and completion phase)’를 별도로 두어 점검 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사전 조율하는 단계를 갖는다. 이 단계에서 점검 주체인 주 정부는 점검 결과 예비보고서, 최종 점검결과 보고서, 시정 결정서의 세 가지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공한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법’과 ‘지방정부법’에 제시된 사항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확인하고 잘못된 점검 결과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시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press). 특히 예비보고서를 제공한 후 관계자간 회의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자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지정된 형식의 문서를 통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해 소명과 시정을 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자 간 회의 및 위법 사항에 따라 시정 시한이 정해지는데 대체로 3주에서 3개월 이내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진 후 고쳐지지 않으면 점검은 종료되지 않으며, 시정 명령서가 내려진다. 이 경우 시정 시한은 2개월을 넘지 않는다.

다. 호주²⁷⁾

인가된 기관들은 국가 질적기준(NQS)과 규정의 7개 영역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국가 질적기준은 다양한 기관 유형에 걸쳐 기관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질 평가와 등급체계를 포함하고 있다(ACECQA, 2014).

26) <http://www.barnehaer.oslo.kommune.no/oslobarnehaer/article264840-50546.html>(2014. 8. 21. 인출)

27)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홈페이지(<http://www.acecqa.gov.au>), ACECQA(2014) Guide to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nd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ACECQA(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1) 평가 공지

기관 평가는 평가를 알리는 공문발송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가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4주 후, 4주간의 기간 동안 평가를 위한 현장 방문이 있다는 공지를 받는다. 규제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3주 이내에 질 개선 계획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규제 기관은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질 개선 계획 제출

평가 4주 전 공문이 발송되면, 기관장은 질 개선 계획(the Quality Improvement Plan)을 제출해야 한다.

3) 현장 방문

최소 방문 5일 전 언제 방문할 것인지 안내가 된다. 평가자는 평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말할 수는 있으나, 평가 점수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일부 특정 영역에서의 사소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의 기회를 줄 수 있다.

4) 보고서 초안 작성

평가 후에는 3-5주 이내 평가 초본을 기관장에게 제공한다.

5) 이의 제기 및 소명

보고서 초안에 대해 평가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10일 영업일 이내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규제 기관이 이의 제기가 전달이 되며 이때에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평가 결과는 최종 확정되고 최종 평가결과서가 최종 등급과 함께 기관장에게 발송된다.

6) 최종보고

앞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며 초안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며 보고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규제 기관은 이를 검토한 후 보고서를 확정하고 등급을 전달한다.

다음 표는 평가 및 등급 부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기관이 어떻게 국가 질적기준을 충족시키고 유아들의 성취를 강화시킬지에 대해 논의하는 협력적 과정으로 계획되었다. 시간은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대략적 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표 III-3-3〉 평가 및 등급부여 절차 (기관)

시간	단계	절차
1주	현장방문 전	방문 공지
3주		질 개선 계획 제출
5-8주	현장방문	현장 평가
현장방문 후 3-5주	현장방문 후	보고서 초안 작성
현장방문 후 5-7주		이의 제기, 소명
현장방문 후 8주		최종보고(결과 전달)

자료: ACECQA(2014). Guide to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nd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p.47-48의 내용 정리

평가를 통해 각 기관별 종합평가 등급이 부여된다. 등급은 5개 수준으로 규정 57조에 제시되어 있다.

- 1) 최우수 등급 - 이 등급에 대한 기준은 ACECQA가 결정한다. (국가법 153조 <NQS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 중 최우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이 신청 가능하다.
- 2) NQS 이상 (규정 62)
- 3) NQS 충족 (규정 61)
- 4) NQS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규정 60)
- 5) 상당한 향상이 요구됨 (규정 59)

질 개선 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각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물과 질적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각 기관은 국가 질적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강점과 개선점을 파악한다. 규정에서는 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질 개선 계획을 준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NQS와 규정에 근거해 자체평가 한 기관의 질
-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분야
- 기관의 철학

인증을 받은 기관은 국가 질적기준에 비추어 질 개선 계획을 재검토하고 개
정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이상이어야 하며 규제 기관에서 요청
할 경우 최신의 질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규정 56). 새로운 기관의 경우
기관이 인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질 개선 계획을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한
다(규정 55). 질 개선 계획은 기관에 비치되어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나 앞
으로 보내고자 하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규제 기관에서 점검을 원할 때 제공되
어야 하는 것이 인가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규정 31).

기관이 국가 질적기준의 7개 영역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중
요하지만 18개 기준과 58개의 요소 모두가 질 개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기관은 국가 질적기준의 7개 영역 및 그와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ACECQA, 2014).

라. 뉴질랜드²⁸⁾

1) 평가공지 및 정보교환

뉴질랜드 평가는 교육평가청이 해당 영유아기관에 절차를 진행하겠으니 평가
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면서 시작된다. 통보 메일과 함께 기관대상
평가관련 책자(He pou Tātaki), 가이드라인, 보증진술서(Assurance Statement),
셀프 리뷰 체크리스트, 자체평가 형식 및 관련 서류를 볼 수 있는 링크를 함께
보내어 어떻게 준비해야할지를 알려준다. 교육평가청은 교사, 부모 및 관련 가
족에게 본 점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ERO, 2013).

ERO 점검을 앞둔 영유아기관은 각 지역의 교육평가청에서 주최하는 단체 설
명회(group briefing meeting)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다. 단체 리뷰(cluster review)
범위에 해당되는 개인 센터는 소속 연합이나 상부 단체(umbrella organisation)
에서 시행하는 브리핑미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회의는 교육평가청의 점검

28) ERO(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를 참고로 구성하
였음.

절차와 일반적 정보를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review) 코디네이터는 기관에 브리프미팅이나 전화상으로 세부적인 점검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기관에서 본 평가에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탐색한다. 평가 코디네이터는 영유아기관에 자체평가, 보증성명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에 대한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교육평가청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ERO, 2013).

2) 자체평가

교육평가청 점검에서 자체평가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많은 나라에서 자체평가를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자체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나 중요도가 차별적이다. 자체평가는 교육평가청에서 평가하기 전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자체평가에서 고려하는 문제는 법이나 요구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가 아니라 기관이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또한 자체평가 자체를 통해서도 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교육평가청 평가는 해당 기관의 어느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 향상이 필요한지에 관해 기록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실시된다. 이에 교육평가청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할 수 있다. 자체평가를 작성하면서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촉진시키는 것에 대한 실행을 반영해보는 기회를 가진다(ERO, 2013). 이러한 접근방식은 뉴질랜드 기관 평가가 다른 나라와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자체평가는 체크리스트 형식이 아니라 문장에 서술식으로 답하게 되어 있다. 각 주제별(Pou) 질문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질문은 기관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지원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주로 묻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의 조직이나 교육과정, 가정과의 연계 등을 확인하는 1차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체평가 자체가 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며 마오리족이나 태평양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I-3-4〉 뉴질랜드의 기관 대상 자체평가 질문 목록

구분	자체평가 질문
기관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과 기관의 배경에 대해 ERO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기관의 철학이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접근을 간략하게 서술하십시오. - 기관에서의 교직원 자격조건이나 조직에 대해 ERO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관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ERO 평가 이래로 기관의 발전이나 성장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 현재 자체평가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 기관에서 자체평가가 아동의 성장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 의도하고 있는 아동의 성과는 무엇인가? -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이 아동에게 의도하고 있는 성과를 장려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아동에게 도전을 제공하고 있는가? - 어떻게 부모나 가족의 열망과 기여를 추구하고 있는가? -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평가, 계획, 평가과정이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십시오. -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관에서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수-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특히 기관이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아동의 학습과 웰빙을 지원하는데 있어 기관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 소속 기관에서의 효과적인 교수실제 측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2세 이하의 아동이 기관에 오고 있다면, 이들의 보육, 학습,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접근을 설명하십시오. - 학교로나 기관 내에서의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 교수학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관에서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오리족 아동을 위한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오리족 아동의 열망과 기대에 대하여 마오리족 가족과 어떻게 논의하는가? -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 마오리족 유아가 마오리족으로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을 설명하십시오. - 기관은 이러한 전략과 계획의 효과성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마오리족 아동이 성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표 III-3-4 계속)

구분	자체평가 질문
태평양 아동을 위한 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아동이 성공하도록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나 계획을 설명하세요. - 기관은 이러한 전략과 계획의 효과성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태평양 아동이 성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성에 부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 - 아동 그룹이나 개인이 학습에 대한 잠재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단계에 대해 설명하세요. - 기관은 이러한 전략의 효과성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 다양한 요구를 가진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의 리더십 구조는 어떠한가? - 리더는 아동의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 전문가의 학습과 발전(PLD)을 위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모든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장려하는 역할에 최근의 PLD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운영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의 운영 및 관리의 구조는 어떠한가? - 기관의 장기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 기관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어떻게 자체평가가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기관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 운영 및 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관이 계획하고 있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자료: ERO(2014). Self report for early childhood services의 문항을 표로 재구성하였음.

자체평가 과정을 통해 기관은 얼마나 잘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촉진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자체평가로부터 얻은 결과로 기관은 아동의 웰빙과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여요소와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자체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부의 지침에서 이것을 계획되거나 자발적인 리뷰로 지칭하고 있다. 전략적 자체평가는 기관이 얼마나 잘 기관의 비전, 목적, 철학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전략적 자체평가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며 기관의 비전, 목적, 혹은 철학에 관련된 주된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계획된) 자체평가는 '평상시와 같은 업무'로 범위가 더 넓지 않으며 전략적 자체평가에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현적(자발적인) 자체평가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이나 이슈에 반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평가의 형태가 약간 다르더라도

기관의 방향이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평가에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평가의 수준을 다양화하여 단순히 규제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매우 효과적이고 잘 발전된 자체평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평가청 평가지표는 기관이 자체평가를 하는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체평가의 질문 목록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의 자체평가는 기관이 스스로 평가하여 질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높이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관이 평가의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3) 평가 설계

평가를 설계하는 것은 점검 기간 동안 평가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평가청에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기관과 함께 상의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뉴질랜드의 기관 대상 리뷰가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관의 배경이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 리뷰가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평가설계를 할지는 이전에 이루어진 자체평가의 내용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평가청에서 시행하는 점검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배경, 즉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여기서 맥락은 기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와 여러 종류의 자료에서 반영된 (교육)철학, 지역사회, 역량을 의미한다. 교육평가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보증성명서, 자체평가에 기술된 내용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또한, 해당 기관에 관련된 지난 교육평가청 보고서와 내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점검 시 어느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ERO, 2013).

ERO는 기관 평가 틀(Ngā Pou Here)을 기본으로 하여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조사에 필요한 질문을 준비한다. 이 때 각 축(Pou)과 평가 중점, 이 둘의 상호연관성을 심사숙고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점검 팀은 점검에 활용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절차를 구성하며, 완성된 점검 설계는 기관과 공유한다(ERO, 2013). 축과 평가 중점 간의 균형은 완성된 자기 보고서와 보증진술서의 정보에 따라 결정된다. 각 축과 진행한 절차, 기록 사항을 포함한 자료 수집에 할당된

시간은 각 평가에 따라 다르다. 교육평가청은 모든 절차의 개별화 접근(one-size-fits-one)을 통해 최대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맥락에 맞출 수 있는 점검을 시행한다. 평가의 세부적인 모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ERO, 2013).

기관 평가들(Ngā Pou Here)은 각 축과 영유아를 위한 성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교육평가청과 기관이 규명한 강점, 평가나 개발이 필요한 영역과 서비스는 영유아의 학습 성과가 향상되도록 이끌어야(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가수준 평가주제(The National Evaluation Topics, NETs)는 교육평가청이 정부의 교육 중점과 관련하여 영유아기관의 핵심 분야 수행 정도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각 주제는 점검 틀(Ngā Pou Here)을 통해 분석되며 평가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이루어진다(ERO, 2013).

일부 기관에서는 점검 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아동들의 안전과 웰빙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보증 서명서에서 기관에 대한 증거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적 규정에 대한 적절한 내부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적용된다(ERO, 2013).

4) 현장점검 및 종합

현장 방문 시 점검팀은 자료 수집과 증빙을 위해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를 활용하고, 평가적, 측정적 질문을 사용한다. 기관의 문서자료를 읽고, 매니저와 그 외 다른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활동 중인 프로그램을 관찰한다. 점검 후에는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다(ERO, 2013).

기관은 점검과 협의를 위한 적절한 직원을 선정하여 점검 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 특히 기관 직원과 점검 팀의 진행 중인 상호작용은 절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점검 기간 동안 교육평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누구와 더 논의할 수 있는지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능한 참여자는 교사, 기관장, 서비스제공자, 경영진, 상부단체의 직원, 영유아, 부모, 마오리 지역사회, 태평양 지역사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ERO, 2013).

교육평가청은 기관의 자체평가에 나온 정보를 통해 영유아기관이 특정부문에서 이미 잘 수행되고 있는지 혹은 향상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영유아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자기보고의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점검 혹은 발달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평가청의 절차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향상된 수준으로 실천하여 기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5)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교육평가청은 영유아기관이 경험한 자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특히 '기관이 부모 및 가족과 어떻게 협력하는가?'와 '교사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발달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보여주는 자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ERO, 2013).

기관 방문이 끝나면 점검 팀은 기관에서 선정된 직원과 함께 점검 결과를 논의한다. 이 논의는 잘 수행되고 있는 분야, 점검과 향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상당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평가청은 추후 단기간 내 재평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결과에 관한 토론은 외부 점검의 결과에 책임이 있는 운영진, 교직원 그리고 관계자(부모 포함)들을 포함한다. 평가의 마지막 단계로서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현장평가시 공유할 수도 있다(ERO, 2013).

6) 결과보고

교육평가청 보고서의 독자는 영유아교육·보육분야 종사자들을 비롯해 정부와 일반인이 모두 해당된다. 영유아기관 보고서는 전반적인 평가부터 시작한다. 보고서에는 대단히 포괄적인 평가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장점검 이후 20일 이내에 해당 영유아기관에 비공식 형태로 발송된다. '부적합함(Not well placed)' 결과를 받은 영유아기관은 현장점검 10일 이내로 비공식 형태의 보고서를 받게 된다(ERO, 2013).

영유아기관의 운영진은 교육평가청으로부터 점검결과 보고서를 받은 15일 내로 보고서의 질문에 증거를 제공하면서 답을 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함' 결과를 받은 기관은 10일 안으로 답변하여 발송해야 한다. 교육평가청이 답변을 받고 난 후, 기관에서의 어떠한 답변이나 수정 내용이라도 모두 고려해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평가청이 보고서를 승인하면 기관장에게 한 부가 발송된다. 승인된 보고서는 기관장이 보고서를 받은 지 2주가 되는 시점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교육평가청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ERO, 2013).

마. 소결

기관 대상 평가 절차나 방법은 먼저 평가를 공지받고 나면 자체평가나 질 개선 계획을 제출한다. 평가담당자는 이를 검토한 뒤, 현장점검으로 나오게 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이전에 제출한 자체평가나 질 개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평가보고서나 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단계가 있다.

영국의 평가절차에서 특징적인 것은 현장평가 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평가자는 기관의 일상적인 모습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 부모가 아이를 등원시킬 때 만나거나 현장평가시에 평가자가 기관에 머무르고 있음을 부모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관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같은 연령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평가를 받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의 평가절차 및 방법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어 공통된 절차나 방법이 없지만 주로 자체평가 양식이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매우 달라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관할 유치원이 1-2개인 경우도 있어 공식적인 평가보다는 비공식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질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의 과정이 유아교육·보육기관과의 협력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기관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사소한 수준에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본래 목적이 기관에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기관의 다양성과 맥락을 고려한 평가방법이다. 전반적인 평가절차나 방법을 보면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기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마오리족이나 태평양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이라면 이 기관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하며 심지어 이를 위해 다른 도시에서 평가자가 오기도 한다. 기관이 따라야 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지만 기관의 배경, 철학, 신념이 무시되지 않고 평가절차 안에서도 실제로 고려된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평가절차 및 방법을 국제비교 한 결과, 자체평가가 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기

관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기관이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평가자와 기관과의 소통이나 협력관계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교육·보육과정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기관의 상황이나 특징, 유아의 맥락까지 고려한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큰 시사점이라 하겠다.

〈표 III-3-5〉 평가절차 및 방법 국제비교

국가	평가 절차 및 방법	특징
영국	평가공지→자체평가→현장평가→피드백 회의→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평가 날짜를 공지하지 않아도 되나 사전에 공지함. - 부모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됨. - joint observation(합동관찰)이 가능함.
노르웨이	준비단계(점검 주체와 대상 지자체, 점검 날짜, 법적 조건을 정하고 평가양식과 자체점검 양식을 제작하는 단계)→점검 단계(점검 시작을 알리는 공문 발송, 사전 회의와 방문 준비과정을 거쳐 현장 점검 및 인터뷰를 실시, 점검 결과를 작성)→점검결과에 관한 대화 및 완료 단계(점검 리포트를 작성하고, 점검 결과 예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에 전송, 1차 소명 및 개정의 기회를 준 후 그 결과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수정하고 시정 시한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절차 및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모두 상이함. - 예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에 보낸 후 1차 소명 및 개정의 기회를 줌.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하는 것까지 평가과정에 포함됨. -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기관평가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봄.
호주	방문공지→질 개선 계획→현장방문→보고서 초안→이의 제기 및 설명→최종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개선 계획은 평가 과정에서 핵심적임. - 평가자는 현장 방문시에 등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일부 특정 영역에서의 사소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의 기회를 줌.
뉴질랜드	평가공지 및 정보교환→자체평가→평가설계→현장점검 및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논의→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자체를 통해서도 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관 자체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 각 기관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함. -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기관 및 교사, 부모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음.

4. 기관 평가 영역 및 내용

가. 영국²⁹⁾

「아동보육법 2006」에 의한 기관 점검은 첫째, 해당 시설이 다양한 아동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지, 둘째, 아동의 웰빙에 기여하는 정도, 셋째, 리더십과 관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의 질을 평가한다(Ofsted, 2013).

우선 첫 번째 기준인 ‘기관이 다양한 영유아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는 영유아의 배움과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영유아의 출발점과 역량, 기관 이용 기간 및 빈도를 고려해 볼 때 최적의 발전을 보이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또는 이후 교육단계를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자세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습의 주요 영역(사회정서 발달,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 신체발달) 및 세부 영역(문해력, 수학, 세계 이해, 표현예술 및 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동이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가?
- 모든 영유아가 발달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효율적 학습과 다음 단계로 잘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가?
- 교사의 기대, 열정, 참여 수준이 높고 아동의 동기를 잘 유발하는가?
- 교수전략이 아동 개인의 욕구에 적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 아동의 적응을 위해 부모와 협력하는가; 아동의 발달과 학습과 관련하여 부모가 가정과 기관에서 잘 참여하는가; 아동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잘 나누는가; 아동의 성취와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주는가?

자료: Ofsted(2013). Evaluation schedule for inspections of registered early years provision. pp.7-8.

조사관이 해당 영역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아동이 효율적인 학습의 주요 특성인 놀이와 탐구, 적극적인 학습,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교사가 아동의 배움을 위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아동이 발전하고 있다는 부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아동별 처음 수준과 2년 동안의 발달사항 확인자료, 중간 평가, 영유아기초 단계 교육과정 프로파일 등을 참고로 한다. 다음 단계로의 전이와 관련한 아동

29) Ofsted(2013). Evaluation schedule for inspections of registered early years provision을 참고하여 작성함.

의 준비도는 직원의 평가에 기초하며 조사관은 교직원의 지식, 훈련, 전문지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사관이 직접 아동의 활동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기도 하고, 관리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찰한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관찰 시에는 연령이 다르고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한 몇 명의 아동을 선정해 이들을 관찰하는 동안 추적 관찰한다. 또한 교사, 원장, 부모, 아동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조사관은 관찰 결과 및 인터뷰, 문서 확인을 바탕으로 서비스 질을 매우 우수함(outstanding), 우수함(good), 개선이 필요함(require improvement), 부적절(inadequate)의 네 등급으로 평정할 수 있으며 각 등급별 기준을 주요 요소별로 제시하고 있다(Ofsted, 2013). 이 기준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아동의 웰빙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관은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돌보아 지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아동, 특히 어린 아동이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보호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갖고 있는가?
- 아동이 기관에서 있는 동안 행복하고 즐기며, 바르게 행동하고 협동적으로 놀이하며, 독립성을 키우고 주변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며 성인과 서로 잘 이야기하고 놀이하도록 도와주는가?
- 아동이 신체활동과 건강한 식이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위생과 개인의 욕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가?
- 아동이 유아학교, 초등예비학급 등 다음 단계로의 전이를 위해 정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자료: Ofsted(2013). Evaluation schedule for inspections of registered early years provision. pp.11-12.

두 번째 영역 평가는 조사관의 직접 관찰을 바탕으로 하며 관찰항목은 아동의 사회, 인성, 정서 발달과 학습을 위해 잘 계획되어 있는지, 아동의 웰빙 측정을 위한 증거, 교사 및 원장, 아동과 부모와의 대화, 아동 추적관찰을 통해 해당 정보를 수집한다.

세 번째 영역은 리더십과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 영역에서 조사관은 EYFS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실행함에 있어 리더십과 운영 관리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영역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육프로그램 감동을 포함하여 EYFS에서 제시하는 발달과 학습에 대한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가?
- 모든 직원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환경을 만드는 등 EYFS에서 제시하는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가?
-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엄격하고 효과적인 자기평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 직원이 교수와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기개발하고 지도감독과 수행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 부모와 외부 기관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가?

자료: Ofsted(2013). Evaluation schedule for inspections of registered early years provision. pp.15-16.

세 번째 영역의 평가를 위해서는 원장과의 인터뷰와 직원, 부모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관은 교사, 직원, 학생들이 얼마나 잘 모니터링 되고 지도받고,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직원의 자격 조건, 능력에 맞는 직원 배치, 아동 보호 및 안전 훈련 등 법에서 제시하는 훈련의 내용과 범위를 기준에 맞게 잘 시행하고 있는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의 모니터링과 자기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반 여건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세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질과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데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각 영역별 점수 부여에 대한 근거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 1) 모든 아동이 시작점에 비추어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나아졌고, 다음 단계로의 전이를 위해 잘 준비된 정도
- 2) 학습과 보호에 있어 특수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동의 욕구가 잘 충족된 정도
- 3) 아동이 안전하고 안정감 있고 행복한지와 아동의 성격 및 정서 발달 정도
- 4)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요구사항이 잘 충족되고 아동 보호 방법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정도
- 5) 아동 삶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수행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리더십과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의 정도

자료: Ofsted(2013). Evaluation schedule for inspections of registered early years provision. pp.18-19.

아동보호법에 의한 영유아 기관 점검 외에 유아학교에 대한 점검은 교육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만약 유아학교가 초등학교와 함께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학교 평가 내 일부분으로 유아학교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지표는 학교점검 지표와 동일하게 사용되나, 영유아기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을 달리하며, 별도의 영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초등학교와 함께 평가 시 달리 적용되는 점은 아동의 성취 평가에 있어 아동의 시작점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만약 시작점에서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던 유아가 마지막 단계에서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다면 이 아동은 급속한 발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작점은 빨랐으나 마지막 시기에 정상 수준을 보였다면, 이 아동은 충분한 진전을 보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영국 교육 기본 상 영유아기초단계 교육과정의 다음 단계인 주요 1단계(Key Stage 1)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평가 내용이다. 만약 시작점이 측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경우 연령과 시작점에 대한 증거에 비추어 학습과 발전 정도를 측정한다.

학교 평가의 지표는 교육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재학생의 성취 정도, 교수의 질, 재학생의 학교에서의 행동과 안전, 리더십의 질과 학교 운영관리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유아학교 평가 영역이 보육기관 평가 영역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점검하는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다만 평가 내용이 보다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보호의 욕구보다는 학습의 욕구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발달 영역이 신체 정신건강, 안전, 웰빙과 함께 정신 발달, 도덕성, 사회문화 발달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의 학습에 대한 태도와 참여 정도와 선택과 의사결정에서의 자발성 등을 살펴보는 등 보다 주체적인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표준청은 현장관찰을 통한 점검 외에도 점검에 앞서 이전 점검 결과보고서와 자체점검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특징과 장점, 약점 등을 파악하고 교육표준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학부모 의견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학부모 의견이 어떠한지를 확인한다.

나. 노르웨이³⁰⁾

노르웨이는 유치원 점검에 대한 사항을 각 지자체의 자율에 두고 있어 중앙

30)PWC(2010)의 Tilsyn til besvær? Undersøkelse av kommunene som barnehagemyndighet, herunder kommunenes tilsyn med barnehagene.과 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2014, in press)의 Inspection Methodology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에서 하달하는 점검 체계 및 지표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유치원법과 기본 계획을 통해 유치원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유치원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즉, 점검을 목적으로 질 관리 영역과 기준에 대해 중앙 정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학습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목적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광범위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PWC(2010)의 조사에 따르면 점검 기준 개발을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가 유치원을 위한 교육과정과 임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일부 소수 지자체는 각 지자체별 유치원 질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개발하고 있다.

유치원법은 유치원에서 실행해야 하는 교육과정과 유치원의 의무,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 등에 대해 다루고 있고, 유치원 점검에서는 이 같은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법 제2섹션은 유치원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아동이 놀이와 자기 표현, 그리고 의미있는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연령, 발달 수준, 성별, 사회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받고, 각 유치원은 유아의 호기심과 창의성, 학습의 욕구 등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등 유치원의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유아의 권리에 대한 제3섹션에서는 유아의 권리, 제18섹션은 직원 임용 및 배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 점검에서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다. <표 III-4-1>은 노르웨이의 유치원법 내용을 영역과 내용으로 나누어 어떠한 기준이 주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노르웨이 점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6).

<표 III-4-1> 노르웨이 Kindergarten act에 제시된 점검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목적	유치원은 가정과 협력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아동의 돌봄과 놀이에 관한 필요를 보호하고, 배움과 전반적인 발전의 기초로서 형태를 증진해야 한다.
	유치원의 내용	유치원은 교육학적 사업으로서 유치원은 아동들에게 놀이, 자기 표현, 의미 있는 경험과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아동들의 나이, 기능 수준, 젠더, 라플란드 아동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한 사회적·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III-4-1 계속)

영역	내용	
아동과 부모의 참여	아동들의 참여 권리	유치원의 아동들은 활동에 대해 그들의 관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규칙적으로 유치원 활동에 대한 계획과 평가에 있어서 활발한 부분을 맡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부모 협의회와 조정 위원회	아동들의 가정과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유치원은 부모 협의회와 조정 위원회를 가지며, 부모 협의회는 모든 아동들의 부모/후견인으로 이루어지며, 그들의 공동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유치원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룹으로서 유치원과 부모 간의 협력을 돕는다.
	학교와 유치원의 공동 조정 위원회	지방자치당국은 지방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위한 공동 조정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승인 요구 의무와 책임 분배	승인 요구 사업에 관한 의무	다음과 경우, 의무 교육 연령 하의 아동들의 책임에 관한 사업은 승인 요구를 받는다. - 정기적으로 한 명 이상의 아동이 1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 - 세 살 이상의 아동이 10명이상이거나, 3살 이하의 아동이 5명이상인 경우 - 활동에 대한 보수가 지불되는 경우
	유치원 소유자의 책임	유치원의 소유자는 현재의 정관과 규칙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유치원의 소유자는 계정에 관한 정보와 교육부 규정에 준하는 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지역 당국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유치원이 현재의 법령에 따라 운영됨을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 장의 책임	지자체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소유자에게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한 유치원의 문서와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반적 책임	승인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의 측면에서 유치원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족 유치원	가족 유치원의 승인은 가족 유치원의 운영을 전제로 개별 가정의 약속과 적합성의 조식을 포함해야 하며, 교육부는 가족 유치원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입학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승인 유치원은 아동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유치원의 다양성과 독특한 성격을 고려하여 조정된 입학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유치원 자리의 권리	늦어도 당해 8월 말까지 유치원 장소가 모색되지 않은 1세가 된 아동들은 규정에 따라 8월부터 유치원에서 자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표 III-4-1 계속)

영역	내용	
일반적 책임	입학 우선순위	장애를 가진 아동은 유치원 입학 우선순위의 자격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아동들이 유치원에서 한 자리를 부여 받도록 할 책임이 있다
	승인된 사립유치원의 지자체보조금	유치원이 지원 중단 대상이 되기 이전에 유치원 승인을 신청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모든 승인된 비-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의 정규 작업에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의 비용	형제자매에 대한 할인, 지불의 소득 기준 차별화 및 최대 지불을 포함하여 유치원에서 부모의 비용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포함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감독	지방자치단체는 본 법에 따라 유치원 사업을 감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을 받은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조건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채용	수석 교사	유치원 교사로 훈련되거나 또는 아동에 대해 일하는 교육학 전문가를 위한 자격을 주는 여타 대학 교육을 받은 수석 교사를 고용한다.
	기타 유치원 직원	교육 리더는 훈련된 유치원 교사여야 하며, 유치원 교육에 대한 추가 교육인 대학 차원에서의 3년간의 교육학 프로그램은 유치원 교사 교육과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인증	유치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충분한 인증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인증서는 해당인이 아동의 성적 학대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지의 여부를 입증한다.
기타 조항	기밀 의무	기밀 의무에 관련된 규칙들은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응되어 적용된다.
	사회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	유치원 직원은 자발적으로 사회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은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밀 의무에도 불구하고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공개할 수 있다.
	아동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유치원 직원은 자신의 일이 아동 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기밀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되고 있거나 여타 형태로 돌봄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과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아동이 유치원에 출석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의 건강에 관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유치원 직원은 현재 규칙에 따라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실습 교육	유치원의 소유자는 유치원 교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유치원이 사용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Svalbard에 대한 법 적용	왕은 Svalbard에 대해 적용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현지 상황에 관해 특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6). Act no.64 of June 2005 relation to Kindergartens(the Kindergarten Act). p.2-6의 내용을 재구성함.

한편 노르웨이 유치원 대상 점검은 교육부 관련 법 조항 및 규제 외에 안전, 환경, 건축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도 대상이 된다. 유치원에서 적용받아야 하는 기타 법 조항으로는 ‘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법률(1996. 7. 19 제정)’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환경 위생(1995. 12. 1 제정)’,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에 관한 법률(1985. 6. 14 제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 관련 점검을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다. 호주³¹⁾

호주는 국가 질적기준(NQS)에서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일제 보육,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 및 일부 유아원/유치원에 적용된다. 국가 질적기준은 1) 유아의 안전, 건강, 행복 증진; 2)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성취에 대한 노력; 3) 양질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정의 이해력 제고에 목적을 둔다.

국가 질적기준은 최선의 교육실체에 대한 연구 결과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유아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국가 학습체계(national learning framework)와 연계되어 7개의 질 영역, 기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ACECQA, 2013c).

1)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5) 유아들과의 관계
2) 유아의 건강과 안전	6)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3) 물리적 환경	7) 리더십과 기관 운영
4) 교직원 배치	

7개의 영역은 2-3개씩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의 기준이 있다. 기준은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기술한 것으로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소는 총 58개이다. 요소는 기준이 달성되기 위한 결과물들을 설명하고 있다. 7개 영역, 18개의 기준, 58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31)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홈페이지(<http://www.acecqa.gov.au/>), ACECQA(2014) Guide to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nd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ACECQA(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III-4-2〉 호주 평가 영역, 기준, 요소

구분	내용
QA 1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 프로그램과 실제</p> <p>승인된 학습체계가 유아 각각의 학습과 발달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이끈다.</p> <p>1.1 교육과정 의사결정이 정체성, 지역사회 연계, 안녕, 학습자로서의 자신감, 의사소통자로서의 유능감과 관련하여 각 유아의 학습과 발달 결과에 기여한다.</p> <p>1.1.1 각 유아의 현재 지식, 사고, 문화, 능력과 흥미가 프로그램의 기초가 된다.</p> <p>1.1.2 하루 일과를 포함해 프로그램은 각 유아의 학습 기회를 최대화 하도록 구성되었다.</p> <p>1.1.3 각 유아의 프로그램과 발달에 대한 기록이 가족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p> <p>1.1.4 모든 유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받는다.</p> <p>1.1.5 각 유아의 주체성을 증진시켜 그들이 선택 하고 결정 하며, 일어나는 일과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p> <p>1.1.6 교육자들과 협력자들은 각 유아를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집중적이고, 적극적이고, 반성적이다.</p> <p>1.2 각 유아의 학습과 발달은 계획, 기록, 평가의 지속적인 순환의 일부로서 평가된다.</p> <p>1.2.1 교육자들은 유아들의 생각과 놀이에 반응해주고 각 유아의 학습에 비계설정을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교육을 한다.</p> <p>1.2.2 개인과 집단 모두의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된다.</p> <p>1.2.3</p>
QA 2	<p style="text-align: center;">유아의 건강과 안전</p> <p>2.1 각 유아의 건강이 증진된다.</p> <p>2.1.1 각 유아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지원된다.</p> <p>2.1.2 각 유아에게 편안함을 주며 수면, 휴식, 이완에 대한 유아들의 요구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있다.</p> <p>2.1.3 효과적인 위생의 실체가 권장되며 실행된다.</p> <p>2.1.4 지침에 적합하게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부상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2.2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p> <p>2.2.1 건강한 식생활을 권장하며 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는 영양가 있고 유아에게 적합한 것이다.</p> <p>2.2.2 유아들에게 적합한 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경험들이 신체활동을 증진시킨다.</p> <p>2.3 각 유아가 보호받는다.</p> <p>2.3.1 유아들은 항상 적절한 관리를 받는다.</p> <p>2.3.2 유아들을 부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해 요소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책이 있다.</p> <p>2.3.3 효과적으로 사고와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들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하에 개발, 시행, 실시되고 있다.</p> <p>2.3.4 교육자, 협력자들과 직원들은 유아들을 학대나 방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p>

(표 III-4-2 계속)

구분	내용
QA3	물리적 환경
3.1	부지의 설계와 위치가 기관을 운영하는데 적합하다.
3.1.1	실외, 실내 공간, 건물, 가구, 설비, 시설과 자료들이 목적에 적합하다.
3.1.2	부지, 가구, 설비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잘 관리된다.
3.1.3	설비는 기관에 있는 모든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융통성 있는 사용과 실내, 실외 공간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고 사용되고 있다.
3.2	환경이 포괄적이며 유능감, 독립적인 탐색과 놀이를 통한 학습을 증진시킨다.
3.2.1	실외, 실내 공간의 건물과 자연환경이 모든 유아들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조직되었다.
3.2.2	교재, 교구, 설비의 수가 충분하며 프로그램 실행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3.3	기관은 환경 보호에 적극적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
3.3.1	지속가능한 실체가 기관 운영에 내포되어 있다.
3.3.2	유아들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지도를 받고 환경에 대한 존중을 보인다.
QA4	교직원 배치
4.1	교직원 배치는 유아들의 학습과 발달을 강화시키고 안전과 안녕을 보장한다.
4.1.1	교사대 유아 비율과 자격 요건이 항상 유지된다.
4.2	교사, 협력자, 직원들은 정중하며 윤리적이다.
4.2.1	전문적 표준이 교육실제와 상호작용과 관계의 지침이 된다.
4.2.2	교육자, 협력자, 직원들은 협력해서 일하며 각자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지원하고 서로 배운다
4.2.3	상호작용은 각자의 강점과 기술에 대한 상호존중, 평등, 인정을 전달한다.
QA5	유아들과의 관계
5.1	각 유아와 존중적이고 공평한 관계가 쌓여 있고 유지된다.
5.1.1	각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신뢰하는 관계가 쌓여있다.
5.1.2	모든 유아가 삶과 학습을 위한 기술을 습득을 지원하는 교사들의 의미 있고 개방된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다.
5.1.3	각 유아가 안정감, 자신감, 소속감을 느끼도록 지원받는다.
5.2	각 유아가 다른 유아 및 성인과 민감하고 반응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도록 지원받는다.
5.2.1	각 유아는 협동학습의 기회를 통해 함께 일하고, 서로 배우고 돕도록 지원된다.
5.2.2	각 유아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지원된다.
5.2.3	각 유아의 존엄성과 권리가 항상 존중된다.
QA6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6.1	가정과의 존중적인 지원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6.1.1	가정을 위한 효과적인 등록 및 안내 과정이 있다.
6.1.2	가정은 기관에 참여하고 기관의 결정에 기여할 기회가 있다.
6.1.3	기관의 최신 정보가 가정에 전달된다.

(표 III-4-2 계속)

구분	내용
6.2	가정은 양육 역할에 대해 지원을 받고 가정의 양육에 대한 가치와 신념이 존중된다.
6.2.1	가정의 전문성이 인정되며 유아의 학습과 안녕을 위한 결정을 공유한다.
6.2.2	양육과 가정의 안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최신 정보가 가정에 제공된다.
6.3	기관은 유아들의 학습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조직과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한다.
6.3.1	관련된 지역사회 및 지원 기관과의 연계가 형성되어 있고 유지된다.
6.3.2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 유아의 학습의 지속성과 전이가 지원된다.
6.3.3	통합에 대한 접근과 보조 지원이 용이하다.
6.3.4	기관은 지역사회에 관계를 맺고 참여한다.
QA7	리더십과 기관 운영
7.1	효과적인 리더십은 긍정적인 기관 문화를 증진시키고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만든다.
7.1.1	기관 운영을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
7.1.2	교사, 협력자, 직원의 채용이 포괄적이다.
7.1.3	기관에 있는 교사들과 협력자들간 연속성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진다.
7.1.4	적절한 자격을 갖춘 경력 교사나 협력자가 교육과정의 개발을 이끌고 교수학습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기대를 설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여건이 되어 있다.
7.1.5	유아와 함께하는 성인들과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절하다.
7.2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7.2.1	기관의 철학이 있고 그것이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침이 된다.
7.2.2	교사, 협력자, 직원들의 수행은 평가를 받고 향상을 위한 개인 발전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
7.2.3	효과적인 자기 평가와 질 향상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7.3	행정 시스템이 양질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7.3.1	기록과 정보가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게 보관되고, 기관에서 접근 가능하며, 법 조항에 따라 관리된다.
7.3.2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 체계가 설치되어 유지된다.
7.3.3	감독기관은 기관 운영과 관련된 변화, 심각한 사고, 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만사항 등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7.3.4	모든 고충과 불만을 다루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적시에 기록하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7.3.5	기관 운영은 효과적으로 기록된 방침과 절차에 따르며 이는 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자료: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p.10-11.

특히 교사자격 및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관해 수정된 정책은 기관 대상 평가에서도 교사 자격이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중요하며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자격에 관해서 2013년 9월부터 호주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은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시키는 사람에 한해 유아교사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ACECQA, 2014).

- 최소한 5-8세를 중점으로 하는 초등교사자격(예: 3-8세 또는 5-12세 자격)
- 호주의 유아교사 등록 (또는 New South Wales 인증)
- ACECQA 자격 리스트에 기재된 승인된 유아교육과 보육 학위 또는 상위 자격(예: 대학원 학위)

이 과도기적 사항은 2018년에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규정의 137조에 근거해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 위원회는 인증된 유아교사 자격 목록을 공지하여야 하며 이는 2012년 1월부터 기존의 주별, 지역별 교사자격을 대체하게 되었다. 이전에 인증된 유아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12년 1월 이전에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규정에 의거한 유아교사로 인정한다. 2012년 1월 이전에 자격을 갖추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을 충족시켰을 때 유아교사로 인정한다. 2014년 1월까지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5명 미만의 유아(인가정원)를 대상으로 전일제 보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유아원 서비스는 기관이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의 최소 20%의 시간동안 유아교사를 고용해야 한다. 25명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전일제 보육과 유아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유아교사는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이상(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또는 운영 시간의 60%(일주일에 50시간 미만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이상 근무해야 한다. 기관은 전일제 교사에 상응하는 유아교사를 고용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각 전일제 보육시설이나 유아원에 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체 교사의 절반은 인가된 전문학사 수준의 교육이나 보육 자격 이상을 갖추고(또는 적극적으로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인가된 3급 교육과 보육 자격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또는 적극적으로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한다. 인가된 자격이 없는 새로운 교사는 3개월간 조건부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유아원 연령 이하의 유아를 교육하고 보육하는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에만 적용된다(이는 South Australia나 New South Wales에서는 적용되지 않

음). 만약 교사가 같은 주체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조건부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외딴 지역에 있는 기관은 2018년 1월 1일까지는 유아교사를 고용하는 대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유아교사에게 접근하는 식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유아교사는 기관이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의 최소 20% 이상의 시간동안 이용 가능해야 한다. 모든 가정보육 코디네이터들은 인가된 전문학사 수준의 교육과 보육 자격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가정보육 교사들은 인가된 3급 교육 보육 자격이나 동등 자격 이상을 갖추어야(또는 적극적으로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2020년 1월 1일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사항이다(ACECQA, 2014).

전일제 보육과 유아원 서비스가 하루 중 어느 시간이라도 60에서 80인의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 기관은 하루에 3시간(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또는 운영 시간의 30% (일주일에 50시간 미만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시간동안 두 번째 유아 교사를 고용해야 한다.
 기관은 전일제 교사의 절반 시간에 상응하는 두 번째 유아교사를 고용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것도 강조가 되고 있다. 이 비율이 개선되면 교직원들은 보다 개별적인 보육과 관심을 주는 것이 가능해 지고 이는 유아의 보다 나은 사회적, 학습적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 일부 주와 지역에서는 기관의 필수 요건에 영향을 주는 조항들을 만들었다.

〈표 III-4-3〉 기관중심 서비스의 교사 대 유아비율 관련 조항

연령	교사대 유아 비율	적용 날짜
출생에서 24개월	1:4	2012년 1월 1일 - 모든 주와 영토 (2012년 8월 1일 in WA)
24개월에서 36개월	1:5	2012년 1월 1일 - ACT, NT, TAS 2012년 8월 1일 - in WA 2016년 1월 1일 - NSW, QLD, SA VIC에서는 saving provision 적용
36개월에서 유아원 연령	1:11	2012년 1월 1일 - NT 2016년 1월 1일 - ACT, QLD, VIC NSW, SA, TAS, WA에서는 saving provision 적용
유아원 연령 이상	국가수준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음 (주와 영토의 기준 적용)	

자료: <http://www.acecqa.gov.au/Improved-educator-to-child-ratios>의 내용 인출(2014. 10. 6).

〈표 III-4-4〉 가정보육서비스의 교사 대 유아비율 관련 조항

연령	교사대 유아 비율	적용 날짜
출생에서 13세	1:7, 유아원 연령 미만 유아들은 4명이 넘지 않도록 함	2012년 1월 1일부터 - ACT, QLD, SA, VIC 2014년 1월 1일 - NSW, NT, TAS, WA

자료: <http://www.acecqa.gov.au/Improved-educator-to-child-ratios>의 내용 인출(2014. 10. 6).

라. 뉴질랜드³²⁾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기관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높은 수준의 실제와 실제 모습 사이의 간극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틀을 제공한다. 지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높은 수준의 질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질의 수준 자체를 표상할 수 없으므로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셋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표현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요구사항이 아니며 유아교육기관이 지표의 모든 항목을 성취했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ERO, 2013).

뉴질랜드 평가지표는 뉴질랜드 국내 및 국제 평가 및 연구, 국가 평가(national evaluation), 그리고 교육평가청 내에서의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실제로 ERO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유아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다양한 이론이나 연구방법론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뉴질랜드 자체 내에서의 연구로 가장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지역적 시각(localised perspectives)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ERO, 2013).

흥미로운 점은 뉴질랜드에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의 지표는 평가에서 각 지표당 성취 여부를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기관이나 평가자가 고려해야 할 항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평가청이 지표를 '자원(resources)'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지표는 평가자가 기관의 다양한 운영 모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으

32) ERO(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를 참고로 구성하였음.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표는 교육평가청이 기관을 평가하는 지점을 분명히 하고 기관에서 하는 자체평가를 도와주기도 한다(ERO, 2013).

뉴질랜드 유아교육기관 대상 지표는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축은 부모와의 파트너십과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발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시작한다. 이러한 요소는 각 축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영역 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각 축을 위한 평가지표는 먼저 평가의 방향을 잡는 질문들과 각 축에 대한 리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ERO, 2013).

각 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기 전에 평가를 위해 우선적 질문(priority questions)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질문(supporting evaluation questions), 이보다 탐색하기 위한 질문(investigative prompts)을 제시하였다. 우선적 질문은 기관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학습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며 각 축에 대한 자체평가와 파트너십의 효과성을 확인한다. 평가를 지원하기 질문은 각 축의 주요 측면을 강조하는 중요한 평가질문이다. 탐색하기 위한 질문은 우선적 질문과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질문을 더 풀어 헤쳐 보는 것으로 질문의 리스트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시로 명시하고 있다(ERO, 2013).

지표는 2가지 종류인 연결요소와 기여요소로 나누어진다. 연결요소는 부모나 가족과의 파트너십(Haere Kotui)과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Arotake)에 관련된 지표를 말한다. 부모나 가족과의 파트너십과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이 각 축을 가로질러 엮여진 형태로 다른 주제로 교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여요소는 각 지표의 공통된 주제나 실제의 모습에 따라 지표를 그룹화하는 방식이다(ERO, 2013).

1) 운영과 관리

운영과 관리의 축에서는 기관의 철학, 비전, 목적, 시스템이 모든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아래 표는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의 우선적 질문, 평가지원을 위한 질문,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를 보여준다.

〈표 III-4-5〉 뉴질랜드 운영과 관리 측면 질문의 예

구분	질문
우선적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철학, 비전, 목적, 시스템이 아래와 같은 내용에서의 효과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 마오리족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마오리족 아동을 지원하기 · 태평양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기관에 오는 다양한 아동의 흥미, 강점, 능력에 부응하거나 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기관의 관리자가 부모와 가족과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하는가? -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평가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개선을 이끌었는가?
평가지원을 위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어느 정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가? · 정책과 실천을 통해 마오리와 비마오리족의 각 문화를 강조하는(te tiriti o waitangi) 원칙을 가치있게 여기고 실행하고 있는가? · 비전 그리고 목표와 계획에 다양한 부모와 가족의 열망과 그들 자녀의 학습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가? · 교사, 부모, 가족, 지역사회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 개선과 아동의 학습에 초점을 둔 전략을 계획(장기/단기)하고 실행하는가? · 실천의 방향을 알려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 재정, 자원, 건강,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 관련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임용하는가? · 교사에게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제공하는가? · 자체평가에 부모와 가족을 참여시키는가? · 자체평가에서 치밀한 과정을 거치는가? ·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질을 개선하는 데 자체평가를 사용하는가?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 정책, 실천이 각 문화를 강조하는(te tiriti o waitangi) 원리에 충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인가? · 부모, 가족, 소수민족, 지역사회와 논의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는가? · 마오리족과 소통하기 위해 이용했던 과정은 적절하였는가? · 기관은 어떻게 아동의 부모와 가족이 가진 열망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아차렸는가? ·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 무엇이 기관의 장기, 단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아동의 학습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 기관의 철학을 진술하는 것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것은 평가되었는가? 누가 참여하였는가? 누구의 가치와 신념이 반영되었는가? · 어떻게 기관은 정책과 실천 사이에서 조정을 보장하는가?

(표 III-4-5 계속)

구분	질문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방식으로 자체평가는 기관의 비전과 관련 목적에 연계되는가? 운영과 관리의 실재를 위해 어떠한 자체평가가 착수되는가? 어떤 자체평가가 계획되는가? 어떤 자체평가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과정이 자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가?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들에 의한 자체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기관의 자체평가의 효과는 무엇인가? 모든 아동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가?

자료: ERO(2013). HE POU TATAKI의 p.26 내용을 번역하였음.

위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4-6〉 뉴질랜드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지표

요소	평가지표의 예
연결 요소	
부모와 가족과의 운영/관리 및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은 마오리족을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조약(treaty)을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존중한다. 조약의 중요성은 파트너십, 정책, 실행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다. 부모와 가족은 필요 시 도움을 받고 자체평가에 기여할 기회가 있다. 철학, 비전, 관련 목표 및 계획은 부모와 가족이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에 부합한 영향을 주고 있다. 운영진은 교사, 부모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적절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운영/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가 아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목할만한 증거가 있다. 셀프 리뷰의 향상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적절히 이루어져 있다. 자체평가를 안내하기 위한 기대효과/가이드라인 /절차가 효과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자체평가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된 우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민감해야 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관의 모든 운영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절차와 실천의 효과성에 주목해야 한다. - 비전, 목표, 결과를 고려한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자체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 전문적 학습과 발달(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 우선순위, 계획, 정책, 시행 자체평가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변화에 대한 효과는 계속 잘 모니터링되고 있다.

(표 III-4-6 계속)

요소	평가지표의 예
기여요소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비전은 기관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은 다음과 같다 : - 마오리 아동과 가족들이 가진 잠재력 발견 모색 - 두 문화가 공존하는 뉴질랜드의 특성 반영 - 자녀가 있는 부모, 가족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에 부합 - 장,단기적 계획 안내 -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영유아교육 시행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철학은 다음과 같다 : - 운영진, 교사, 부모, 가족, 아동의 긴밀한 관계 하에 이루어진다. -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고 기관 관련자 모두 이 내용을 숙지한다. - 주기적으로 평가된다. - 공유된 가치와 신념에 의해 뒷받침된다. - 두 문화가 공존하는 뉴질랜드의 특성이 반영된다. - 기관에서 목표하는 아동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개요가 있다. - 증거기반 실행이 이루어진다.
전략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목표와 기관의 우선순위는 계획(장·단기)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하게 제시하는가? · 기관의 우선순위와 목표는 아동 학습의 긍정적인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과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관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정책의 기틀 및 가이드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은 각 문화의 존중하고(Te Tiriti o Waitangi) 마오리를 특정지역에 사는 권리를 지닌 자로 인식하는가? · 정책은 문화존중 기반/두 문화 공존 커리큘럼을 시행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안내하는가? · 정책과 절차는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가? · 정책이 모든 유형의 기관에서 양질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내용을 수반하는가? · 정책은 옹호, 평등, 사회정의의 원칙에 기반하는가? · 정책은 모든 아동들이 포괄적이면서도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가?
수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최신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능력있는 관리자를 모집하고 교사의 전문적 학습 및 발달(PDL)을 지원하는가? · 수행 관리는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표 III-4-6 계속)

요소	평가지표의 예
재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예산이 기관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부합하게 구성되었는가? · 예산이 아동의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있는가? · 지출이 주기적인 보고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가?
건강 및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신체, 정서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역량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향상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는가? · 거버넌스와 운영 역할로 투입되는 신규 인력들은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잘 적응하는가? · 기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 숙지하고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가? · 경영진은 특별 요구가 있을 시 교사들에게 PDL을 지원하는가? · 관리자는 그들이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PDL과 트레이닝을 시행하는가? · 경영진은 두 문화 공존에 기반한 발달, 문화존중 기반의 실행을 지지하는가? · 경영진은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발달과 이해를 통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평등 및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능력있는 교사들을 모집 및 관리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가?

자료: ERO(2013). HE POU TATAKI의 pp.27-28 내용을 번역하였음.

역량강화에 관한 축(Pou Ārahi)에서는 관리자는 모든 영유아를 위해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관 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표 III-4-7〉 뉴질랜드 역량강화 측면에서의 평가지표

구분	질문
우선적 질문	<p>기관은 다음과 관련하여 리더의 효과성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오리족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마오리족 아동을 지원하는가? · 태평양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 기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아동의 흥미, 강점, 능력에 부응하여 지원하는가? <p>기관의 리더가 아동의 긍정적 영향을 끌어내기 위해 부모와 가족과의 파트너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p> <p>교육적(교수방법과 커리큘럼) 리더십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p> <p>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리더는 자체평가를 어느 수준으로 장려하고 시행하는가?</p>

(표 III-4-7 계속)

구분	질문
평가지원을 위한 질문	<p>리더는 아래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가? · 질적인 학습과 교수방법을 시행하고자 노력하는가? · 전문적인 실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 · 업무진행 시 협업을 도모하는가? ·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리더십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교사, 부모 및 가족, 아동,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	<p>기관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정의되고 규정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리드를 하고 무엇을 위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 리더는 기관의 철학, 비전,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 리더는 기관의 철학을 어떻게 고취하는가? · 리더는 마오리 족 가족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어떻게 하는가? · 리더는 다양한 아이들의 가족과 얼마나 섬세하게 일을 하는가? · 교육적 리더는 자체평가 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전문적 학습 및 발달(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PDL)은 두 문화와 문화 존중(Te-Tiriti) 기반 실재에 대한 실행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리더는 교사들의 영아, 유아에 대한 전문적 티칭 실재를 발달시키기 위해 어떻게 지원하는가? · 리더들은 PLD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 · PLD의 어떤 부분이 교사들을 위해 구성된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구성의 결정요소는 무엇인가? · 최근 리더와 교사가 수행한 PLD는 어떤 것인가? 그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리더는 교사의 문화적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장려하고 지원하는가?

자료: ERO(2013). HE POU TATAKI의 p.29 내용을 번역하였음.

교육과정에 관한 축(mātauranga)에서는 모든 영유아의 학습성과를 장려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관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펴본다.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우선적 질문, 평가지원을 위한 질문,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4-8〉 뉴질랜드 교육과정 측면 질문의 예

구분	질문
우선적 질문	<p>기관은 다음과 관련하여 커리큘럼(설계 및 기획)의 효과성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오리족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마오리족 아동을 지원하는가? · 태평양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 기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아동의 흥미, 강점, 능력에 부응하여 지원하는가? <p>기관의 커리큘럼은 아동, 부모, 가족이 기관에 협조하는 내용 범위에서 어느 수준으로 인지하고 전문 지식을 구축하는가? 모든 아동의 긍정적 학습 결과를 위한 기관 커리큘럼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는 얼마나 효과적인가?</p>
평가지원을 위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영아, 유아(그리고 부모, 가족까지)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가? · 교사는 부모와 가족의 기대와 원하는 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커리큘럼에 반영되고 있는가? · 교사의 관심과 지식은 커리큘럼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되는가? · 교사는 영아, 유아의 흥미와 장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커리큘럼을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가? · 평가와 기획 과정은 교사들이 영아, 유아의 강점, 흥미, 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지, 주목, 반응하는지 고려하는가? · 커리큘럼이 어느 수준으로 교사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지식, 커리큘럼과 배경 지식, 학습자의 지식 - 마오리 족 관점의 이해 - 기관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갖는 문화적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인지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아동, 부모, 가족에 대해 잘 알 수 있는가? · 기관에서 커리큘럼 결정을 알리는 것은 무엇인가? · 커리큘럼 결정 시 중점을 두거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때 관련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마오리족 가족은 커리큘럼 결정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다른 소수 민족은 어떠한가? · 커리큘럼 리뷰 시 마오리족 가족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리뷰할 때 기관은 부모, 가족, 커뮤니티의 전문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어떠한 평가 절차가 교사로 하여금 영아, 유아에 대한 강점, 흥미, 역량을 인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도록 하는가? · 기관은 이 커리큘럼의 민감성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자료: ERO(2013). HE POU TATAKI의 p.32 내용을 번역하였음.

〈표 III-4-9〉 뉴질랜드 교육과정 측면 평가지표

요소	평가 지표의 예
연결 요소	
부모와 가족과의 운영/관리 및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성, 호혜성을 띤 상호존중적 관계는 아동을 중심으로 각 가족과의 연대 의식으로 형성된다. · 교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인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가족이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평가, 기획 절차에 고려하는 것 - 마오리 족 가족이 기관에 공유하는 지식, 기술, 전문성 - 아동을 넓은 의미의 가족과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 · 교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영아, 아동, 부모, 가족의 기여를 가치있게 여기고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교사는 기관 커리큘럼 설계 시 부모와 가족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리더와 교사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부모와 협력하여 일한다.
운영/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와 교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프 리뷰의 한 부분으로서 기관의 커리큘럼이 누구의 지식을 가치있게 여기고 반영하는지 질문한다. - 영아, 유아의 커리큘럼 결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 기관 커리큘럼 평가는 영유아교육과정(Te Whāriki)에 근거한다.
기여요소	
전문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Te Whāriki의 목표, 특성, 학습 결과를 상세하게 다룬다. · 교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티칭, 발달에 대한 현 이론들을 알고 이러한 지식을 커리큘럼 설계 시 활용하여 자원을 얼마나 시간과 공간에 맞게 구성할지 결정한다. - 문화적으로 균형 있는 커리큘럼을 위해 마오리 족 이론과 철학에 대해 학습한다. - 커리큘럼에 대한 의사 결정 시 그들 개개인의 가치, 신념, 사고방식, 철학을 반영한다. - 아이들의 놀이를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치있게 여긴다.
커리큘럼과 교과 내용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커리큘럼이 얼마나 Te Whāriki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교사의 가족에 대한 지식은 아동의 생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각을 기를 수 있게 돕는다. · 교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큘럼 전반에 걸친 마오리 족의 견해를 인지한다.

(표 III-4-9 계속)

요소	평가 지표의 예
<p>커리큘럼과 교과 내용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 이론, 성향에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특정 주제 및 보편적 지식을 가진다. - 영아, 아동의 흥미와 요구에 의미있게 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다. · 교사가 아동의 흥미와 탐구에 관련된 필요한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교사가 아동과 함께 정보에 접근한다.
<p>학습과 학습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아동을 가족과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이해한다. · 교사는 마오리 족 아이들을 마오리 족의 미래 초석으로, 즉 마오리 족의 성공을 위한 핵심인력으로 인지한다. · 교사는 마오리 아동에 대해 잘 안다. · 아동은 커리큘럼에 자신의 문화, 언어,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 교사는 영아, 유아의 심도 있는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교사는 개별 아동을 '구성되고 있는 이론(지식, 기술, 성향)'을 포함한 개별적인 학습자로 인식한다. · 교사는 영아와 유아의 구성되고 있는 이론을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문서화하며 심화 활동과 대화를 통해 발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p>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성인과 함께 권리, 평등, 정의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커리큘럼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 아동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갖추며 지역, 글로벌 시민의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평가 실천은 아동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결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p>문화와 맥락에 대한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와 교사는 자기 인식, 소속감, 연대감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 교사는 마오리의 역사, 중요한 장소 등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의미있고 존중하면서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 교사는 뉴질랜드의 토착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기관 커리큘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한다. · 마오리족의 개념은 커리큘럼 결정 시 통합적으로 반영된다. · 교사는 태평양 지역의 아동의 다양성을 인정하며(단일민족이아님) - 언어와 문화는 태평양 지역 아동의 정체성과 긍정적이고 자신감있는 자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아동과 모국어와의 관계와 언어적 유창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교사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연계하여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표 III-4-9 계속)

요소	평가 지표의 예
가족과 지역사회에 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마오리족이 세대가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 교사는 아이들의 커뮤니티를 더 넓고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부모의 언어, 문화를 함께 익힌다. · 교사는 각 가족과 자녀를 기관의 학습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한다.
평가와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는 아이들을 성공한 학습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 · 평가는 모든 아이들의 사회, 문화적, 학습 방법을 인정한다. · 평가는 마오리 족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를 반영하여 아이들이 마오리 족으로써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오리 아이들의 문화 자원은 가치 있게 알려져 있으며 학습 성취 또한 장려된다. · 평가 실체는 태평양 문화, 지식, 학습에 가치 있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평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과 지식 습득과 같은 학습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 아동 학습의 복잡성(complexity)을 더욱 심도있게 증진한다. - 아동과 사람, 장소, 사물과의 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 아동의 강점, 흥미, 성향을 중심으로 한 신뢰 기반의 접근을 반영한다. - 아동이 자신의 지난활동을 상기하며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 · 아동들의 활동 관찰을 통해 아동이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흥미로워하며, 할 수 있는 지 윤곽을 잡을 수 있다. · 평가는 학습의 해석과 분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 시각을 포함한다.
평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범위의 평가 목적을 가진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 절차와 성취를 규정하기 위해 - 아동의 역량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을 알기 위해 - 기관에서 커리큘럼이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아동의 학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 아동의 개인, 그룹 평가 정보는 커리큘럼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데 활용된다. · 기획은 아동의 개인, 그룹의 실증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자료: ERO(2013). HE POU TATAKI의 p.33-35 내용을 번역하였음.

교수·학습에 관한 축(Tikanga Whakaako)에서는 모든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실체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우선적 질문, 평가지원을 위한 질문,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4-10〉 뉴질랜드 교수·학습 측면 질문의 예

구분	질문
우선적 질문	<p>기관은 다음과 관련하여(자체평가를 통해) 아래의 효과성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오리족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마오리족 아동을 지원하는가? · 태평양 지역 아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 기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아동의 흥미, 강점, 능력에 부응하여 지원하는가? <p>티칭과 학습 실체는 부모와 가족과의 파트너십을 어느 수준으로 증진시키는가?</p> <p>모든 아동의 긍정적 학습 결과를 위한 티칭과 학습 실체에 관한 자체평가는 얼마나 효과적인가?</p>
평가지원을 위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 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티칭 실체를 사용하는가? - 아동이 성공적인 학습자로 거듭나기 위한 티칭 실체를 사용하는가? - 아동과 존중하고, 호혜적이며 상호 민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가? - 모든 아동의 강점, 흥미 그리고 역량에 반응하는가? - 아동이 사고를 확장하고 도전하는 데 상호작용하는가? - 영아, 유아의 긍정적 학습 효과를 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가? - 아동이 뉴질랜드의 두 문화 공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 전략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가? - 실천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반영하는가?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영아의 긍정적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하는 교수 실천 및 전략의 효과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교사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유아의 긍정적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하는 교수 실천 및 전략의 효과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 티칭과 학습 실체는 어떤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지식, 기술, 성향을 확장하고 심화하는가? · 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티칭에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가? · 교사는 동료 교사와 리더와 함께 수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가? · 교사는 아동의 강점, 흥미, 역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 교사는 마오리 아동, 태평양 아동, 다른 문화 유산 지경 하에 있는 아동의 언어, 문화,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해 어떤 티칭 실체와 전략을 사용하는가?

(표 III-4-10 계속)

구분	질문
탐색하기 위한 질문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특수 아동, 영재를 포함한 다양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 학습 환경은 기관을 이용하는 영아, 유아의 학습을 어떻게 지원하고 반영하는가? · 연령에 따라 기관 내 혹은 학교로 새로 옮길 때 이동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자료: ERO(2013). HE POU TATAKI의 p.36 내용을 번역하였음.

〈표 III-4-11〉 뉴질랜드 교수·학습 측면 평가지표

요소	평가 지표의 예
연결 요소	
부모와 가족과의 운영/관리 및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관은 아이들과 부모, 가족을 모두 반기며 환영한다. · 파트너십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경청하며 개선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 교사는 마오리 가족이 기관과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기술과 전문성(문화적 이점)을 받아들인다. · 교사는 태평양 지역의 부모와 커뮤니티가 문화적으로 상호반응하며 관계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교사는 가족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절차를 준비할 때 계획된 조기 개입이 문화적으로 상호반응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운영/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칭 실제와 아동에 대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제에 대한 비평을 반영한다. - 자신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료들과 의논하고 토의한다. · 자체평가는 기관의 두 문화 커리큘럼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포함한다.
기여요소	
아동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긍정적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다. - 아이들의 말을 경청할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학습을 심화적으로 이끌어낸다. - 아동의 언어발달을 돕는다. - 아동이 처한 맥락에서 진정한 담화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아이들의 흥미를 학습으로 이끌기 위해 열린 질문을 한다. -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또래 관계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 Aotearoa 뉴질랜드의 토속언어인 마오리어를 생활 언어로 사용한다. · 아동의 대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장려한다.

(표 III-4-11 계속)

요소	평가 지표의 예
<p>효과적인 티칭 실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자신의 이론을 펼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조율한다. - 아동의 문화, 언어, 정체성에 반응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티칭 전략과 실재를 활용한다. · 의도적 교육은 다음을 포함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교사의 공동구성 - 성인주도의 활동에 아동의 참여 - 아동주도의 놀이 활동에 교사의 참여 · 지속적, 공유적 성격의 티칭은 아동의 생각과 가치를 확장하여 학습 경험에 기여한다. · 티칭 실재는 mana, wairua, mauri와 같은 마오리 족 아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 · 교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문제해결과 활동을 지원한다. - 아동의 생각, 흥미, 심화 이해를 환기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활동을 연계한다. · 아동이 들인 노력과 성공에 대한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 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은 함께 즐긴다. · 하루일과는 일관되게 진행함으로써 아동이 그 다음 일과를 예측하여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 교사는 아동이 지역 및 넓은 범위의 커뮤니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티칭 실재는 지속적인 환경 조성을 포함한다.
<p>문해 및 수리 유초 연계 Domai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아동의 문해 실재를 위한 레퍼토리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를 사용한 놀이, 관찰, 듣기 - 목적성을 띤 언어 사용 - 비판적 질문 · 교사는 마오리어 및 태평양 언어를 포함한 양질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모델링을 한다. · 교사는 알파벳과 같은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여 아동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아동의 수리 학습은 다음과 같이 의미있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수학 사용하기 - 수리적 탐색에 열린 자료 제공하기 - 다양한 수준의 게임 제공하기 · 교사는 마오리 관점에서 아동의 문해 및 수리 개념을 확장한다.

(표 III-4-11 계속)

요소	평가 지표의 예
문해 및 수리 유초 연계 Doma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치에 맞는 자연, 사회, 신체, 물리 환경 제공 - 창의적이면서 상상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공 -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의 활용
Te Tiriti 기반 실제 두 문화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마오리 가족이 그들의 이야기, 이미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에 귀를 기울이도록’ 함. · 교사 실재는 각 문화존중(파트너십, 참여, 보호)의 원리를 포함한다. · 프로그램은 마오리 개념, 지식, 기술, 태도, 언어, 실제, 관습, 가치, 신념을 포함한다. · 교사는 마오리 언어를 사용한다. · 교사 실재는 교사역량의 경쟁력을 반영한다.
포괄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의, 평등함, 인권을 기반으로 한 신념과 가치를 포함한 포괄적 교육에 철학과 의무를 공유한다. - 특수 아동들이 또래와 함께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육, 교육적 책임을 다한다. - 아동의 수용, 참여, 학습에 대해 규명하고 방해가 되는 부분은 정리한다. - 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아동과 가족이 모두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아동이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보육, 교육 환경에 장애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젠더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조성하며 성 역할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학습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은 안전해야 하며, 다양한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 환경은 궁극증을 유발하며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도록 조성한다. · 교사는 아동에 의미있고 즐거운 탐색을 장려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을 조성한다. · 자원 선택은 아이들이 겪으며 고르게 하고 이전 학습을 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된다. · 태평양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포함한 아동의 문화적 배경인 언어와 상징은 가시적이다. · 교사는 학습 환경을 활발하면서도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오리족 상징과 자연물을 활용한다. · 교사는 학습 환경 조성 시 아동 중심으로 자원과 공간을 선정한다. · 교사는 학습 환경을 정리하고 관리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표 III-4-11 계속)

요소	평가 지표의 예
영유아기관에서 학교로 전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기관에서 학교로 진급할 때 아동이 느끼는 소속감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전이의 실체는 마오리족과 다른 아동의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소속감을 키워준다. · 교사는 진급 시 안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 간의 우정에 관심을 가진다. · 성공적인 진급은 가족, 기관, 학교 간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다.

자료: ERO(2013). HE FOU TATAKI의 pp.37-39 내용을 번역하였음.

마. 소결

기관 대상 평가 영역 및 내용은 국가에 따라 내용 자체나 수준이 다양하였다. 평가자가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진술방식이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주된 평가 내용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해당 시설이 다양한 영유아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는지, 둘째, 영유아의 웰빙에 기여하는 정도, 셋째, 리더십과 관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의 질을 평가하였다. 영유아의 성과로 표현되는 학습이나 발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평가를 위해서 영유아의 다양한 요구, 웰빙, 리더십, 효율적 관리가 주요 평가 개념이었다. 영유아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평가에서 요구하는 것이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유치원 점검에 대한 사항을 각 지자체의 자율에 두고 있어 중앙에서 하달하는 점검 체계 및 지표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유치원법과 기본 계획을 통해 유치원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가르쳐야 하는 교육과정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유치원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즉, 평가 내용으로 다른 기준이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관련 법이나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가 평가내용이 된다. 지자체에서 평가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마다 같은 평가내용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 노르웨이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는 각 지자체의 계획에 따른 평가내용이 이해가 되지만, 최근 노르웨이에서도 교육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개념 또한 노르

웨이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평가내용과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본다.

〈표 III-4-12〉 기관대상 평가내용 국제비교

국가	평가내용	특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이 다양한 영유아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는 정도 - 영유아의 웰빙에 기여하는 정도 - 리더십과 관리의 효율성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성장이나 발달을 확인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고자 함.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서 하달하는 점검 체계 및 지표 없음. - 유치원법과 교육과정 관련 계획을 준수하는 여부를 평가함. - 지자체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의 자유놀이를 중심에 둠. - 최근 교육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의 모습 또한 노르웨이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영역(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유아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교직원 배치, 유아들과의 관계,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리더십과 기관 운영)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영역별로 등급이 매겨지며 전체 등급이 매겨짐. - 평가내용에 대한 등급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과 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정, 교수·학습 측면을 평가함. - 연결요소인 부모나 가족과의 파트너십과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기여요소에는 공통된 주제끼리 지표를 그룹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는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평가내용에서 다양한 기관 및 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도를 강조함.

호주의 평가는 포괄적 영역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평가인증 지표와 가장 유사한 형태였다. 최근에 교사 자격을 강화하거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개선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관 대상 평가를 위해서도 교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교직원 중 교사에 대한 기준 강화를 통해 질 제고를 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평가결과에서 ‘국가 질 기준 초과’ 이상을 받은 기관은 ‘최우수’에 지원할 수 있다. 최우수를 받은 기관에게 공적인 인센티브(홍보, 컨퍼런스 초청 등)가 제공이 되지만 기관에 부담을 지우거나 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뉴질랜드의 평가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운영과 관리, 역량 강화, 교육 과정, 교수·학습 측면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측은 연결요소와 기여요소로 엮여져 있는데 연결요소인 부모나 가족과의 파트너십과 자체평가를 통한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기여요소에서는 지표를 공통된 주제로 묶은 것이다. 뉴질랜드 평가내용에서 눈여겨 볼 것은 유아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서도 확인되었던 평가내용인데 유아의 다양한 요구나 상황을 단순히 존중하거나 고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평가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마오리족이나 태평양 영유아를 여러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이 효과적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자원(resource)’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지표 자체가 모두 필수사항이 아니었으며 기관의 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로 이해하였다.

5. 기관 평가 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가. 영국³³⁾

영국은 기관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 및 대중에게 공개하고 교육표준청에 권한이 있는 인가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점검 이후 기관의 질적 수준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일시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Ofsted, 2014c).

점검이 끝난 후 결과 보고서는 10일(평일 기준) 이내 해당 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과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각 영역별 점수와 함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점검에 대한 개요와 점검자 실명이 제공되며 시설에 대한 정보와 개선점이 제시된다. 또한 각 영역별 점수 부여 근거가 제시되는데 이는 잘못된 점에 대한 단순 지적에서 나아가 실례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기 위한 시정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갈

33) Ofsted 홈페이지(www.ofsted.gov.uk), Ofsted(2013). Evaluation schedule for inspections of registered early years provision, Ofsted(2014c). Conducting early years inspection, Ofsted(2014f). The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and inspection of provision on the Early Years Register을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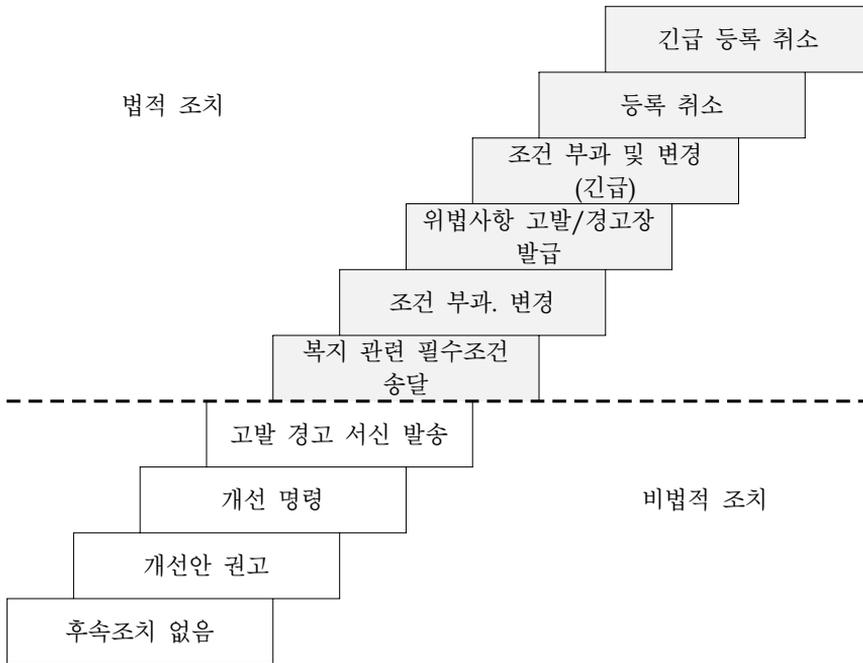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점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부모의 기관 이용 선택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개되는 결과보고서는 시설에 제공되는 결과 보고서와 동일하며, 점검결과는 교육표준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이름이나 주소, 또는 기관 고유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지역별 또는 자택(우편번호)에서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검색된 여러 개의 시설 목록을 보고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열람도 가능하다. 공개 양식은 기관에 제공되는 점검 결과지와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며, 기관 이름 또는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영국 교육표준청은 각 시설별 정보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 가장 우수한 수준인 '매우 뛰어나(outstanding)'를 받은 시설의 목록을 따로 공개하고 있다.

교육표준청은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영유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학대받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데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점검결과 보고서 사본은 해당 지방정부에도 송부된다(Ofsted, 2014c). 그러나 교육표준청에서 점검 이후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외에 점검 과정에서 수집한 기타 정보는 지방정부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저 등급인 '부적절'로 평가된 시설과 등록 유예 및 취소,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지방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부적절' 결과는 해당 시설이 아동의 보호와 학습에 대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이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때 부여되며 '부적절' 등급을 받은 시설은 교육표준청으로부터 최소 3개월동안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위한 방문이 이루어지며 매 방문시마다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된다. 또한 시정 통보를 받고도 해당 기관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 교육표준청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이 이루어진다. 만약 재점검 결과 역시 '부적절'로 판명나는 경우 교육표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Ofsted, 2014a).

한편 등록 취소 등 법적 조치를 결정하거나 아동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 등록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사안이 심각할 때에 조사관은 '준법감시, 조사, 집행팀(Complianc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team: CIE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III-5-1 참조).



자료: Ofsted(2014g). The legal basis of our work and our options for ensuring compliance: childminding, childcare and children’s social care. p.5.

[그림 III-5-1] 영국 교육표준청 CIE 관련 조치 단계

점검 결과 3등급인 ‘개선이 요구됨’은 아동의 학습과 발달 또는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유아기초단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아동의 발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선이 요구됨’ 등급을 받은 시설은 보통 12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게 되는데 두 번의 점검에서 연달아 ‘개선이 요구됨’을 받고 세 번째 점검에서 2등급인 ‘우수함’을 받지 못할 시에는 ‘부적절’ 등급을 받은 것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Ofsted, 2014a).

또한 평가결과가 아동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취약하다고 판단될 때 5일에서 30일 이내에 특별점검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된다(Ofsted, 2014g).

교육법에 의한 학교 점검을 받는 경우 역시 유사하다. 학교평가는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평가 일정이 정해져 최대 5년을 주기로 갖지만 유아

학교의 경우는 최대 3년을 넘지 않는다. 이는 영유아기에 대한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고, 유아기는 외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Ofsted, 2014e). 학교평가가 갖는 차이점은 점검이 끝난 후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점검이 끝난 후 보통 10일 이내(부적절 판단시 28일 이내) 작성된 결과 보고서에 대해 하루 이내의 확인 기간을 거치고, 점검 결과 보고서가 지방정부와 이사장 등 운영진에 보고되며, 학교는 결과 보고서를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Ofsted, 2014e).

나. 노르웨이³⁴⁾

노르웨이 주지사 또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지역 내 유치원, 부모, 해당 거주민,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사립유치원 연합회, 노르웨이학생단체, 음부즈맨 등 각종 정책결정 관계자들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결과 공개는 점검의 적법성을 알릴뿐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Tvinnereim, 201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유치원 대상 점검이 이루어진 후에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 아동과 부모의 참여, 교직원 자격 및 의무 등에 대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시정 명령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며,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며 이는 유치원법 제16섹션에 각 지자체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폐쇄조치는 영구 폐쇄와 임시 폐쇄 모두 가능하며, 영유아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급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시한 없이 임시 폐쇄 조치가 바로 가능하다. 그러나 폐쇄의 경우 교직원뿐만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히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지원금을 배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PWC(2010)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취하는 조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1%의

34)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7). Tilsyn med barneher, PWC(2010). Tilsyn til besvær?, 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2014, in press). Inspection Methodology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가 점검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59%는 개별적으로 시정 또는 폐쇄 조치를 내린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조사 후에 감독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조건의 개정을 위한 마감일을 설정하고, 불이행시의 결과에 대해서 유치원에게 알리고, 개정 순서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유치원에 요청한다. 지자체의 절반은 지자체장이 감독 보고서를 승인하고 개정을 지시한 후에 유치원과 상담 회의를 하게 한다(표 III-5-1 참조).

〈표 III-5-1〉 점검 결과 사후관리 절차

단위: %

구분	비율
점검 보고서 작성	81
개별적으로 시정 또는 폐쇄 명령	59
점검보고서 작성 및 행정 책임자 수준에서 진행	49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정책위원회와 논의	28
점검 이후 개선 관련 의사소통 진행	40
시한과 함께 시정권고 및 불이행시 절차 설명	72
유치원별 시정사항 결과 보고	72

자료: PWC(2010). Tilsyn til besvær? p.27.

실제 지난 2년 간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30%의 지자체가 어떤 개정도 지시하지 않았고, 40%는 1-5개, 10%는 6-10개의 개정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 조치는 더욱 흔하지 않아서, 지자체의 80%는 어떤 폐쇄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3%가 한 차례 폐쇄 결정을 내렸고, 2회 이상 폐쇄 조치를 취한 곳은 한 곳도 없다.

〈표 III-5-2〉 2008/9 ~ 2009/10 시정명령 수

단위: %(개)

구분	비율
0	30
1-5	42
6-10	10
11-20	3
21-50	2
50+	1
잘 모름/무응답	12
계	100.0(293)

자료: PWC(2010). Tilsyn til besvær? p.27.

다. 호주³⁵⁾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7개 영역별 등급과 종합평가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 등급은 ‘최우수 등급, 국가 질 기준 이상, 국가 질 기준 충족, 국가 질 기준을 향해 노력해야 함, 상당한 개선을 요함’의 다섯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종합 등급이 결정된다(ACECQA, 2013).

〈표 III-5-3〉 호주 기관의 평가결과 종합 등급의 결정 기준

등급	종합 등급의 결정 기준
최우수	최우수 등급은 ACECQA에서 부여 국가적 질 기준 이상 등급 받은 시설 대상 신청에 의해 인증
국가적 질 기준 이상	최소한 다음의 두 영역을 포함하여 최소 4개 질 영역에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고 ‘국가적 질 기준 이상’ 등급을 받음 -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 유아와의 관계 -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 리더십과 기관 운영 유아원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질 영역 1(교육 프로그램과 실제)에서 ‘국가적 질 기준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음 - 프리스쿨 (유아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 다른 승인 받은 기관과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문서화된 협약을 맺고 이를 부모들에게 공지할 경우
국가적 질 기준 충족	최소한 ‘국가적 질 기준 충족’ 등급을 각 질 영역에서 받음. 한 개 이상의 질 영역에서 ‘국가적 질 기준 이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국가적 질 기준 이상’ 등급의 요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함
국가적 질 기준을 향해 노력	한 개 이상의 질 영역에서 ‘국가적 질 기준을 향해 노력’ 등급을 받음 (‘상당한 개선 필요’ 등급은 받지 않음)
상당한 개선 요함	한 개 이상의 질 영역에서 ‘상당한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음

자료: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pp.13-14.

호주 평가 수준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 III-5-4>에 제시되어 있다.

35)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홈페이지(<http://www.acecqa.gov.au>), ACECQA(2014) Guide to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nd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ACECQA(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III-5-4〉 호주 평가 수준

과제	평가 수준		
	상당한 개선 필요	국가지적 질 기준 충족	국가지적 질 기준 이상
1. 각 요소를 '충족' 또는 '미충족' 그리고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기	<p>상당한 개선 필요' 평가는 품질 영역에서 주어진다. (아래 참고).</p>	<p>국가지적 질 기준 충족</p> <p>각 요소를 '충족' 또는 '미충족'으로 평가하고 관련 규정의 준수를 판단하기</p>	<p>국가지적 질 기준 이상</p>
2. 각 기준을 평가하기	<p>'상당한 개선 필요' 평가는 품질 영역에서 주어진다. (아래 참고)</p>	<p>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소 혹은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국가 품질 기준을 향해 노력'을 적용하기</p> <p>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그 품질 영역을 위한 관련 규정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중요한 개선 필요'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국가 품질 기준을 향해 노력' 평가가 품질 부문에 부여될 수 있다. (규칙 60(1))</p>	<p>모든 요소와 관련 규정이 충족되었을 때 '국가 품질 기준 초과'를 적용하기. 기관은 기준을 초과한다.</p> <p>모든 요소와 관련 규정이 충족되었을 때 '국가 품질 기준 초과'를 적용하기. 기관은 기준을 초과한다.</p>
3. 각 품질 영역을 평가하기	<p>교육·보육 서비스가 기관에서 교육받고 돌보아지는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에 대한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 있을 때, 그 품질 영역이나 품질 관련 규정을 규제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중요한 개선 필요' 평가가 국가 품질 부문에 부여될 수 있다(규칙 59(1))</p>	<p>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그 품질 영역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국가 품질 기준 초과' 평가가 국가 품질 부문에 부여될 수 있다 (규칙 61(1))</p>	<p>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그 품질 영역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고 품질 영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아래 '국가 품질 기준 초과' 평가가 국가 품질 부문에 부여될 수 있다 (규칙 62(1))</p>

(표 III-5-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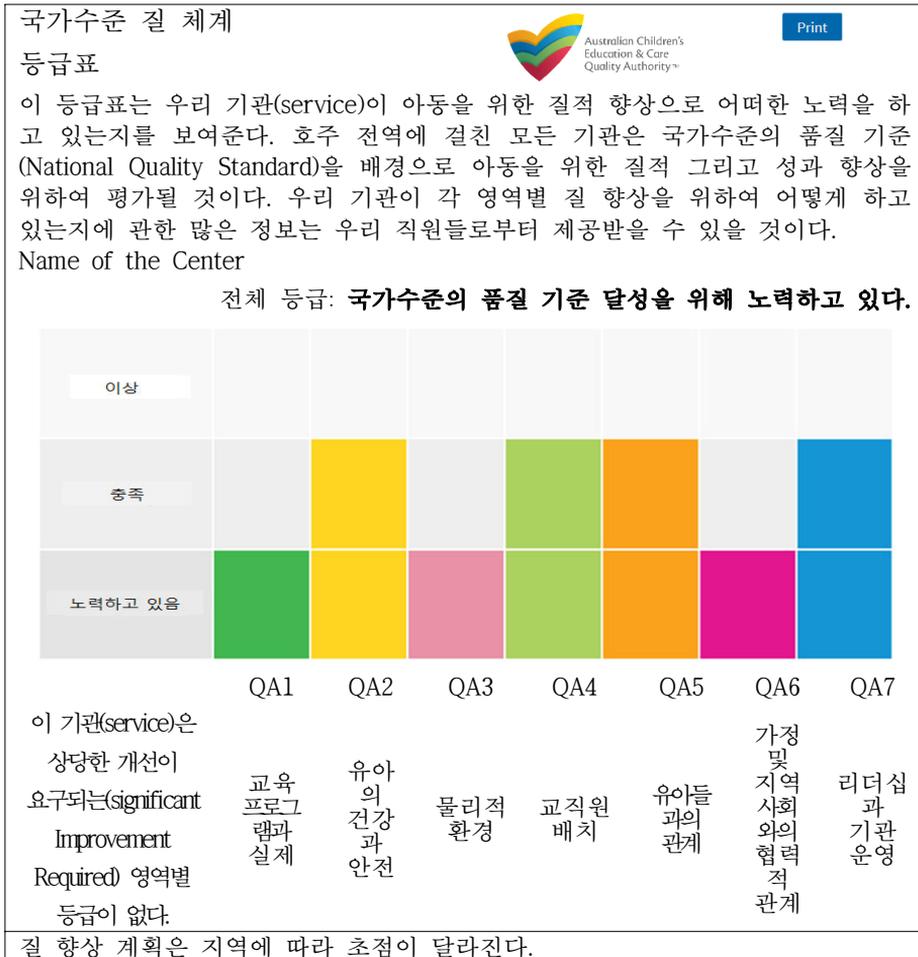
		평가 수준	
과제	상당한 개선 필요	국가적 질 기준 충족 노력	국가적 질 기준 충족
3. 각 품질 영역을 평가하기			<p>국가적 질 기준 이상</p> <p>기준: 만약 기관이 유치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거나,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또 다른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승인된 제공자와 함께 문서화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준비를 학부모 들에게 알리는 경우, 국가 품질 표준 충족/ 평가는 학교 1학년 이전 2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을 교육하고 돌 보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위한 국 가 품질 표준의 교육 프로그램과 실 천 품질 영역에만 부여될 수 있다(규 칙 62(2)).</p> <p>기준2: 품질 영역의 모든 기준들이 적어도 전국 품질 기준에 속하고 품 질 영역에서 적어도 두 개가 '국가품 질 표준 초과'에 평가될 경우 '국가 품질 표준 초과' 평가가 국가 품질 표준에 명시된 품질 영역에 대 해 부여 될 수 있다.</p>

(표 III-5-4 계속)

과제	평가 수준		
	상당한 개선 필요	국가적 질 기준을 향해 노력	국가적 질 기준 충족
4. 전체적 평가를 판단하기	<p>국가 품질 표준에 명시된 어떤 품질 영역에서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상당한 개선 필요' 평가를 가지고 있다</p> <p>면, 기관의 전체적 평가는 '상당한 개선 필요'가 된다 (규칙 59(2)).</p>	<p>국가 품질 표준에 명시된 어떤 품질 영역에서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전국 품질 기준을 향해 노력'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품질 영역에도 '중요한 개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기관의 전체적 평가는 '전국 품질 기준을 향해 노력'이 된다 (규칙 60(2)).</p>	<p>국가 품질 표준에 명시된 어떤 품질 영역에서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전국 품질 기준 충족' 평가를 가지고 있다.</p> <p>국가 품질 표준에 명시된 모든 품질 영역에서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전국 품질 기준 충족' 평가를 가지고 있다.</p> <p>국가 품질 표준에 명시된 모든 품질 영역에서 4개 혹은 그 이상의 '전국 품질 기준 충족'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두 개가 교육 및 보육 서비스가 교육 프로그램과 실천, 아동들과의 관계, 가족 및 커뮤니티와의 협력 적 파트너십, 리더십과 서비스 운영의 영역에 해당한다.</p> <p>국가 품질 표준에 명시된 여타 각각의 품질 영역에서 국가 품질 충족을 가지고 있다 (규칙 62(3)).</p>

자료: ACECQA(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 pp.14-15.

‘국가 질 기준 초과’ 이상을 받은 기관은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 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최우수(Excellent rating)”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지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현장관찰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호주 당국으로부터 일정 기간의 심사를 받게 된다. 최우수를 받은 기관은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미디어, 웹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기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기관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나 기타 이벤트에 초청된다.



자료: <http://www.acecqa.gov.au/national-registers>에서 인출 (2014. 10. 10).

[그림 III-5-2] 호주 기관평가 결과 자료 공개 자료 예시 1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부모가 양질의 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각 기관은 자신의 평가등급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ACECQA)과 우리 아이(MyChild)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아래 그림은 우리아이 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의 예시로 지역을 검색하면 인근에 있는 유형별 유아교육, 보육시설의 목록이 나오고, 목록에서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 현황에 관한 정보, 결원 정보 등과 더불어 각 영역별 평가 등급 및 전체 등급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기관별 평가 점수를 검색할 수 있다.

Name of the Center

Address

Fax:

Email:

유치원 프로그램은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교육을 시작하기 전 1, 2년의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교사에 의해 제공된다. 그리고 school sites(학교 부지), private preschool centres(사립 유치원 센터), long day care centres(장시간 보육 센터) 또는 local community venues(지역사회 내의 장소)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정부 재정 지원의 가격 여부에 관해서는 유치원 제공 기관에게 다시 확인하십시오.

유치원 정보(질을 포함하는)에 따르면 주와 지역 규정 위원회 그리고 호주 유아 교육·보육 질 위원회에서 제공한다.

질 (Quality)
서비스의 질 (Quality of service)

국가수준 질 체계에 의한 서비스(기관)는 국가수준 품질 기준과 국가수준 교육·보육 서비스 규정의 7개 질 평가 영역으로 평가되어 등급 매겨진다. 평가와 등급 과정의 목적은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서비스(기관)의 전체 등급은 각 질 평가 영역의 성취율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각 주와 지역 규정 위원회는 평가 및 등급 과정의 책임을 맡게 된다.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 위원회인 ACECQA는 호주 전역의 평가와 등급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각 부문과 지역사회 내에서 평가 및 등급 과정과 관련된 훌륭한 등급과 창조적 인식을 위한 평가 서비스).

Quality Areas and Ratings

Quality Area	Rating
1 Educational program and practice 1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Meet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수준의 질 기준을 충족 한다
2 Children's health and safety 2 유아의 건강과 안전	Meet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수준의 질 기준을 충족 한다
3 Physical environment 3 물리적 환경	Meet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수준의 질 기준을 충족 한다
4 Staffing arrangements 4 교직원 배치	Meet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수준의 질 기준을 충족 한다
5 Relationships with children 5 유아들과의 관계	Exceed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수준의 질 기준 이상이다
6 Collaborative partnerships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6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Working towards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수준의 질 기준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7 Leadership and service management 7 리더십과 기관 운영	Working towards National Quality Standard 국가수준의 질 기준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Overall Rating: Working towards National Quality Standard 전체 등급: 국가수준의 질 기준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14). mychild.gov.au에서 인출(2014. 9. 12).

[그림 III-5-3] 호주 기관평가 결과 자료 공개 자료 예시 2

호주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기관이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육 지원금(Child Care Benefit)과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이라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 뉴질랜드³⁶⁾

뉴질랜드에서 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 기관 평가 시기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개입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다음 기관 평가 시기가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는 질 높은 기관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며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결과는 4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장려하는 데 아주 좋은 기관(very well placed)인 경우 4년 내, 좋은 기관(well placed)이라고 평가되었을 때 3년 내,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requires further development) 평가되었을 때 2년 내, 그리고 부적합한 기관으로(not well placed) 평가되었을 때는 교육부와 협의하게 된다. 보통 시정사항을 기관에 요구하여 시정하게끔 하고, 이러한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기관을 폐쇄할 수 있으나 거의 보기 힘든 사례다. <표 III-5-5>는 평가시기별로 기관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ERO, 2014).

〈표 III-5-5〉 뉴질랜드의 기관 평가시기별 기관의 상황

평가시기	기관의 상황
4년 뒤 ERO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서 매우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얻음. - ERO는 해당 기관이 일관되게 아동의 웰빙과 학습을 도모한다면 4년 뒤 점검할 예정임. - 기관 평가 틀(Ngā Pou Here)의 평가지표에 관련하여 높은 질을 확인할 수 있음.
3년 뒤 ERO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서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얻음. - ERO는 해당 기관이 아동의 웰빙을 도모하고 학습 증진에 효과적으로 노력한다면 3년 뒤에 점검할 예정임. - 기관 평가 틀과 관련하여 좋은 질을 확인할 수 있음.
2년 뒤 ERO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서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얻기 위해 심도 있는 발달이 필요함. - 이 옵션은 아동의 긍정적 영향을 위해 노력하나 실증적이지 않거나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ERO는 해당 기관에 지원함으로써 향상할 수 있도록 협조함.
교육부와의 상의 뒤 이루어지는 ERO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서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거의 얻지 못함. - 이 옵션은 기관이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법적 기준에 맞추지 못했고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는 향상하기 어려운 역량을 지님. - ERO는 해당 기관이 법적 기준을 맞추어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을 때까지 점검하지 않음.

자료: ERO(2013). HE POU TATAKI의 p.47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하였음.

36) ERO(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ERO(2014). ERO webiste(www.ero.govt.nz) 내용을 참고로 구성하였음.

기관의 평가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한다. 공유하는 자료는 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기관의 유형, 운영시간, 지역, 아동 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관의 철학 등)가 제시되며 전반적인 평가결과가 서술식으로 제시된다.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부모가 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 공무원도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다. 평가결과 공개 양식 및 내용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 <표 III-5-6>과 같다.

<표 III-5-6> 뉴질랜드 기관 평가결과 공개 양식 및 내용

G 기관에 대한 평가
 G 기관은 아동의 긍정적 학습을 장려하는 데 있어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가?
 전반적인 평가를 지지하는 ERO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좋지 않은 기관임	더 노력이 필요한 기관임	좋은 기관임	아주 좋은 기관임
--------------	------------------	--------	--------------

배경
 G early childhood centre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30am-5:30pm 까지 운영한다. 6개월부터 학령기까지 3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나 현재 34명 중에서 마오리족은 6명이며 태평양 아동을 7명이다.

리뷰 결과
 아동은 아동이 중심이 되고 놀이가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습하고 있다. 기관의 중요 철학이 실제에서 나타났다.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도 드러났다. 교사의 상호 작용은 따뜻하고, 아동을 돌보아주는 것이었으며 민감하였다...(생략)
 아동은 독립성이 증진되고 촉진되는 장소에서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동은 창의적이고 상상적인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생략)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며 잘 이해하고 있다. 교사는 놀이를 지속시키고 도전하도록 효과적으로 여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기관은 문화를 포괄하고 있다. 마오리족은 프로그램에 잘 통합되어 있으며 평가에도 포함되어 있다...(생략)

주요 다음 단계
 ERO와 교사는 아동 학습에 대한 교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계속적으로 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법적 요구에 맞춘 관리 보장
 리뷰전에, 본 기관의 교사와 관리자는 기관보장진술서와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을 완료하였다...(생략)
 리뷰하는 동안, ERO는 아동의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영역들을 관리하는 서비스의 시스템을 확인하였다.
 · 감정적인 안전, 물리적인 안전, 적절한 교사 배치, 불이나 지진에 대비한 대피 과정 및 연습

다음 ERO 리뷰
 본 기관에 대한 다음 리뷰는 3년 내에 이루어 것이다.

자료: [http://ero.govt.nz/Early-Childhood-School-Reports\(2014. 10. 4\)](http://ero.govt.nz/Early-Childhood-School-Reports(2014. 10. 4))에서 뉴질랜드 childcare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번역 및 재구성하였음.

처음에 기관의 전반적 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이 후에는 평가결과를 지지할 수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기관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된다. 기관의 배경 관련 내용은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구조적 질을 평가한 내용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등록된 아동의 수가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이전 평가에서 확인되었던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은 평가 결과(review finding)가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의 철학이 실제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동, 교사, 관리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기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어떠한지, 초등학교와의 연계는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기관에서 자체평가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 여러 측면에서 기관평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평가결과를 제시할 때 아동의 놀이나 긍정적인 학습에 대한 강조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는 기관이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을 때 교육부가 직접 개입을 한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법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거나 교육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판단될 때이다.

교육평가청은 교육부가 기관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만족하기 전까지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 대신 교육부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무엇이 보다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가 개입을 한 후에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바뀔 수 있으며 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다(ERO, 2014).

마. 소결

기관대상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관이나 개인 교사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결과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영국은 기관 평가내용을 지방정부 및 대중에게 공개하여 부모의 기관 이용 선택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인가와도 연계하였다.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송부한다. 평가결과 '부적절' 등급을 받은 기관은 시설은 교육표준청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매 모니터링 방문시마다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된다. 또한 시정 통보를 받고도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 교육표준청은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이 이루어진다. 만약 재점검 결과 역시 '부적절'로 나타나는 경우 교육표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표 III-5-7〉 기관대상 평가결과 활용 국제비교

국가	평가결과 활용	특징
영국	- 지방정부 및 대중에게 공개 - '부적절'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재	-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함.
노르웨이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결과 공개함. - 일부지역에서 재정과 연계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결과를 공개하며 결과공개시 공무원이 배석함.
호주	- 각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 기관평가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함.	- 부모에게 많은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부모가 결과를 찾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음. - 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연계되어 있어 사실상 질이 낮은 기관을 퇴출할 수 있음.
뉴질랜드	- 기관평가결과는 다음 평가시기를 결정하여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함. - 평가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함.	-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시기를 결정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을 절약함.

노르웨이에서는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지역 내 유치원, 부모, 해당 거주민,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사립유치원 연합회, 노르웨이학생단체, 옴부즈맨 등 각종 정책결정 관계자들에게 공개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재정 지원과 연계하기도 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는 기관을 임시적으로 영구 폐쇄할 수 있으나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숙고한다.

호주에서는 각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 기관평가 자료를 모두 부모에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이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육 지원금(Child Care Benefit)과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이라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 기관 평가시기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개입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다음 기관 평가 시기가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는 질 높은 기관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며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6. 기관 대상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공정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기관 대상 평가자의 자격조건이나 평가자의 질 관리 현황에 대해서 국제비교 하였다.

가. 영국³⁷⁾

영국 영유아 기관 점검의 왕실 책임조사관(Her Majesty's Chief Inspector; 이하 HMCI)과 왕실 조사관(Her Majesty's Inspector; 이하 HMI)은 영국 왕실과의 회의에서 임명하여 교육표준청에 소속된다. 이들은 점검과 함께 인가 업무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조사관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점검에 활용되는 지표나 결과 보고서 제시 방식 등도 영국 기관 대상 점검 조사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표준청에서 제시하는 조사관의 역할에서도 조사관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고, 영유아 연령, 발달 단계, 이용 시간 등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항상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의 과거, 현재, 미래 계획을 고려하고 '큰 그림(bigger picture)' 안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중히 관찰하고 결정 근거를 수집해야 하지만, 동시에 "훌륭한 조사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감을 활용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을 만큼(Ofsted, 2013: Conducting priority and brought forward inspections following risk assessment, p.4)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영국 기관 점검을 담당하는 조사관에는 왕실조사관과 영유아 기관만을 담당하는 영유아 평가자(Early Years Inspector)가 있다. 왕실조사관은 교육표준청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영유아 평가자는 위탁 업체(Inspection Service Providers)에서 관리하며 고용된 형태 또는 프리랜서 형태가 있다.

왕실조사관은 사회적 돌봄, 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세 분야로 나뉘어 진다. 유아학교는 교육 분야에 속하며 유아학교, 초·중등학교 등의 학교점검을 담당하며, 이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학령기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학사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교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기본적 자격 요건 외에 교육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대표자 경력과 교육현장 및 정책과 관련

37)Ofsted(2014d). Inspecting early years providers: Training for newly recruited early childhood inspectors (내부자료)와 Ofsted 홈페이지(www.ofsted.gov.uk)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된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해당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가설설정 및 문제제기, 학습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상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교육표준청의 가치에 맞고, 정확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파트너십 등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결과 보고,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왕실조사관 선발은 자격 조건 확인 및 두 번에 걸친 측정 및 인터뷰를 통해 선발한다(그림 III-6-1 참조).



자료: Ofsted(n.d.) Recruitment process <http://www.ofstedhmi.co.uk/process> 에서 인출(2014. 9. 13).

[그림 III-6-1] HMI 선발절차

영유아 평가자 자격 역시 왕실조사관 선발 자격과 유사하다. 위탁업체 회사 중 한 회사(Tribal)의 영유아 서비스 조사관 선발 조건을 보면, 학사 학위와 영유아교육 분야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고, 영유아기초단계 교육과정(EYFS) 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유아교육 및 보육, 경영, 자문, 점검 관련 업무 경력, 평가 업무 경력 등을 요구한다.

선발된 조사관은 교육표준청에서 주관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친다. 유아 평가자 교육 훈련의 경우 3일 동안 11개 세션에 걸쳐 교육표준청의 역할, 인가 업무와 관련 점검 절차 및 자료 수집, 영역별 점검 기준,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표 III-6-1 참조). 교육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상황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거나 퀴즈 등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표 III-6-1〉 영유아 기관 조사관 교육훈련 내용

교육일	세션(분)	내용
1	1(35)	교육표준청의 역할
	2(90)	Early years settings 인가 개요
	3(45)	Childcare Register 인가를 위한 점검 방법
	4(110)	증거 수집, 기록, 측정
2	5(210)	교사의 교습 질과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측정
	6(120)	교수·학습 질과 아동 복지 평가
	7(50)	개선사항 작성
3	8(150)	리더십과 운영관리 점검
	9(15)	최종 접수 산출 기준
	10(60)	피드백 제공
	11(90)	보고서 작성

자료: Ofsted(2014d). Inspecting early years providers: Training for new early childhood regulatory inspectors. pp.1-2.

점검 시 조사관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협조와 자신감을 기본으로 영유아 분야의 특성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과 관련 규정, 필요조건 및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표준청 규정의 연장선에서 가장 전문적인 수준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 <표 III-6-2>는 교육표준청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관의 점검에 대한 규정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며, 피점검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표 III-6-2〉 교육표준청의 점검 수행에 관한 규정

- 두려움과 편애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
- 프레임워크, 국가 수준의 기준과 요구사항에 연장선에서 평가함.
-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평가함.
-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이 없어야 함.
- 정직하고 명확하게 보고해야 함.
- 진실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존중, 공손함, 민감성을 갖고 서비스 제공자를 대함.
- 피점검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서비스 이용자의 흥미와 웰빙을 최우선시함.
- 피점검자와 단호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판정시에는 명확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함.
- 개인정보와 업무에 대한 보안에 유의함.
- 합리적인 요구에 적합한 대응을 함.
-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함.

자료: Ofsted(2014f). The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and inspection of provision on the Early Years Register. p.18.

나. 노르웨이³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 관련 업무에 배치되는 인력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1명 정도이다. 이 중 유치원법 16조 즉, 점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평균 0.26명으로 산출되어 점검 업무가 약 25% 정도 차지함을 알 수 있다(표 III-6-3 참조).

〈표 III-6-3〉 2009/10 지자체 규모별 유치원 업무 담당자 수

단위: %(명)

구분	5천 미만	5천-2만	2만-5만	5만 초과	전체
전체 유치원 업무 담당자	0.49	1.05	2.18	5.01	1.05
유치원법 제10섹션(인가) 담당자	0.15	0.20	0.38	0.67	0.21
유치원법 제12섹션(유치원 입학 관리)	0.18	0.28	0.55	1.16	0.30
유치원법 제8섹션(지자체의 역할)	0.21	0.33	0.75	1.02	0.35
유치원법 제16조(점검)	0.16	0.24	0.50	1.09	0.26
사례수	(126)	(131)	(26)	(10)	(293)

자료: PWC(2010). Tilsyn til besvær? p.13.

현장점검을 누가 시행하는지도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데 대체로 유아교육 분야 담당 공무원이 시행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보육분야 외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모두 지방자치단체인 것에 따라 점검의 객관성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 지자체와의 교차 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항상 17%, 가끔 1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4〉 현장점검 담당자

단위: %

구분	항상	가끔	절대아님	모름	무응답
유아교육보육 분야 공무원	66	5	17	2	10
공립유치원 직원	6	9	62	1	22
보육분야 외 공무원	43	16	27	2	12
타 지자체 직원	17	10	55	1	17
기타	2	10	54	5	28

자료: PWC(2010). Tilsyn til besvær? p.17.

유치원 점검은 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바

38) PWC(2010). Tilsyn til besvær?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유치원 교육내용과 질에 대한 점검을 위해 유치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유치원 점검에 활용되는 전문 인력의 예로는 교사, 변호사, 회계사, 간호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전문인력을 유치원 점검에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7).

현장조사는 주로 유아교육 전공자가 담당하며, 그 밖에 교사훈련을 받은 사람과 경영 및 행정 훈련을 받은 사람 또한 참여할 수 있다. 법률적 지식은 현장조사를 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통과 여부 결정시 필요로 하기도 한다. <표 III-6-5>는 각 지자체별 유치원 업무 담당자 현황으로 약 67%의 지자체가 유아교육 전공자를 현장점검 전담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다. 비상근으로 필요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를 함께 고려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 보건 관련 인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있다.

<표 III-6-5> 지자체별 유치원 현장점검 담당자 전공 현황

구분	현장점검 전담	현장점검 비상근
유아교육 학사	67	7
유아교육 석사 이상	10	7
기타 교사교육	30	15
재정, 행정, 경영	24	23
법	2	6
공학 및 기술교육	2	29
보건	4	30
사회학	4	3
기타 교육	5	8

주: 잘 모름/비해당이 전체 백분율에 포함됨.
 자료: PWC(2010). Tilsyn til besvær? p.14.

유치원 현장점검은 최소 2인 이상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보다 객관적인 점검 수행을 위해서이며 당국의 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PWC, 2010).

점검 이후 시정 명령 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사회, 정책위원회, 최고 책임자 등이 결정에 관여한다. 어느 기구 혹은 어느 부서에서 이를 결정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진행되는데 자세한 현황은 <표 III-6-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I-6-6〉 점검 후 행정처분 등의 결정 권한

단위: %

구분	시의회	정책 위원회	행정 책임자	중간 관리자	행정관
다른 위원회 등과 공동 결정	10	8	55	32	13
단독으로 의사결정	3	6	39	24	6

자료: PWC(2010). Tilsyn til besvær? p.16.

다. 호주³⁹⁾

NQS의 핵심적 요소는 모든 주와 영토에서 국가법(National Law)에 의거해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자(authorised officers)를 도입한 것이다. 평가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에 명시되어 있다. 예전의 체계에서 국가 기관은 점검자(validator)를 고용한 반면 주와 영토에서는 인가와 감사 담당자를 활용했었다. 평가자는 주와 영토의 규제 기관에 고용되어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인가신청을 평가하고, 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사고와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에는 평가자(authorised officers)로 명시되어 있지만 역할과 규제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법에 따라 평가자는 규제기관을 대신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의 225(1)(o)조와 195(5)조에 따르면 평가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 위원회의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평가자 자격에 대한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주와 영토의 규제 기관들 또한 지역의 제도를 고려한 평가자 관련 고유 기준을 가지게 된다. 이는 평가자의 최소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을 목표로 평가자 자격요건 상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평가자 자격에 대한 ACECQA 위원회의 입장> 2011년 12월 22일

교육·보육서비스 국가법 2010에서 평가자는 규제 기관에 의해 법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 규제 기관은 국가 기관이 정한 자격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39)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 홈페이지(<http://www.acecqa.gov.au>), ACECQA(2014) Guide to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 and 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ACECQA(2013).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ACECQA 위원회는 교육·보육서비스 국가법 2010의 225(1)(o)조와 195(5)조에 명시된 규제기관 평가자 자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1) 다음 사항들이 제시됨

- a.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질 의제 협력 협약과 국가법에 근거하여 교육과 보육시설 유아들의 양질의 성과 강화와 기관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을 추구함
- b. 규제 기관은 유아원(preschool), 전일제 보육,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 유형을 규제함
- c. 자격요건은 능력, 속성, 경험, 교육 자격 등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됨
- d. 2012년 1월 NQF의 도입으로 여러 지역의 규제 기관에 있던 기존의 직원들은 다양한 기술, 경험, 교육 자격을 갖게 됨
- e. 국가법에 따라 평가자의 역할은 국가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사고와 민원 사항을 조사하고, 규정준수 조치를 취하며,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며, 인가를 처리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함
- f. 평가자는 반드시 기관의 질 평가나 등급 부여를 하거나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중요함
- g.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가자는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양한 기술, 경험, 교육 자격을 갖추어야 함
- h. NQF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 기관은 더욱 전문적이고 숙련된 인력을 길러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자격 요건에 대한 것을 포함함
- i. 평가자 훈련에 있어서의 국가적 일관성의 중요성, 평가자 훈련의 지속가능한 전략 개발의 필요성, 평가자 훈련이 인증 과정이 되고 추후에 교육 자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 j. 평가자가 평가와 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교육 자격 그 자체만으로는 평가자가 정확하게 현 교육 실체를 관찰하고 NQS에 비추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음
- k. 부분적으로는 연방, 주 영토 정부가 NQF의 시행을 돕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10 전국 유아교육과 보육인력 인구조사의 유아교육 자격의 정의는 유아교사, 초등교사, 그 밖의 교사, 보육, 간호, 그 밖의 복지 연구, 행동과학과 그 외의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자격을 포함함
- l. NQF하의 폭넓은 인력 자격과 마찬가지로 평가자 자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
- m. 평가자 자격은 ACECQA 위원회에서 2014년에 재검토되어야 함

2) 다음의 사항들이 결정됨

- a. 유아교육/보육 자격의 정의는 2010 전국 유아교육과 보육인력 인구조사에 제시된 것을 적용함 (위의 1(k) 참고)
- b. 평가자의 핵심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평가와 감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훈련
 - 국가법, 규정과 NQS를 포함하여 NQF에 대한 적절한 훈련
 - 평가와 감독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된 자격과 경험
 - o 자격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수준일 수 있음

- 경험의 기간과 유형은 정의되지 않았으나 본인이 평가하고 감독하는 기관 유형에서의 경험이 적절함
 - 기록 관리, 조사, 의사결정,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훈련
 - 자신이 평가하고 감독하는 기관, 기관에 재원 하는 유아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지식, 전문성, 직업관, 진실성, 존중하는 동료관계 능력을 갖추어야 함
 - 평가와 규정 집행 방식에 신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
 - 평가자는 팀의 일원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자는 지속적으로 연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짐
 - 평가자가 기관평가와 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NQS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술, 경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c. 2012년 1월부터 평가자의 최소 자격요건은 그들이 수행하는 평가와 감독 업무와 기술, 경험, 자격에 일관성이 있을 것
- d. 각 지역에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평가자 연수가 시행되었고 평가자의 최소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평가와 등급부여를 담당하는 평가자에게 평가와 등급부여 관련 훈련
 - 국가법과 규정, NQS를 포함해 NQF에 대한 연수
 - 수행하는 평가와 감독 업무에 적합한 기술, 경험, 자격
- e. NQF가 담당하는 기관의 70%가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임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각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평가자가 유아교육과 보육 자격(전문학사 또는 학사 또는 대학원)을 보유하도록 한다.
- f. 평가자 자격은 ACECQA 위원회에서 2014년에 재검토 하여 2020 1월 1일을 목표로 하는 자격요건을 설정할 것이다.
- g. ACECQA는 2014, 2016, 2018년에 걸쳐 각 지역의 평가자 자격요건 상향과 관련한 목표 달성에 대해 감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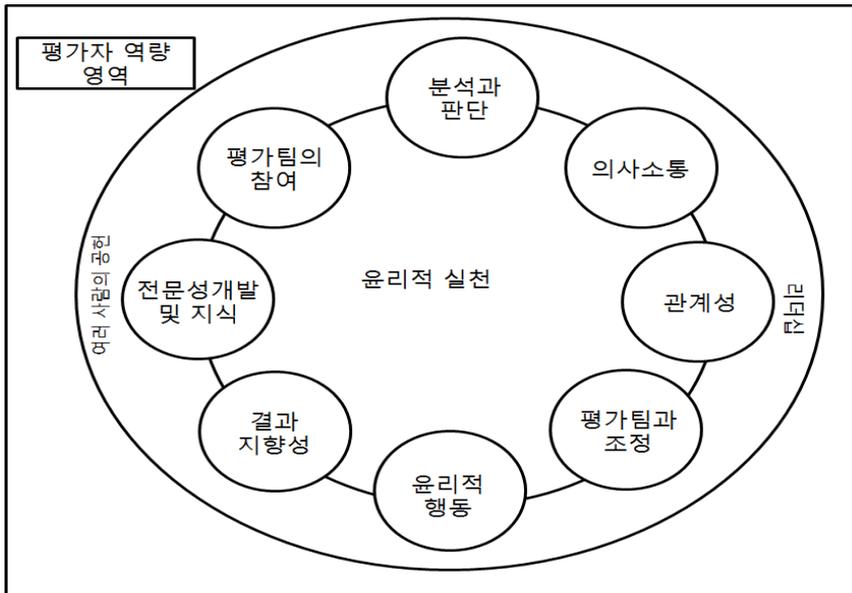
자료: ACECQA(2011). ACECQA board position on authorised officer qualifications.

라. 뉴질랜드40)

뉴질랜드에서는 교육평가청이 모든 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평가하는 기관의 수준이나 형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따라 평가자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다. 즉, 유아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함께 평가하며 유아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자가 꼭 유아교육이나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평가자는 현장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기관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자로 이직을 하고 있다. 평가자가 교육 관련 전공자인 경우라면 기관 대상 평가를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꼭 교육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평가자가 될 수 있다.

40) ERO(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ERO(2007). Expectations of Review Officers 내용을 참고로 구성하였음.

평가자는 1989 교육법 조항 28에 따른 법정 공무원으로 '주(state)의 청렴과 행동에 대한 기준'과 '교육평가청 평가자의 행동방침'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과 이행사항을 따라야 한다. 평가자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책임감과 권력을 가지며 모든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려 깊게 대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교육평가청의 행동방침은 주의 청렴과 행동에 대한 기준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평가자에게 요구되는 4가지 요소는 정담함(fair), 공평함(impartial), 책임감(responsible), 신뢰로움(trustworthy)이다(ERO, 2007).



자료: 뉴질랜드(2014) ERO 내부자료. Review officer competency를 번역함.

[그림 III-6-2] 평가자의 역량 구성

평가자에게 적용되는 ERO 행동방침은 평가자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칙을 보다 명확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평가자가 보다 전문적으로 피평가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신감과 ERO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또한 평가자가 자신의 행동과 진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면서도 평가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자에게 적용되는 행동방침은 평가자의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평가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평가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각 요소는 위

[그림 III-6-2]에 나타나 있다. 평가자의 역량으로 분석과 판단, 의사소통, 관계성, 평가팀과의 조정, 윤리적 행동, 결과지향성, 전문성개발 및 지식, 평가팀에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의 중앙에는 윤리적인 실천이 있으며 리더십과 여러 사람의 공헌이 바탕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 소결

평가에서 평가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개선에 대한 의견 중 평가자 선정, 자격, 관리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영유아 기관 점검의 왕실 책임조사관(Her Majesty's Chief Inspector; 이하 HMCI)과 왕실 조사관(Her Majesty's Inspector; 이하 HMI)은 영국 왕실과 의회에서 임명되며 교육표준청에 소속된다. 이들은 점검과 함께 인가 업무도 함께 담당하여 기관을 폐쇄할 수 있을 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영유아 평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와 영유아교육 분야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고, 영유아기초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유아교육 및 보육, 경영, 자문, 점검 관련 업무 경력, 평가 업무 경력 등이 필요하다. 교육 훈련의 경우 3일 동안 11개 세션의 강의를 거쳐야 한다.

노르웨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 관련 업무에 배치되는 인력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1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력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현장조사는 주로 관련 공무원이나 유아교육 전공자가 담당하며, 그 밖에 교사훈련을 받은 사람과 경영 및 행정 훈련을 받은 사람 또한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유아교육 전공자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정은 찾을 수 없었다.

호주에서는 국가 질적기준(NQS)의 핵심적 요소는 모든 주와 지역에서 국가법(National Law)에 의거해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자(authorised officers)를 도입한 것이다. 평가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에 명시되어 있다. 평가자가 되기 위해서 점점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전공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유아교육·보육기관 대상 평가자가 유아교육·보육전공자일 필요가 없으며 평가자는 모든 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수준의 학교를 평가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특화된 학교수준을 결정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평가자에게 요구되는 행동방침은 정담함(fair), 공평함(impartial), 책임감(responsible), 신뢰로움(trustworthy)이다. 또한, 평가자의 역량으로 분석과 판단, 의사소통, 관계성, 평가팀과의 조정, 윤리적 행동, 결과지향성, 전문성개발 및 지식, 평가팀에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의 중앙에는 윤리적인 실천이 있으며 리더십과 여러 사람의 공헌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있다.

〈표 III-6-7〉 기관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국제비교

국가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특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평가자는 점검과 함께 인가 업무도 함께 담당할 만큼 권위를 지님. - 학사 학위와 영유아교육 분야 자격을 소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교육 분야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 사전 교육이 있음.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아교육관련 전문가가 평가자임. - 특별한 사전교육 및 관리체계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인 평가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평가자의 전문적인 양성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음.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와 지역에서 국가법(National Law)에 의거해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자임. - 평가자가 갖추어야 할 분석, 기술 능력을 중요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 - 평가자로서의 유아교육·보육 전공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에게 요구되는 행동방침이나 역량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음. - 평가자가 갖추어야 할 철학이나 행동강령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보육전공자일 필요가 없으며 일반 평가에 대한 역량이 요구됨.

7. 국가별 소결

본 절에서는 각 국가의 기관 평가 관련 공식적인 문서와 관련자와의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특징을 핵심개념으로 요약하였다. 이러한 핵심개념과 각 국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가. 소통하면서도 엄격성을 중시하는 영국

영국의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는 소통과 엄격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로 기관 평가를 하는 절차에 있어 평가를 하기 전 평가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기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평가의 주책임자는 다른 평가자가 기관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통을 위한 노력은 기관 평가가 진행되기 전, 중간, 후의 모든 과정에서 드러났다.

평가는 근거를 모으는 작업이다. 평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순간 평가자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만약 대화하지 않는다면 기관은 평가자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근거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관찰이 끝나는 때에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평가를 내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고수한다(공무원).

평가자는 평가에 관련된 대화를 ‘전문적인 대화(professional dialogue)’로 부르면서 평가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위에서도 평가자는 기관과 소통하지만 평가결과를 거의 바꾸는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대화의 목적이 평가자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는 평가에 대한 판단(결과)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평가는 평가자가 보고, 기관에서 보여준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여 내린 결과다.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평가자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기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질문의 예는 정반을 배열하거나 물을 붓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혹은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공무원)

영국에서는 평가자와 기관 간에 일어나는 체계적인 소통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소통은 현장에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 기관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소통을 통해 기관평가 결과가 수정될 수도 있지만 결과가 잘 전달되도록 한다는 것이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또 다른 특징은 엄격성으로 평가 절차 전반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었다. 현장 관찰이 시작되기 전 사전 협의회(set-up meeting)를 통해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데 특히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는 특히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만약 평가결과에 불만이 있

는 경우 최소한 다른 평가자 1명이 평가에서 모은 근거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한다. 평가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하기 전에는 1-2명, 때로는 3명의 평가자자 이를 확인하는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의 질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에 대해 불평이 있기 마련인데 이러한 경우 다른 사람이 평가관련 근거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공유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린다. 근거자료는 특정한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한 사람이 자료를 보게 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1-2명, 가끔은 3명이 보고서를 읽게 되는데 질을 보장하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공무원).

영국의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은 소통과 엄격성이었다. 여기에서 소통은 평가자와 현장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엄격성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측면의 엄격성으로 볼 수 있다. 평가절차, 평가내용 선정이나 결과 활용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체계가 잘 짜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기관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평가였다.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여전히 다른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다양화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평가자, 현장, 부모 모두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복잡한 문제였다. 우리나라도 유치원, 어린이집의 기관 평가가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일원화된 평가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전에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관 간의 격차가 좁혀져 일원화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자율성 & 균형성을 중요시 하는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르웨이의 문화·사회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지방분권제는 기관 대상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평가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관한 결정을 모두 시 당국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개념은 '자율성'으로 노르웨이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자율성은 매우 역사적인 개념으로 지방자치제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이며 현재도 논의되고 있다. 법적으로 자율성은 전체적인 개념이다. 기관 대상 평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율성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 민주제도나 지방자치제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지역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이유다(공무원 A).

노르웨이에서 자율성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개념으로 기관대상 평가가 필요하지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내용 등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정부 수준에 속하는 공무원도 각 시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관을 평가하고 난 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되었을 때도 시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깊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시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기관 대상 평가에서 기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공무원과의 면담에서도 자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각 시가 다른 서류나 방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우리는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 당국은 서면평가나 직접방문을 통해 유치원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같은 종류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나 대부분의 county governor는 그들만의 서류나 방식을 이용할 것이다(공무원 A).

하지만 노르웨이에서는 각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지방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기관 대상 평가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실제로 기관 대상 평가가 이루어지는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지방에 따라 문서로 대신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는 횟수도 시 당국이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수에 따라 달라졌다. 지방의 맥락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관 평가를 위한 체계가 확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노르웨이의 공무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어느 정도가 좋은 균형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어느 정도가 좋은 것인지, 얼마나 자세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공무원 C).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율성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지역 자율성의 지역적 아이디어(local idea of local autonomy)를 해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면담에서 알 수 있었다. 이는 기관 평가를 위해 자율성외에도 균형감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에서 자율성을 존중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노르웨이의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는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시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성의 정도에 대한 고

민을 스스로 던지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이러한 모습은 정부 수준에서 평가방법이나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우리의 평가·평가인증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노르웨이는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균형성에 관심을 보이고 기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평가 항목 중에 일부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기는 하나, 평가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협력하고 변화하는 호주

호주의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는 기관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협력과 과정적 접근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호주의 기관평가는 호주 유아교육·보육 질관리국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각 주마다 기관평가를 주관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 간의 차이는 호주 기관 평가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각 지역에서 평가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평가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협력을 잘 보여주는 예시는 관리국에서 실시하는 평가자 대상 중앙연수다. 지역마다 시행하고 있는 평가의 수준이 다르지만 평가자 간의 일관성을 위하여 연수를 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호주 평가 시스템의 장점은 시스템의 이슈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간에 계속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ACECQA가 진행하고 있는 평가자 대상 중앙연수라고 생각한다(공무원).

또한 호주의 기관 평가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개발할 때 우리가 호주의 기관 평가 사례를 참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호주의 기관 평가는 계속 수정되어 현재는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져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가장 크게 수정된 점은 바로 평가방식으로 예전에 각 항목에 대해 체크를 한 반면에 현재는 과정적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장 주요한 변화는 평가의 방법이 각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으로부터 기관이 성과를 보여주고 기관이 평가 과정의 한 부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변화한 것이다(공무원).

우리나라의 평가는 기관을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기관의 질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호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기관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관 평가의 접근이나 평가방법을 관련 연구를 토대로 수정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3주기에 도입했는데 지표의 수가 증감하면서 변화가 있었지만 평가나 평가인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의 목적이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면서 기관 평가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 다양성과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사회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있어서 다양성의 맥락을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유아교육·보육이 교육부로 통합되었지만 기관의 다양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마오리족과 태평양 영유아의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다양성을 잃지 않도록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유아교육은 기관 유형의 다양성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이 교육부 아래 통합된 것은 1986년도이나 다양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유아교육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길 원하면서도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원한 것이었다. 하나의 체제 아래, 하나의 교육과정 아래 하지만, 다양성을 가지는 것 (공무원A).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유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은 기관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교육평가청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자가 기관의 철학이나 프로그램 등을 이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다. 심지어 웰링턴에 있는 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관의 철학을 이해하는 평가자를 비행기로 1시간이 걸리는 오클랜드에서 요청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기관의 철학, 재원 영유아의 특성, 프로그램 등에 따라서 기관평가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뉴질랜드 기관 평가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의 자발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체평가(self-review)가 단순히 각 기관에

대한 정보나 특징, 혹은 범 준수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는 과정이 아니다.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이 얼마나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기관이 자발적으로 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기관이 자체평가 과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을 자기평가라고 부른다. 우리의 역할 중 하나가 이 자체평가를 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다(공무원A).

자체평가는 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관이 유아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진실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실제로 자기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와 함께 하고 있는 내용, 학습성과나 교수(teaching practice)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되돌아보게 한다. 교육과정은 이를 중심에 두고 계속 변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변해야하는데 교육평가청의 지원을 받는 것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교사A).

이러한 교육평가청의 접근방식은 기관에서 평가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의 교사는 교육평가청의 평가에 대해서 자신의 기관을 평가하기 보다 지원해주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현장교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래 면담 내용은 실제 최근에 평가를 경험한 교사의 의견이다.

평가는 실제로 우리에게 매우 지원적이라고 보인다. 기관은 계속 개선되어야한다는 점에서 평가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항상 변한다. 이러한 평가는 내가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를 아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준다(교사B).

한 교사는 평가를 여행으로 부를 만큼 평가를 편안하게 생각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접근은 자신의 기관을 꾸준히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연결되기도 하였다. 교육평가청도 기관을 대할 때 자신이 기관과 관계를 가지면서 지원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아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도 평가에서 100%를 받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ERO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있긴 합니다.(공무원B).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서 여행과 같은 거예요. 평가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도는. 우리 기관은 앞으로 더 좋은 등급을 받을 거예요(교사A).

ERO의 지원하는 메커니즘. ERO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기관과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치지우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영유아를 위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입니다(공무원B).

뉴질랜드의 평가는 평가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다양성 존중과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평가를 통해서 자발적 성장을 기대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기관의 유형이나 특색, 상황을 존중하여 기관 평가 내용이나 방법을 선정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한편, 교육평가청이 기관의 맥락을 존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다양성이 존중하면서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종종 평가결과 공유 단계에서 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한 수정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의 평가가 우리나라에 주는 가장 시사점은 평가방법이나 내용 측면에서 기관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관별로 평가방법이나 지표를 다르게 하기에 앞서 평가를 통한 기관의 획일화라는 문제를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관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기관의 획일화를 구분하고, 기관이 각 특징을 오히려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영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의 기관 대상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 <표 III-6-8>과 같다.

〈표 III-6-8〉 기관 대상 평가 국제비교 정리

국가	주요 차별점	평가의 목적	평가 법적근거	평가 절차 및 방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와 기관 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 평가자의 높은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성장의 질과 기준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육법 2006(Child Care Act 2006) 제49조(평가), 제50조(평가보고) 학교교육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공지→자체평가→현장평가→피드백회의→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자율성 존중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균형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별 준수 여부를 강조하나 평가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법(Local Government Act) 10조, 12조, 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단계→점검 단계→점검결과 공유 단계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지역과 정부가 간 협력 -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효율적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보육의 질을 평가하는 도움을 주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공지→질 개선 계획 제출→현장방문→보고서 초안 작성→이의 제기 및 설명→최종보고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존중 - 기관의 자발적 성장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촉진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평가 역량을 높이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 Act 1989 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공지 및 정보교환→자체평가→평가 설계→현장점검 및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논의→결과보고

(표 III-6-8 계속)

	평가 내용	평가 결과 및 사후 관리	기관 대상 평가자 및 평가자 관리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이 다양한 영유아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는 정도 - 영유아의 웰빙에 기여하는 정도 - 리더십과 관리의 효율성의 정도 - 중앙에서 하달하는 점검 체계 및 지표 없음. - 유치원법과 교육과정 관련 계획을 준수 하는 여부를 평가함. - 지자체마다 평가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 및 대중에게 공개 - '부적절'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평가자는 점검과 함께 인가 업무도 함께 담당할 만큼 권위를 지님. - 학사 학위와 영유아교육 분야 자격을 소 지한 자임.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유아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교직원 배치, 유아들과의 관계,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리더십과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공무원, 부모, 지역인사 등 다양한 관계자에게 평가결과 공개함. - 일부지역에서 제정과 연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 관련 공무원이나 유아교육관련 전문가가 평가자임. - 특별한 사전교육 및 관리체계가 없음.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과 실제, 유아의 건강과 안전, 물리적 환경, 교직원 배치, 유아들과의 관계,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리더십과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영역별 등급을 포함한 기관평가 자료를 모두 일반에게 공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와 지역에서 국가법(National Law)에 의거해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자임. - 평가자가 갖추어야 할 분석, 기술 능력을 중요시함.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과 관리, 역량 강화, 교육과정, 교수-학습 측면 - 지표는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평가 결과는 다음 평가시기를 결정하여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함. - 평가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에게 요구되는 행동방침과 윤리강령이 존재함. - 유아교육·보육 전공자일 필요 없음. - 평가자 간 지위에 관한 등급체계가 있음.

IV.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위한 정책 방안

1.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의 방향 탐색

국제비교를 통해 각 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에 대한 정책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기관 평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학계전문가, 교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항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 분석을 통해 기관 평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학계전문가, 교사, 공무원별 설문조사 결과는 <부록 2>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 기관 평가·평가인증의 운영

우선 기관 평가 운영 방향에 대한 것이다. 평가나 평가인증 과정에서 기관의 장점과 단점, 개선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사의 동의 비율은 82.8% 정도이고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의 동의 정도가 각각 98%, 97.5%로 교사 집단에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음은 평가(인증) 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로 대체로 그렇다 35.4%, 매우 그렇다 32.4%로 65.8%가 의무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나머지 32.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은 집단은 학계 전문가로 응답자의 89.3%가 동의하였고 학계 전문가 역시 87%가 찬성하였다. 현장 교사는 56.5%만이 동의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18%, 그렇지 않다는 응답 25.5%로 많은 수의 교사가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기관평가 실시하기 이전에 사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 정도가 동의하였고, 약 12%는 반대하였다. 교사의 동의 정도가 85%로 가장 적고,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1%가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도 각 집단 간에 유사하였다. 그러나 평가를 담당

하는 전문평가위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는 전체의 77.5%가 동의하였고 교사는 73.8%, 공무원 86.0%, 학계전문가 82.7%가 동의하였다.

나. 기관 평가·평가인증 지표

평가 기준이 되는 지표 개선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가 너무 상세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5.7%가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34.3% 응답되었다. 응답자 집단별로 보면 교사에게서 동의 비율이 72.5%로 가장 높고 학계 전문가는 44.6%만이 동의하고 반대는 55.4%로 반대 비율이 더 높고 세 집단 중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차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6%가 동의하였고 집단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학계 전문가 집단의 동의 비율이 84.3%로 가장 낮고 교사가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가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7%가 동의하였고 25.3%는 반대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는 67.8%만이 동의하여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공무원 85.0%, 학계 전문가 89.3%가 동의하여 학계 전문가가 교육과정을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에서 영유아 발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4.9%가 동의하였고 25.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공무원, 학계 전문가 모두 동의 비율이 70%대로 유사하나, 학계전문가 동의 정도는 71.9%로 세 집단 중 가장 낮다. 영유아 발달 결과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기관의 운영관리와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4.7%가 동의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교사의 82.3%가 동의하였고 학계 전문가는 88.5%, 공무원은 90%가 동의하였다.

기관의 환경과 특색을 살리는 고유한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가 동의하였는데, 공무원의 96%, 학계 전문가 87.6%, 교사 84.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시 재정 회계 부분 강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8%가 동의하였고 약 37.2%는 반대하였다. 집단별로는 교사가 52.3%만이 동의하여 가장 낮고, 공무원은 86%로 나타나 집단별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다. 기관 평가·평가인증 방법

평가의 구체적 시행방법 및 내용을 각 지자체의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8%가 동의하였고 약 36.2%는 반대하였다. 교사와 공무원은 77% 정도가 찬성하였으나, 학계 전문가는 단 56.2%에 동의하였다.

현장 관찰기간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동의하였는데, 집단별로 보면 교사 71.6%, 공무원 87%, 학계 전문가 91.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집단에서 동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기관 평가(인증) 시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73.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는 63.8%만이 동의하였고, 공무원의 91%, 학계전문가의 91.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라. 기관 평가·평가인증 결과

평가가 끝난 후 결과 제시 및 활용에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8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교사가 78.8%만이 동의하고 공무원 92%, 학계전문가 90.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컨설팅이나 장학, 조력 등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9%가 동의하였다. 집단별로는 교사는 76.5%만이 동의하였고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는 각각 96.8%, 98.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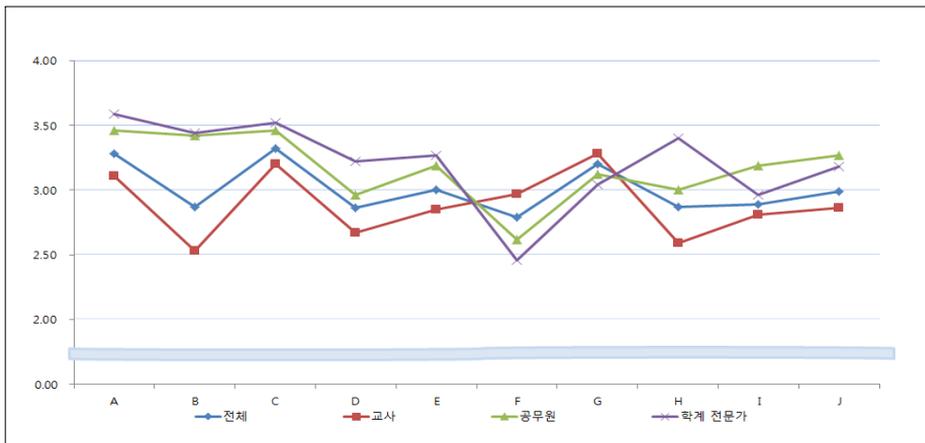
결과 공개 시 점수를 범주화해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7%만이 동의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는 49.3%만이 동의하였고, 공무원은 77%, 학계 전문가는 80.2%가 동의하였는데 특히 교사의 경우 강력한 부정인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5.5%, 그렇지 않다 25.3%로 반대의 의견이 좀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평가 결과를 부모에게 서술 형태로 정리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9.3%가 동의, 50.8%가 반대하여 반대 의견이 더 많다. 교사의 반대 비율이 특히 높은데 61.8%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되었는데 대체로 그렇다 32.0%, 매우 그렇다 40.0%로 72%가 동의하였고, 학계 전문가는 대체로 그렇다 40.5%, 매우 그렇다 26.4%로 전체의 66.9%가 동의하였다.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 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0%가 동의하였으며 32%는 반대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의 동의 비율은 58.5%, 공무원 78.0%, 학계 전문가 81%가 동의하여, 교사에게서 동의 비율이 가장 낮고, 학계 전문가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제비교 결과를 토대로 평가(인증)을 개선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교수, 공무원, 교사 순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공무원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조력, 컨설팅 등을 통한 사후관리 의무였으며 평가(인증)의 의무화와 평가(인증)을 위한 사전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서 유사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교사의 경우, 기관 특성에 따라 지표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거나 기관에 대한 서술식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았다.



주: A 평가(인증)을 통해 기관의 장점, 단점,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 B 평가(인증)의 의무화, C 평가(인증)을 위한 사전 지원 강화, D 평가(인증) 담당 독립적 기관 필요, E 독립적인 전문평가 위원 필요, F 현 평가(인증) 지표가 필요이상으로 자세하여 수정이 필요함, G 기관 특성에 따라 지표를 차별화, H 평가(인증) 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 강조, I 평가에서 영유아 발달에 관련된 자료수집, J 운영 관리와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평가 구분

[그림 IV-1-1]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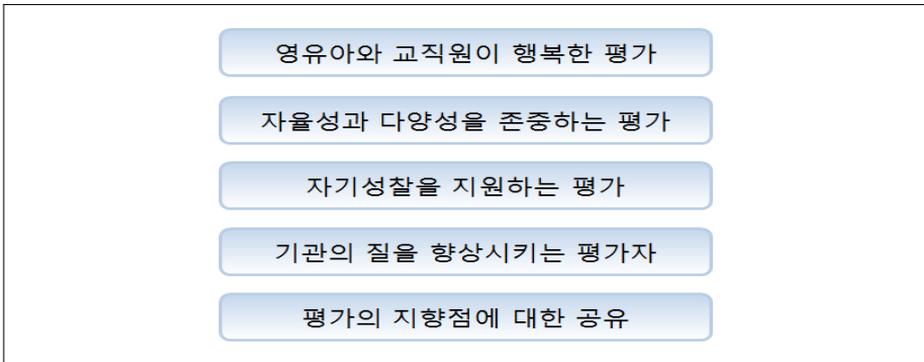


주: K 기관 특색을 살린 지표 필요, L 재정 회계 부분 강조 필요, M 평가(인증) 내용 및 방법을 시·도 수준에서 결정, N 현장 관찰기간 다양화, O 평가(인증) 과정에서 원장 및 교사 심층 면접 수행, P 평가(인증) 결과 내용 신뢰도 강화, Q 컨설팅이나 장학, 조력 등의 사후관리 의무화, R 평가(인증) 결과 점수 범주화 공개, S 평가(인증) 결과의 서술식 내용을 부모에게 공개, T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다음 평가 시기 결정

[그림 IV-1-2]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한 동의 정도(2)

2. 정책의 기본 방향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위한 정책의 첫 번째 기본방향은 영유아와 교직원이 행복한 평가를 정립하는 것이다.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지만 평가과정이나 내용에서 영유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로 인한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번째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평가가 기관의 운영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현장이 주체가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기관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넷째, 기관의 질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자가 필요하다. 다섯째, 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평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을 규정하고 이를 현장과 공유하고자 한다.



[그림 IV-2-1]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

가. 영유아와 교직원이 행복한 평가

기관 대상 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기관의 질 제고를 넘어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될 때, 영유아가 중심에 있지 않고 환경관리나 서류작업, 표면적인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오히려 영유아의 긍정적인 경험에 기여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기관 평가로 인하여 교사에게 과도한 초과업무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이직률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설명될 만큼 기관 평가는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곧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유아가 평가의 중심이 되면서 영유아와 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가

‘평가’라는 단어가 지닌 객관성은 평가의 기준이 절대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평가와 자율성 및 다양성은 어울리지 않는 개념으로 들릴 수 있으나 평가의 목적이 기관 줄 세우기가 아니라 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유아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표를 소극적으로만 해석한다면 모든 기관은 기관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어느 단계보다 평가단계에서 존중되어야 기관에서도 자신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다.

다. 기관의 자기성찰을 지원하는 평가

현재 평가의 주체는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이지만, 기관 평가를 통하여 기관이 스스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의 자체평가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기관이 따라야 할 법이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기관의 철학이나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강조점, 영유아의 웰빙, 특수한 도움이 더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고려, 영유아의 성장 지원 및 성장 확인 등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자는 평가를 통해 교직원의 자기성찰을 지원함과 동시에 현장은 자기성찰을 통해 스스로 기관의 질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가자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을 위해서 평가자의 구성, 자격,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유치원 평가의 경우, 평가자가 인접지역에서 공급되어 평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경우에는 평가자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가 편협하고 미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평가자가 필요하며 평가자의 자격, 사전교육 및 연수가 체계적인 틀 안에서 확충되어야 한다.

마. 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공유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시행하면서 평가에 대한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현장과의 공유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평가나 평가인증에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평가의 목적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평가가 규제와 관리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평가가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향점을 논의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가 현장과 공유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가 기관의 약점이나 개선사항만을 드러내기보다 기관이 가진 강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정책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각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대상 평가를 위한 정책방안은 이 두 정책을 보다 내실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구성하였다.

가. 기관 평가·평가인증 운영

1) 평가·평가인증 체계 통합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평가와 평가인증이 실시되고 있어 다른 평가지표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만 3-5세를 대상으로는 누리과정으로 일원화되고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역할이나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어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독립적인 평가 기구 설립

독립적인 평가 기구가 설립된 해외의 사례를 보면 특수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의 목적이나 내용이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평가를 하는 주체가 독립적이지 못하면 중립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우며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설립은 독립적인 평가자를 양성·공급할 수 있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3) 전문적인 평가자 양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평가자의 자격조건이 유아교육·보육관련 자격자에 한정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평가의 경우 인근 기관의 공·사립 원장이 상호평가하기도 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관계로 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평가자가 있지만 평가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적으로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자를 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력이 있는 교사 중에서 현장에서 직접 영유아와 상호작용보다 실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시험과 연수를 거쳐 전문평가자로 양성할 수 있다.

4) 평가·평가인증 의무화

유치원 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 번 제기되었다. 유치원 평가는 사실상 의무적이나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며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3주기에 들어서면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아교육·보육서비스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어 기관 중심이 아닌 일시적 보육을 담당하는 곳(예. playgroup, sessional group 등)까지도 평가를 받고 질 관리를 위해 노력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평가·평가인증부터 의무화되어야 한다.

나. 기관 평가·평가인증 지표

1)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 생산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는 기관의 상황이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도입된 이후, 기관의 특수한 철학이나 특색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투입되어 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통합지표를 제안하였는데 각 기관의 성격이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지표를 개발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 구분

지표를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하여 기관에게 필요한 평가·평가인증을 거치고 교사는 지표 전체·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미리 진행될 정도로 평가 목적이나 대상 측면에서 기관의 의사나 상황이 고려되었다.

3) 교육과정 중심의 지표 구성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이 보다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환경 및 안전관련 점검이나 모니터링이 반복되고 있어 평가·평가인증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영유아와 놀이하고, 상호작용하고, 발달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다 평가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유치원 평가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행정·시설관리 관련 측면과 교육과정이 함께 평가받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여 평가가 교육과정 운영을 보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는 평가결과 확인을 넘어서 컨설팅이나 조력, 연수와 연결되어 기관의 질을 실제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 기관 평가·평가인증 방법

1) 평가자와 기관 간 의사소통 강화

해외에서는 평가자와 평가를 받은 기관 간의 의사소통이 전제되었다. 무엇보다 평가가 시작되기 전 평가자는 평가의 목적, 내용, 기관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공식적인 단계를 거쳐야 하며 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평가받은 기관과 공유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단계는 자체평가나 현장관찰 이전, 이후에 거치는 단계로 특히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평가절차 상 공식적인 단계로 포함되어야 한다.

2) 현장의 원장(감), 교사의 참여 격려

현재 평가·평가인증 시 현장의 교원과 평가위원 및 현장관찰자와 면담이 충분하지 않다. 현장의 원장(감), 교사는 평가·평가인증을 오랜 기간 준비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평가인증과정에서 실제로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가·평가인증의 한 방법으로 원장(감), 교사와의 면담이 이용되어야 하며 이는 기관의 참여의식을 높일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관한 간접적인 소통의 기회가 되어 기관이 스스로 개선이 필요할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3) 자체평가의 역할 강화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체평가는 평가·평가인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체평가의 체크리스트 내용은 관련 법이나 법규, 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내용이 현재보다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기관의 운영철학, 교사의 신념, 다양한 요구반영 정도,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평가·평가인증을 통해 기관의 자기성찰 및 개선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라. 기관 평가·평가인증 결과

1) 평가 사후 관리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평가인증 과정에서 평가를 받기 직전까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가 평가 사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나 기관 모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평가를 통해 기관이 약점을 확인하더라도 실제로 개선하기 어렵다. 이는 평가의 관심이 평가를 하기 전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낮은 점수나 등급을 받은 기관을 추가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관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관의 질이 일정 수준 낮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턴트가 파견되어 기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 기간(예. 3개월) 뒤에 재평가를 받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다양한 측면의 평가결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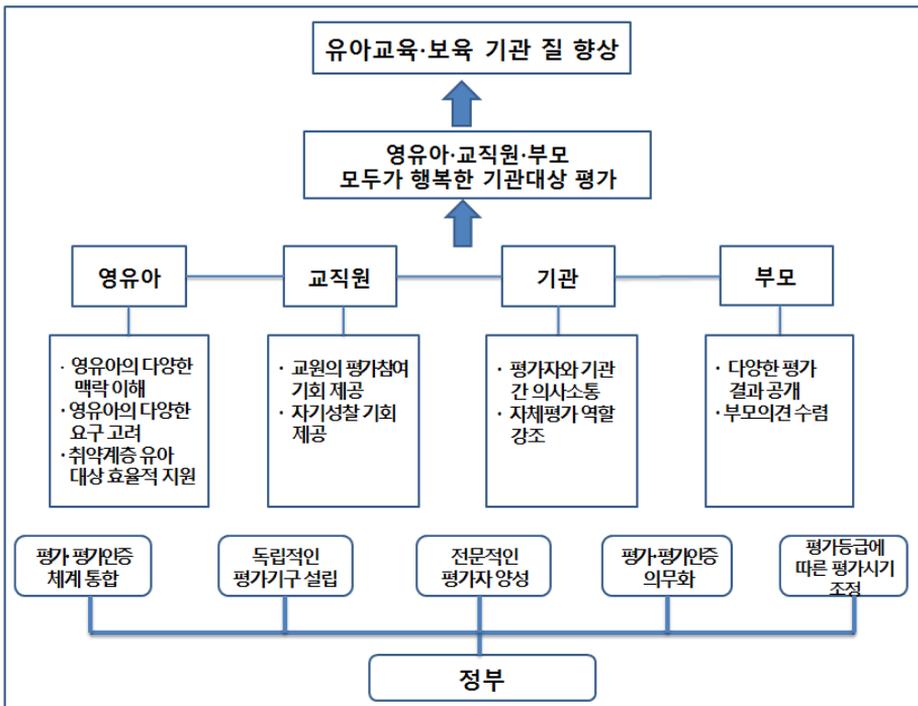
현재도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평가 참여 여부만을 공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보공시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보다 더 상세하게 영역별 점수와 기수평균, 설립유형평균을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종합평가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세부개선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평가

의 결과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개선사항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강점도 함께 공개되어 부모의 선택권을 위해 보다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3)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평가시기 조정

기관 대상 평가결과를 점수 대신에 등급으로 제시하여 교사의 부담감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관에 대한 홍보에 그칠 뿐 현장에서 실제로 받는 인센티브는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양질의 기관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교사에게도 인센티브가 되며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정책방안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IV-3-1]과 같다.



[그림 IV-3-1] 기관대상 평가 정책방안 모형

유아교육·보육의 질 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유아, 교직원, 부모 모두가 행복한 기관평가가 되어야 하며, 기관 평가는 기관이나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맥락이나 요구를 반영하는 정도나 취약계층 유아에 대한 지원 정도가 평가되어 평가를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교직원 측면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평가가 교사에게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어 질 개선을 위한 역량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 측면에서도 평가자와 기관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기관 스스로가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측면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지금보다 다양한 평가결과 및 기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현재 유아교육·보육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합하고 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축하여 평가자의 전문적인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관 대상 평가를 의무화하여 모든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나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이 모든 기관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 현 상황에서는 재정적 연계보다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기관의 강점, 약점, 특징 등)을 공개하고 다음 평가시기를 결정하거나 연수나 컨설팅과 연계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기관 대상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관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기관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결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목적임을 인지하여 기관 대상 평가가 영유아와 교직원, 부모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 영역 평가지표 비교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8(3), 387-409.
- 강민정(2011). 유치원 평가 받기 전과 후의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어려움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1(5), 419-440.
- 강수경·이기숙(2010a). 유아교육기관평가. 서울: 창지사.
- _____ (2010b). 유치원 평가의 과정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30(2), 237-260.
- 교육부(2014). 제3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자료집. 교육부.
- 권미경·도남희·황성온(2012).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보육유형, 보육교직원, 보육비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경란·서동미(2012). 1차, 2차 평가인증 통과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인식-1, 2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a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보육연구, 8(2), 23-44.
- 김경철·김안나(2010). 국가수준유치원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이 보게 된 국·공립 유치원 현실이야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147-176.
- 김남희(2010). 유아교육평가의 구조적 문제 진단 및 방향 모색을 위한 탐색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9(4), 135-163.
- 김동례(2007). 보육시설 종사자가 인식한 평가인증제의 운영과정과 사후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순환(2010). 유치원 평가와 조력활동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도. 육아지원연구, 5(1), 51-76
- 김안나(2011). 국가 수준 유치원 평가의 평가위원 관리체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2011).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 여부에 따른 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설(2011).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통합과정. 육아정책포럼 제25호, 26-34.
- 남미경·김남희·고은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활동평가 척도의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연구, 30(1), 147-171.
- 박경희(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후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평가인증을 통과한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사빈(2014). 교사, 평가위원, 장학사의 유치원 평가에 대한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 84, 185-208.
- 보건복지부(2013).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한국보육진흥원.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안내.
- 서문희·김은기·김명순·서영숙·이완정·서소정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성기욱(2005). 학교평가 체제 개선방향과 과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영빈·윤기영(2011). 유치원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의 평가준비, 평가수행, 평가 이후 과정 경험이야기. 한국영유아보육학, 67, 299-325.
- 양승희·노은호(2011). 유치원 평가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 한국보육학회지, 11(3), 151-166.
- 유수경·송연숙(2009). 유치원 평가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이야기 탐구. 유아교육연구, 29(1), 181-206.
- 이경화·심은주(2010).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3), 47-69.
- 이금구·이정옥(2013).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국가수준 유치원 평가 연계 컨설팅 모형 개발. 유아교육연구, 33(3), 183-206.
- 이대균·김선구(2008).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65-218.

- 이미정·이진희(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의 영아 대상 적절성에 대한 영아 전담 보육교사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5(1), 11-35.
-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양지(2011). 유치원 평가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연승·강민정·박선미(2013).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및 실태와 평가 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335-357.
- 이정원·이세원(2013).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원(2014).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재정포럼, 211, 25-43.
- 장명림(2007). 유치원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장명림·안정은·백승선(2011).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매뉴얼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 장명림·김은영·박수연·김은기·이일주(2009).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정재은·정은정(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태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0(1), 67-94.
- 조창현(2001).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 개혁. 한국비교정부학보, 5(1), 1-14.
- 차영숙·유희정·강민정(201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들려주는 평가인증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32(6), 83-109.
- 최경애·양옥승(2004). 영아 보육시설 평가기준. 유아교육연구, 24(5), 5-23.
- 최윤경·도남희·송신영(2013). 보육의 품질관리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희숙·이대균(2011). 유치원 평가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교사의 어려움과 조력을 통한 교사 및 유치원의 변화. 열린유아교육연구, 16(2), 213-251.

- 탁옥경(2009). 자연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하영례(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준비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2(4), 25-47.
- 홍은숙·부성숙(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재인증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조사. 발도르프교육연구, 3(2), 79-97.
- 황해익(2009).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기관평가. 열린유아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03-126.
- 황해익·김남희·정혜영(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현안 및 발전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461-490.
- ACECQA(2011). ACECQA board position on authorised officer qualification. Retrieved 9 September, 2014 from <http://files.acecqa.gov.au/files/Quals/1-NQF%20qualifications%20requirements%20for%20Authorised%20Officers-1.pdf>
- ACECQA(2013a).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services*.
- _____ (2013b).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Retrieved 20 June, 2014 from <http://files.acecqa.gov.au/files/National-Quality-Framework-Resources-Kit/NQF03-Guide-to-NQS-130902.pdf>
- _____ (2013c). *National Quality Standard Assessment and Rating Instrument*.
- _____ (2014). *Guide to Assessment and Rating for Regulatory Authorities*. Retrieved 8 July, 2014 from <http://www.acecqa.gov.au/assessment-and-rating-resources>
- Australian Government (n.d.). *Korean childcare assistance factsheet*. Retrieved 20 September, 2014 from http://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korean_childcare_assistance_factsheet_final.pdf
- Barnett, W. S. (2013. 9). "Securing the Social Benefits from ECCE".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 서울.
- Belsky, J., Vandell, D. L., Burchinal, M., Clarke-Stewart, K. A., McCartney, K., Owen, M. T. and The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7), Are Ther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8, 681 - 701. doi: 10.1111/j.1467-8624.2007.01021.x

- Blau, D. M., & Hagy, A. p.(1998). The demand for quality in child ca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1), 104-146.
- Ceglowski, D., & Bacigalupa, C. (2002). Four perspectives on child care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0(2), 87-92.
- Côté, S. M., Doyle, O., Petitclerc, A., & Timmins, L. (2013). Child care in infancy and cognitive performance until middle childhood in the Millenium Cohort Study. *Child Deveopment*, 84(4), 1191-1208.
- Cunha, F., Heckman, J. J., Lochner, L., & Masterov, D. V.(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NBER Working paper No. 11331*.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epartment for Education(2012). *Business plan 2012-2015*. Retrieved 4 April, 2014 from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 _____ (2014a). *Early childhood education*. Retrieved 20 June, 2014 from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
- _____ (2014b). *Child care service handbook 2013-2014*. Retrieved 30 September, 2014 from http://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ed14-0053_ccs_-_child_care_service_handbook_v2.pdf
-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n.d.). *Early Learning and Care Centres*. Retrieved 20 June, 2014 from http://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elcc_factsheet.pdf
- Dickens, S., Wollny, I., & Ireland, E. (2012). *Childcare sufficiency and sustainability in disadvantaged areas*. Retrieved 4 April, 2014 from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19620/DFE-RR246.pdf
- Dunn, L. (1993). Proximal and distal feature of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develop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167-193.
- Education Review Office (2009). *Getting the most out of your ERO review*.

- _____ (2010). *Handbook of Contractual Obligations and Undertakings - Early Childhood Services Volume 2* [for services licensed under the 2008 regulations](H1p.1). Retrieved 8 July, 2014 from <http://www.ero.govt.nz/Review-Process/For-Early-Childhood-Services-and-Nga-Kohanga-Reo/Handbook>.
- _____ (2013). *HE POU TATAKI. How ERO review early childhood services.*
- Felte, C., & Lalive, R. (2010). How does early child care affect child development? Learning from the children of German Unification. *Beiträge zur Jahrestagung des Vereins für Socialpolitik 2010: Ökonomie der Familie - Session: Economics of Child Care and Child Development, No. B11-V2*
- Fontaine, N. S, Torre, L. D, Grafwallner, R. & Underhill, B. (2006). Increasing quality in early care and learning environme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6(2), 157-169.*
- French, A. (2000). *The heart of the matter: How the education review office evaluates per-tertiary education.*
- Geoffroy, A., Côté, S. M., Giguere, C. E., Dionne, G., Zelazo, P. D., Tremblay, R. E., et al.(2010). Closing gap in academic readiness and achievement: The role of early child care. *Journal Child Psychology Psychiatry, 51(12), 1359-1367.*
- Golberg, M. (1999). *Accreditation of Child Care Centers.* The Muttart Foundation.
- Government Administration Services (2014).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Retrieved 4 April, 2014 from <http://www.regjeringen.no/en/dep/kd.html?id=586>
- 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3).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 Retrived 4 April, 2014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improving-the-quality-and-range-of-education-and-childcare-from-birth-to-5-years>
- Haug, K. H. & Storø, J.(2012). *Kindergartens-a universal right for children in Norway.*

- Katz(1993). Multiple perspectives on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program. ERIC # ED355 041.
- Layzer, J. I. & Goodson, B. D.(2006). The “quality” of early care and education settings: Definitional and measurement issues. *Evaluation review*. 30(5), 556-576.
- Ministry of Education(2007).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32.
- _____ (2014). Different kind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trieved 10 September, 2014 from <http://parents.education.govt.nz/early-learning/early-childhood-education/different-kinds-of-early-childhood-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6). *Act no. 64 of June 2005 relating to Kindergartens(the Kindergarten Act)*.
- _____ (2007). *Tilsyn med barnehager*.
- _____ (2009). *The most important messages in White Paper No 41 (2008 - 2009): Quality in ECEC*. Retrieved 4 April, 2014 from <http://www.regjeringen.no/upload/KD/Vedlegg/Barnehager/Kvalitesmeldingen/FactsheetSTMeld41.pdf>
- _____ (2011). *Framework plan for the content and tasks of kindergartens*. Retrieved from 4, April, 2014 from http://www.regjeringen.no/upload/KD/Vedlegg/Barnehager/engelsk/Framework_Plan_for_the_Content_and_Tasks_of_Kindergartens_2011.pdf
- _____ (201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4 April, 2014 from <http://www.regjeringen.no/en/dep/kd/Selected-topics/kindergart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public.html?id=491283>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2). Early child care and children’s development prior to school entry: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Journal*, 39, 133-164.

- OECD(2012/2013).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신동주, 장혜진, 이경옥 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country notes and key tables*.
- _____(2014). *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trieved 4 April, 2014 from <http://www.oecd.org/edu/school/48623811.pdf>
- Ofsted(2013). *Evaluation schedule for inspections of registered early years provision*.
- _____(2014a). *Are you ready for your inspection?*
- _____(2014b). *Children's centre inspection handbook*.
- _____(2014c). *Conducting early years inspection*,
- _____(2014d). *Inspecting early years providers: Training for new early childhood regulatory inspectors*
- _____(2014e). *The framework for school inspection*.
- _____(2014f). *The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and inspection of provision on the Early Years Register*
- _____(2014g). *The legal basis of our work and our options for ensuring compliance: childminding, childcare and children's social care*
- _____(2014h). *The report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 Early Years*
- Pence, A., & Moss, P. (1994). Towards an inclusionary approach in defining quality. In: Moss, P., and Pence, A. (eds.). *Valu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Services: New Approaches to Defining Qual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Pianta, R. C., A. J. Mashburn, J. R. Downer, B. K. Hamre, & L. Justice (2008). Effects of web-mediated professional development resources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in pre-kindergarten classroo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3, 431-451.
- PWC(2010). *Tilsyn til besv er? Unders kelse av kommunene som barnehagemyndighet, herunder kommunenes tilsyn med barnehagene*.

- RAND education(2008). *Assessing child-care quality: How well does Colorado's qualistar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work?*
- Reach and Risk Report(2011-2012). *Office of Child Development and Early Learning*. Retrieved 14, June, 2014 from http://www.portal.state.pa.us/portal/server.pt/community/departmental_offices/7235/p/1188242
- Sheridan, S., & Schuster, K. M. (2001). Evaluations of pedagogical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6(1), 109-124.
- Taguma, M. (2013). *Why "Monitoring Quality" matt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mplications from International Practices -[PowerPoint slides]*. Retrieved 4, March, 2014 from http://www.oise.utoronto.ca/atkinson/UserFiles/File/Events/20131010_Quality_Conference/Miho_Taguma-Oct_10-13.pdf
- The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2014, in press) *Inspection Methodology*.
- Tvinnereim, H. (2012). *The inspectorate of education of Norway*. Retrieved 5, September, 2014 from <http://www.sici-inspectorates.eu/Members/Inspection-Profiles/Norway>
- Vandell, D. L., Belsky, J., Burchinal, M., Steinberg, L., Vandergrift, N., & NICHD Early Child Care (2010). Do effects of early child care extend to age 15 years? Results from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1(3), 737-756.
- Vandell, D. L., & Corasaniti, M. A. (1990). Variations in early child care: Do they predict subsequent social, emotional and cognitive differen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555-572.
- Vandell, D. L., & Powers, C. P. (1983).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free play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 439-500.
- Yazejian, N., & Iruka, I. U. (2014). Associations among tiered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supports and quality impro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in press.

웹페이지

뉴질랜드

교육부 <http://www.minedu.govt.nz/NZEducation/EducationPolicies/Schools/EarlyChildhood.aspx>

교육평가청 <http://ero.govt.nz/>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https://www.regjeringen.no/en/dep/kd/id586/>

독일

가족·노인·여성·아동부 <http://www.bmfsfj.de/>

스웨덴

교육과학부 <http://www.government.se/sb/d/2063>

영국

교육표준청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sted>

Early Years <https://www.gov.uk/schools-colleges-childrens-services/early-years>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호주

교육부 <http://www.det.wa.edu.au/curriculumssupport/earlychildhood/detcms/portal/>

우리아이포털 <http://www.mychild.gov.au>

ACECQA <http://www.acecqa.gov.au>

Abstract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for managing the quality of ECEC

Hyejin Jang Shinyeong Song

As the importance of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s recognized, many advanced countries have tried to manage the quality of institutions in ECEC with diverse ways. Among these, evaluating ECEC institution is regarded as both important and effective. Internationally, interests about evaluation for institutions are high and data related to this get cumulative. In this sense,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for managing the quality ECEC is meaningful.

The purpose of study is to compare the current status of evaluating ECEC institutions and get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kindergarten evaluation and child care accreditation in Korea. Countries are selected for comparative research are England, Norway, Australia, and New Zealand.

For this research, mainly data were collected from each country's web sites such as Ministry of education and institution involving evaluation of ECEC. Also, visiting the institution such as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England's Ofsted, and New Zealand's ERO and interviewing 10 government officials and 4 teachers allowed collecting more data and listening to various people's voices. Based on collected data, 121 professionals, 100 government officials, 400 teachers(200 each kindergarten and child care) were participated in survey identifying the direction of enhancing kindergarten evaluation and child care accreditation.

Results can be divided to six categories. First, the purpose of evaluation was almost same across countries but Norway focused on more whether the institution obeys a law. Second, evaluation was based on the laws and Eng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had an independent institution for

evaluating ECEC institutions. Third, in terms of evaluation process, usually it is as following: notice→self report→on site visiting→sharing draft→final result to the public. Before the final result is offered to the public, teachers and government official can review and claim a revision on draft. Fourth, indicators for evaluation were different across countries. Interestingly, New Zealand had a new perspective for indicators as resources. Fifth, all countries shared the result with public but actually didn't relate the evaluation result with personal financial incentive or institution's budget. Sixth, evaluators were trained in Eng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but Norway didn't establish a systematic structure for evaluators.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Integrating kindergarten evaluation and child care accreditation,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institution for ECEC evaluation, and mandating evaluation for ECEC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indicators, indicators considering institutions's various contexts are really needed. Dividing mandatory and optional sectors and focusing more on curriculum parts also were suggested. For evaluators process,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evaluators and ECEC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self-assessment. In the evaluation results, strengthening the process after evaluation, sharing diverse aspect of institutions, and making a connection evaluation timing and evaluation results were suggested.

부록

부록 1. 영국 Early Years Register 등급별 기준

부록 2. 기관 평가·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설문조사 결과

부록 3. 조사표

부록 1. 영국 Early Years Register 등급별 기준

영역1. 유아교육기관이 아동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

<p>뛰어남 (Outstanding)</p>	<p>이 기관은 '좋은'기관보다 낫다. 그 이유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기관은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다방면에서 높은 기준을 지속적으로 성취함. 교수법의 질도 지속적으로 높았고, 다른 기관에도 보급할만하며 자극을 준다. - 전문가들은 아동과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다양한 학습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얼마나 아동이 학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아동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 모든 연령에 대한 평가가 꼼꼼하고 아동의 학습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근거로 삼아 검토되고 적절한 중재와 지원을 얻기위해 사용된다. - 아동은 동기부여를 받고, 참여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학습 특성을 보여준다. 아동이 의사소통능력, 언어능력을 습득하도록 돕고, 아동의 신체,사회,정서, 개인적 발달을 지원하는것에 집중하는 것은 모든 아동이 학습에서 급격한 향상을 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이후의 학습단계 또는 학교에 대한 준비가 매우 우수하다. - 매우 성공적인 전략은 부모가 가정에서나 기관 환경에서 아동의 학습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p>좋은 (Good)</p>	<p>이 교육기관은 '좋은' 이다. 왜냐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프로그램들은 7가지 학습영역 전반에 깊이가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든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흥미롭고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 활동들은 공통적으로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아동들이 무엇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가르침의 질이 지속적으로 좋고 뛰어나다. - 모든 전문교사들은 모든 아동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갖는다. 교사들은 주기적으로 엄밀한 평가를 하고, 적절하게 도전이 되는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이 평가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그들은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상황에서 늘 아동에게 능숙하게 질문하고, 주의깊게 관찰하고 듣는다. - 전문교사들은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아동, 장애아동, 그리고 외국어로 영어를 배워야하는 모든 아동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목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아동은 흥미로워하며, 효과적인 학습특성을 보여주는 학습자이다. - 모든 아동은 의사소통, 언어능력 습득 및 신체적, 사회 정서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움을 받아, 모든 연령의 아동이 학습에서 좋은 발전을 보인다. - 대체로 모든 아동이 그들의 나이에 기대된 발달범위 내에서 수월하게 활동한다. 동일 연령대보다 낮은 지점에 있는 경우, 평가내용이 아동

	<p>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점점 좁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된 학습영역에서의 아동의 발전은 아동은 학습의 다음단계 를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기술들을 갖고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y person system(주요 인물 제도)은 참여를 거린다 하더라도 모든 부모를 참여하도록 지지한다. 부모는 아동이 등록했을 때, 아동의 시작점에 대한 초기평가에 참여하고, 아동의 향상에 대한 주요정보를 제공해준다. 부모는 가정에서의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지원하도록 독려된다. 주요인물제도(the key person system)으로 인해 모든 전문교사들은 아동의 개인적 필요에 부합하는 학습을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전략 및 지원을 사용하게된다..
<p>개선이 필요함 (Requires Improvement)</p>	<p>이 교육기관은 아직 좋은 평가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법적인 요구사항들의 위반사항이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못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습의 7가지 영역을 다루고 주요 영역에서의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나, 학습의 몇가지 측면에서 덜 계획적이다. 대체로 활동이 재미없고 도전단계가 없어도 아동은 기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전문교사가 어떻게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향상시킬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도, 모든 아동이 좋은 향상을 보이지 않는점에서 가르침의 질이 확실하지 않다. - 전문교사들은 일상적으로 아동의 평가는 하지만,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검토하고 아동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 특별한 교육적 필요, 장애, 외국어로서의 영어학습을 고려하여, 거의 모든 아동이 연령에서 기대되는, 전형적인 발달범주내 활동을 한다. 아동의 시작점이 다소 동일 연령대보다 낮은 경우, 기관에서는 이러한 아동도 점차 따라고 그 차이가 좁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아동들은 이후 학습단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는다. - 부모는 아동이 기관에 등록할 때 아동의 시작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독려된다. 전문교사는 아동의 향상된 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모가 학습을 촉진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전략이 항상 성공적이지 않다.
<p>Inadequate (불충분함)</p>	<p>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법체계에 위반이 있거나 다음의 사항중 만약 한 개 또는 그 이상이 있다면, 그 기관은 “불충분함”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프로그램은 학습의 7가지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충분히 깊이있는 활동과 도전적인 활동을 제공하지 않아,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간다. - 몇몇 전문교사는 어떻게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나, 주된 혹은 특별한 학습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는 모든 아동의 필요와 일치하지 않는 빈약한 가르침이다. - 동의 필요에 일치하는 활동을 계획세우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질적으

	<p>로 관찰과 평가가 지속되지 않으며, 아동이 향상하도록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아동 혹은 특별한 아동집단의 학습과 발달, 시작점이 대다수의 아동에 의해 만들어진 발달수준과 일치하지 않아, 연령에 기대되는 발달내에서 활동하는 아동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좁혀지기 보다는 점차 커진다. - 아동들은 다음단계의 학습 또는 학교에 잘 준비되지 못한다. -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참여전략이 매우 빈약하고, 양육 활동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둔다. 결과, 부모는 아동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
--	---

영역2. 아동의 웰빙에 대한 유아교육기관의 기여

뛰어남 (Outstanding)	<p>보육활동이 “좋음” 보다 낫다. 그 이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문교사들은 모든 연령대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하는데 민감하고 숙련되어 있다. 또한 아동의 독립성과 탐색능력을 발달하는데 강한 토대를 제공한다. - 아동들은 점차적으로 사회적 상황 내에서 자신감과 활동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연령과 관련된 위기와 도전을 대처하는 방법을 잘 이해한다. - 아동의 안전과 보호는 모든 전문교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효과적으로 아동이 스스로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아동이 직접 접할 수 있는, 학습을 촉진시키고 안과 밖에서 아이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가진, 자극을 주는 환경이다. - 주요인물(key person)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모든 아동이 정서적으로 다음단계의 학습을 준비하게 한다. 전문교사들은 능숙하게 아동이 다른 환경이나 학교에 변화하도록 돕는다.
좋음 (Good)	<p>보육활동은 “좋음” 이다. 그 이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물제도(key person system)는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자신의 안녕(well-being)과 독립성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 전문교사들은 좋은 롤모델이다. 그들은 잘 배치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전략을 적용하여 아동에게 수용가능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한다. 관계는 모든 수준에서 강하고, 아동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인내함을 배운다. 아동은 환경을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위험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 전문교사들은 민감하게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실제적인 해를 가한다. 교사들은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안전문제를 다루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아동의 행동은 자신이 안전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주요인물(key person)이나 다른 성인들과 두려움을 공유할 수 있다. 전문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왜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육활동의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전문교사들

	<p>은 아동이 자신들의 필요를 관리하도록 돕고 독립성을 갖도록 돕는다. 아동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필요를 관리하면서 유능감을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과 밖에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정서적인 안녕을 지원하는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이 있으며, 아동의 독립성과 협동을 발달시키는 경험을 제공한다. - 전문교사들이 아동이 학교나 다른 학습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을 잘 돕음으로서 아동은 정서적으로 다음 학습단계를 잘 준비할 수 있다.
<p>개선이 필요함 (Requires Improvement)</p>	<p>보육활동은 아직 ' 좋음' 평가를 받지 못하는 못한다. 그러나 안전, 복지, 학습, 발달에 대한 법적요구 위반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아동은 대다수의 아동이 안정적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주요인물 (key person)을 갖는다. 그러나 때때로 보육활동이 아동의 요구에 완전히 맞지 않는다. - 전문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함께 놀이하고 배우고 자신의 통제를 발달하도록 지원한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동은 자신의 나이에 적절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몇몇 전문교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대되는 행동을 상기시키지 못할 때 실수가 발생한다. - 전문교사들은 어떻게 아동을 보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다. 활동 실습과 활동절차들은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아동들은 때때로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도, 대체로 환경안에서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킨다. 아동들은 자신의 필요를 관리하는 기술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킨다. - 환경은 안전하고 따뜻하고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전문 교사들은 아동에게 질 좋은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실내외의 공간과 자원을 항상 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 전문교사들이 다른 환경 혹은 학교와 같은 환경으로 변화를 지원하므로 대다수의 아동은 정서적으로 다음단계의 학습을 준비한다.
<p>Inadequate (불충분함)</p>	<p>만약 다음사항중의 하나 이상이 적용되거나, 안전, 복지, 학습, 발달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시, 보육활동은 '불충분함'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인물제도(the key person system)은 잘 실행되지 않는다. 보육 활동은 아동의 정서적 안녕(well-being)과 복지를 지원하지 않고,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실패하게 한다. - 아동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 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는 아동을 위협에 두고, 학습을 방해하는 무질서한 환경을 초래한다. - 모든 전문교사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영역 3. 리더십과 운영의 효율성

<p>뛰어남 (Outstanding)</p>	<p>지도력과 운영은 “ 좋음 ” 보다 낫다. 그 이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력은 영감을 주는 것이다. 모든 활동내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것은 성취를 향상시키고, 매우 높은 성취를 유지한다는 매우 성공적이고 입증된 욕구에 의해 설명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제공자는 교육기관이 EYFS의 안전, 복지, 교육, 발달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그들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자신들의 책임, 의무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갖고 있다. 교육제공자는 안전과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학습내용을 만든다. -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은 전문교사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이해와 실습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원 업무의 영향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평가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감독이 제공된다. - 아동의 필요는 재빠르게 확인되고, 특별히 기관환경, 부모, 외부기관, 다른 교육제공자들 사이의 매우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충족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좋음 (Good)</p>	<p>지도력과 운영은 “좋음” 이다. 그 이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프로그램은 넓은 범위의 경험이 아동의 초기 목표로 나아가게 한다. 이것은 학습영역 및 어떻게 아동이 배우는가에 대한 우수하고 확실한 이해와 정확한 모니터링의 결과이다. - 모니터링은 계획과 평가가 지속적이고, 정확하며, 아동의 기술, 능력, 향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보여주고있음을 보장한다. 그결과, 개별 아동 및 아동의 집단이 목표가 되고, 그들의 발전은 엄격하게 모니터링되어 적절한 개입이 추구하고, 그 간격은 축소된다. - EYFS의 안전, 복지, 학습, 발달 요구사항을 관리자,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충족시킨다. 채용, 감독, 훈련은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 매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과 절차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안전과 아동의 보호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분명하게 평가하며 교육 제공자의 계획에 반영한다.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계획된 조치들은 협력적이고 효과적이다. 아동의 성취를 지원하는 성공적인 향상 계획은 개선의 욕구를 입증해준다. 직원과 아동, 부모의 의견을 고려한 철저하고 정확한 자기평가,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확인한다. - 효과적인 전문성 향상프로그램은 전문교사들이 자신의 지식, 이해,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업무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어, 전문교사들을 모니터링하고 불충분한 업무는 지적을 받는다. 관리 및 책임준비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 부모, 외부기관, 다른 교육제공자들과의 파트너십이 잘 되어있고, 아동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여한다. 적절한 개입이 분명하여, 아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는다.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이 필요함 (Requires Improvement)</p>	<p>지도력과 관리는 아직 ‘좋음’평가를 받지 못하는 못한다. 그러나 법적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 학습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각 학습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기에는 충분히 철저하지 않다. - 아동의 학습, 발달의 평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동의 기술, 능력, 향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그러나 특히 성취가 적어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 개인 및 집단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히 철저하지 않아 그 차이가 천천히 줄어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관리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고 모든 직원들은 정기적 훈련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교수법의 질의 향상에 충분히 초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향상시킨다. 관리와 책임준비는 분명하다. - EYFS의 안전, 복지, 학습, 발달요구사항은 지도자와 관리자가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어떠한 위반도 아동의 학습, 발달, 안전, 안녕(well-being)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도자와 관리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지는지 알고 있다. 채용과 검열은 철저하고 법적요구사항을 따른다. 훈련과 감독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 절차들도 이러한 환경에 맞게 이해된다. - 관리자들은 개선되기를 열망한다. 약점을 극복하고 교육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은 대체로 성공하지만 아동의 성취를 향상시키는데 충분히 초점을 두지못한다. 자기평가는 비록 직원, 아동, 부모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고 교수법과 학습에 충분히 초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의 강점, 약점에 대한 개요를 보여준다. 부모와의 파트너십은 격려되며, 아동의 행복을 지원하는데 기여한다.
<p>Inadequate (불충분함)</p>	<p>만약 다음사항중의 하나 이상이 적용되거나, 안전, 복지, 학습, 발달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시, 지도력과 운영은 '불충분함'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과 학습에 거의 이해가 없어, 아동의 발전(특히 성취가 부족한 아동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동의 향상을 모니터링하는 능력은 형편없다. - 전문교사에 대한 비효과적인 모니터링은 비일관적인 활동, 훈련필요를 확인하지 못함을 초래하며, 전문교사들은, 전문성 향상프로그램을 충분히 접하지 못하게 된다. - 안전, 복지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며, 이러한 법규정 위반은 아동의 안전과 안녕(well-being)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훈련과 감독도 아동보호 및 안전에 충분히 초점을 두지 않는다. -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부모, 다른 교육환경, 전문가들과의 연결은 아동의 필요를 확인하고 충족함을 확실하게 할만큼 강하지 않다.

총평

<p>뛰어남 (Outstanding)</p>	<p>기관활동은 모든 아동의 안전, 안녕(well-being), 학습을 위한 매우 큰 열망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동이 자신들의 시작점에서부터 우수한 성장이 있었으며, 학교나 다음 학습단계를 준비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교육기관의 모든 주요 측면에서 ' 좋음' 과 '뛰어남'을 받는다.
<p> 좋음 (Goo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내 활동은 아동을 안전하게 하고, 모든 아동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며, 향상이 있다. 학교 또는 그 다음단계의 학습을 잘하도록 준비시킨다. 아동은 적어도 ' 좋음', 때때로 '뛰어남'에 해당하는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교육기관의 대부분의 주요 측면에서 ' 좋음'을 받는다."얼마나 유아교육기관이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느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 좋음'을 받는다.

<p>개선이 필요함 (Requires Improv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내 활동 중 한 개이상의 활동이 좋음을 받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므로, ' 좋음'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아동들은 학습과 발달에서 좋은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 지도력과 운영은 요청된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충분한 능력을 보여준다. - 교육기관의 주요하지 않은 측면에서 '불충분함'이다. 학습, 발달, 안전, 안녕(well-being)에 대한 요청사항의 위반사항은 있으나, 이는 아동의 발달, 학습, 안전, 안녕(well-being)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Inadequate (불충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효과는 '불충분함'일 것으로 보인다. - 아동의 안전, 안녕(well-being), 학습,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청사항에서의 위반이 있다. - 연이은 점검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받았거나, 세 번째 점검에서도 " 좋음"을 받지 못한 보육시설 및 미취학시설.

부록 2. 기관 평가·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가(인증)을 통해 기관의 장점, 단점,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					
전체	3.2	8.7	52.3	35.7	100.0(621)
교사	4.5	12.8	56.0	26.8	100.0(400)
공무원	1.0	1.0	52.0	46.0	100.0(100)
학계 전문가	0.8	1.7	40.5	57.0	100.0(121)
$\chi^2(df)$	N/A				
평가(인증) 의무화					
전체	12.9	19.3	35.4	32.4	100.0(621)
교사	18.0	25.5	36.5	20.0	100.0(400)
공무원	4.0	9.0	36.0	51.0	100.0(100)
학계 전문가	3.3	7.4	31.4	57.9	100.0(121)
$\chi^2(df)$	83.2(6)***				
평가(인증)을 위한 사전 지원 강화					
전체	3.1	8.7	39.5	48.8	100.0(621)
교사	4.5	10.5	39.0	46.0	100.0(400)
공무원	1.0	4.0	44.0	51.0	100.0(100)
학계 전문가	0.0	6.6	37.2	56.2	100.0(121)
$\chi^2(df)$	19.0(6)**				
평가(인증) 담당 독립적 기관 필요					
전체	9.3	19.6	39.1	31.9	100.0(621)
교사	12.0	21.5	39.8	26.8	100.0(400)
공무원	11.0	23.0	36.0	30.0	100.0(100)
학계 전문가	13.0	20.0	43.5	23.5	100.0(121)
$\chi^2(df)$	35.7(6)***				
독립적인 전문평가 위원 필요					
전체	5.8	16.7	40.3	37.2	100.0(621)
교사	7.5	18.8	40.0	33.8	100.0(400)
공무원	5.0	9.0	42.0	44.0	100.0(100)
학계 전문가	0.8	16.5	39.7	43.0	100.0(121)
$\chi^2(df)$	25.4(6)***				
현 평가(인증) 지표가 필요이상으로 자세하여 수정이 필요함					
전체	5.8	28.5	41.2	24.5	100.0(621)
교사	5.8	21.8	41.0	31.5	100.0(400)
공무원	6.0	30.0	49.0	15.0	100.0(100)
학계 전문가	5.8	49.6	35.5	9.1	100.0(121)
$\chi^2(df)$	42.8(6)***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기관 특성에 따라 지표를 차별화					
전체	5.2	8.9	47.0	39.0	100.0(621)
교사	5.5	8.0	40.8	45.8	100.0(400)
공무원	3.0	11.0	58.0	28.0	100.0(100)
학계 전문가	5.8	9.9	58.7	25.6	100.0(121)
$\chi^2(df)$	27.5(6)***				
평가(인증) 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 강조					
전체	5.3	20.0	51.2	23.5	100.0(621)
교사	8.0	24.3	52.5	15.3	100.0(400)
공무원	1.0	14.0	55.0	30.0	100.0(100)
학계 전문가	0.0	10.7	43.8	45.5	100.0(121)
$\chi^2(df)$	75.0(6)***				
평가에서 영유아 발달에 관련된 자료수집					
전체	3.9	21.3	55.6	19.3	100.0(621)
교사	5.0	20.0	59.3	15.8	100.0(400)
공무원	2.0	20.0	51.0	27.0	100.0(100)
학계 전문가	1.7	26.4	47.1	24.8	100.0(121)
$\chi^2(df)$	16.5(6)*				
운영 관리와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평가 구분					
전체	4.3	11.0	59.3	25.4	100.0(621)
교사	5.5	12.3	59.3	23.0	100.0(400)
공무원	3.0	7.0	60.0	30.0	100.0(100)
학계 전문가	1.7	9.9	58.7	29.8	100.0(121)
$\chi^2(df)$	17.9(6)**				
기관 특색을 살린 지표 필요					
전체	2.6	10.5	57.0	30.0	100.0(621)
교사	3.8	11.8	56.0	28.5	100.0(400)
공무원	1.0	3.0	66.0	30.0	100.0(100)
학계 전문가	0.0	12.4	52.9	34.7	100.0(121)
$\chi^2(df)$	17.1(6)**				
재정 회계 부분 강조 필요					
전체	10.1	27.1	38.3	24.5	100.0(621)
교사	15.3	32.5	34.8	17.5	100.0(400)
공무원	2.0	12.0	47.0	39.0	100.0(100)
학계 전문가	0.0	21.5	43.0	35.5	100.0(121)
$\chi^2(df)$	67.0(6)***				
평가(인증) 내용 및 방법을 시·도 수준에서 결정					
전체	13.7	22.5	40.3	23.5	100.0(621)
교사	11.8	20.5	42.5	25.3	100.0(400)
공무원	19.0	24.0	34.0	23.0	100.0(10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학계 전문가	15.7	28.1	38.0	18.2	100.0(121)
$\chi^2(df)$	1.7(6)				
현장 관찰기간 다양화					
전체	7.2	16.7	48.5	27.5	100.0(621)
교사	9.5	19.0	44.3	27.3	100.0(400)
공무원	3.0	10.0	60.0	27.0	100.0(100)
학계 전문가	3.3	14.9	52.9	28.9	100.0(121)
$\chi^2(df)$	19.8(6)**				
평가(인증) 과정에서 원장 및 교사 심층 면접 수행					
전체	6.1	20.5	49.6	23.8	100.0(621)
교사	9.3	27.0	48.0	15.8	100.0(400)
공무원	1.0	8.0	48.0	43.0	100.0(100)
학계 전문가	0.0	9.1	56.2	34.7	100.0(121)
$\chi^2(df)$	81.1(6)***				
평가(인증) 결과 내용 신뢰도 강화					
전체	4.0	12.9	47.3	35.7	100.0(621)
교사	5.8	15.5	47.0	31.8	100.0(400)
공무원	2.0	6.0	46.0	46.0	100.0(100)
학계 전문가	0.0	9.9	49.6	40.5	100.0(121)
$\chi^2(df)$	15.8(6)*				
컨설팅이나 장학, 조력 등의 사후관리 의무화					
전체	5.2	11.0	43.6	40.3	100.0(621)
교사	7.5	16.0	51.0	25.5	100.0(400)
공무원	1.0	3.0	33.0	63.0	100.0(100)
학계 전문가	0.8	0.8	28.1	70.2	100.0(121)
$\chi^2(df)$	94.7(6)***				
평가(인증) 결과 점수 범주화 공개					
전체	17.7	22.5	35.1	24.6	100.0(621)
교사	25.5	25.3	34.3	15.0	100.0(400)
공무원	5.0	18.0	36.0	41.0	100.0(100)
학계 전문가	2.5	17.4	37.2	43.0	100.0(121)
$\chi^2(df)$	55.6(6)***				
평가(인증) 결과의 서술식 내용을 부모에게 공개					
전체	20.8	30.0	32.2	17.1	100.0(621)
교사	28.8	33.0	29.8	8.5	100.0(400)
공무원	7.0	21.0	32.0	40.0	100.0(100)
학계 전문가	5.8	27.3	40.5	26.4	100.0(121)
$\chi^2(df)$	72.6(6)***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다음 평가 시기 결정					
전체	14.3	17.7	36.4	31.6	100.0(62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교사	19.0	19.5	33.5	28.0	100.0(400)
공무원	7.0	15.0	46.0	32.0	100.0(100)
학계 전문가	5.0	14.0	38.0	43.0	100.0(121)
$\chi^2(df)$	22.9(6)**				

* $p < .05$, ** $p < .01$, *** $p < .001$

주: N/A는 사례수 특성상 카이검정이 불가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교사, 공무원, 학계 전문가 대상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 방향조사」 결과임.

부록 3. 조사표 3종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 방향
- 교사 대상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 기본과제인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유아교육·보육 기관 대상 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고자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연구책임자 장혜진(hjjang@kicee.re.kr) 02-398-7741

공동연구진 송신영(song@kicce.re.kr) 02-398-7709

I. 응답자의 일반 정보

	유치원	어린이집
1. 기관 유형	① 공립 단설유치원 ② 공립 병설유치원 ③ 사립 유치원	④ 국·공립 어린이집 ⑤ 민간 어린이집 ⑥ 가정 어린이집 ⑦ 직장 어린이집 ⑧ 사회복지 및 기타 법인단체어린이집
2. 기관 크기	<input type="checkbox"/> ① 1학급	<input type="checkbox"/> ⑥ 20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② 2학급	<input type="checkbox"/> ⑦ 21인 이상 39명 이하
	<input type="checkbox"/> ③ 3학급	<input type="checkbox"/> ⑧ 40인 이상 79인 이하
	<input type="checkbox"/> ④ 4-5학급	<input type="checkbox"/> ⑨ 80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⑤ 6학급 이상	
3. 교사 경력	총 ()년 ※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반내림, 6개월 이상인 경우 반올림	
4. 교사 자격증	① 1급 유치원교사 자격 ② 2급 유치원교사 자격 ③ 유치원감·원장 자격	④ 1급 보육교사 자격 ⑤ 2급 보육교사 자격 ⑥ 3급 보육교사 자격 ⑦ 어린이집원장 자격
5. 교사 학력	① 고졸 ③ 대졸(4년제졸)	② 전문대졸(2-3년제졸) ④ 대학원졸
6. 지역 유형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7. 유치원 평가 경험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8. 어린이집 평가인증 경험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Ⅱ.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방향

※ 다음 문항은 유치원·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정책방안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번호	문항 내용	동의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기관의 장점, 단점, 개선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는 필요이상으로 자세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표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 내용(서술내용,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평가인증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대상 평가(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사전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8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전문평가위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시도 수준(시도교육청, 시도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0	기관 규모에 따라 현장관찰 기간을 1일 내에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1	기관의 제반 운영관리와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2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현장관찰시 원장(감) 및 교사와의 심층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3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내용	동의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영유아(만 1세-5세) 발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5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기관의 환경과 특색을 살리는 고유한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6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재정회계 부분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사후관리(컨설팅장학, 조력 등)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8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점수를 범주화(예. 매우 잘함/ 잘함/보통/개선 필요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9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외에도 기관에 대한 특징, 장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서술식 내용을 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0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매우 잘함→4년, 잘함→3년, 보통→2년, 개선필요함→1년)	①	②	③	④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 방향
- 공무원 대상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 기본과제인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유아교육·보육 기관 대상 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고자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연구책임자 장혜진(hjjang@kicee.re.kr) 02-398-7741

공동연구진 송신영(song@kicce.re.kr) 02-398-7709

I. 응답자의 일반 정보

1. 소속 기관	교 육	보 육
	① 시도교육청 ② 지역교육지원청	③ 시도청 ④ 군·구청
2. 총 경력	총 ()년 ※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버림, 6개월 이상인 경우 반올림	
3. 학력	① 고졸 ③ 대졸(4년제졸)	② 전문대졸(2·3년제졸) ④ 대학원졸
	유치원 평가 내용 및 방법 인지 정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용 및 방법 인지 정도
4. 인지 정도	① 전혀 모름 ② 거의 모름 ③ 약간 알고 있음 ④ 잘 알고 있음	① 전혀 모름 ② 거의 모름 ③ 약간 알고 있음 ④ 잘 알고 있음

II.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방향

※ 다음 문항은 유치원·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정책방안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번호	문항 내용	동의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기관의 장점, 단점, 개선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는 필요이상으로 자세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표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 내용(서술내용,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평가인증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대상 평가(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내용	동의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사전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8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전문평가위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시도 수준(시도교육청, 시도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0	기관 규모에 따라 현장관찰 기간을 1일 내에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1	기관의 제반 운영관리와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2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현장관찰시 원장(감) 및 교사와의 심층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3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4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영유아(만 1세-5세) 발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5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기관의 환경과 특색을 살리는 고유한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6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재정회계 부분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사후관리(컨설팅장학, 조력 등)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8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점수를 범주화(예. 매우 잘함/ 잘함/보통/개선 필요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9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외에도 기관에 대한 특징, 장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서술식 내용을 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0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매우 잘함→4년, 잘함→3년, 보통→2년, 개선필요함→1년)	①	②	③	④

**유치원·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 방향
- 학계 전문가 대상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 기본과제인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유아교육·보육 기관 대상 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사하고자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항, 제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연구책임자 장혜진(hjjang@kicee.re.kr) 02-398-7741

공동연구진 송신영(song@kicce.re.kr) 02-398-7709

I. 응답자의 일반 정보

1. 전문분야	① 유아교육 ② 아동학
	③ 보육 ④ 아동복지
2. 유치원 평가 참여여부	① 있음 ② 없음
3. 어린이집 평가인증(심의) 참여여부	① 있음 ② 없음

II.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방향

※ 다음 문항은 유치원·어린이집 질 제고를 위한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정책방안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번호	문항 내용	동의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기관의 장점, 단점, 개선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는 필요이상으로 자세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표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4	현재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 내용(서술내용,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5	유치원·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평가인증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기관 대상 평가(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사전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번호	문항 내용	동의수준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전문평가위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내용 및 방법을 시도 수준(시도교육청, 시도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0	기관 규모에 따라 현장관찰 기간을 1일 내에서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1	기관의 제반 운영관리와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2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현장관찰시 원장(감) 및 교사와의 심층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3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지표에서 교육과정 영역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4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영유아(만 1세-5세) 발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5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기관의 환경과 특색을 살리는 고유한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6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재정회계 부분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사후관리(컨설팅장학, 조력 등)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8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점수를 범주화(예. 매우 잘함/ 잘함/보통/개선 필요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9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외에도 기관에 대한 특징, 장점,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서술식 내용을 부모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0	유치원 평가·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매우 잘함→4년, 잘함→3년, 보통→2년, 개선필요함→1년)	①	②	③	④

연구보고 2014-14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 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4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금풍문화사 02) 2264-2306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91-6 93330